

## 1주차 1차시 :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의미

학습내용	1. 법과 사회복지법에 대한 일반적 이해 2. 사회복지법의 개념 및 성격 3. 사회복지법 관련 용어
학습목표	1. 법과 사회복지법에 대한 일반적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실현을 위한 사회복지법의 개념 및 성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통용되는 사회복지법 관련 용어를 설명하고 사용할 수 있다.

### 학습내용 1

### 법과 사회복지법에 대한 일반적 이해

#### 1. 법의 개념

##### 1) 법의 정의

- 법은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필요한 행위준칙으로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생활의 안전을 기하며,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권력이 일정한 사회적 행위를 당위적으로 의무지울 것으로 요구하는 관념이다
- 법은 도덕·관습·종교 등 다른 사회규범과는 다르다.

##### 2) 법의 규범성

###### (1) 사회규범

- 사회규범은 당위의 규범으로 지켜야 될 것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한다.

###### (2) 강제규범

- 법은 정치적으로 조직된 사회의 강제성을 가진 규범이다.

###### (3) 문화규범

- 법도 인간이 공동사회를 형성하며 만들게 된 일종의 문화인 것이다.

###### (4) 상대적규범이자 절대적규범

- 법은 사회마다 다르다는 점에서 상대적이며, 동시에 정의를 추구하고 실현하려는 목표에서 절대적이다.

###### (5) 행위규범

- 법은 사회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행동과 해서는 안되는 행동을 제시해 준다는 면에서 행위규범이다.

###### (6) 조직규범

- 법의 집행을 위해서는 법을 담당하는 기관과 조직들이 구성되어 있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법은 조직규범이다.

##### 3) 법의 목적

###### (1) 사회정의 실현

- 정의는 이성을 갖는 개인이나 집단이 추구할 수 있는 가치로서 법을 통해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며, 사회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권이 보장된 불평등이 없는 상태이다.

###### (2) 합목적성

- 법은 국가와 사회가 추구하려는 가치에 합치되어야 하며 법이 실현하는 가치는 자유, 국가번영,

사회문화가치 및 질서 등을 추구 유지하며 봉사한다. 합목적성은 결국 공공복리라고 할 수 있다.

(3) 법적 안정성

- 법의 보호에 의하여 사람들이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태를 법적 안정성이라 하며, 법질서가 동요됨이 없이 행위의 옳고 그름, 권리의 보호와 책임 등이 일반국민에게 확실하게 알려져 있어야 국민들이 법의 권위를 믿고 안심하게 행동할 수 있다.

(4) 사회질서 유지

- 법은 사회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역할을 하도록 한다. 때로 질서를 해치는 성원들에게는 강제성을 통해 규제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한다.

**학습내용 2**

**사회복지법의 개념 및 성격**

**1. 사회복지법의 개념**

**1) 일반적 정의**

- 사회복지란 사회적으로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의미한다.
-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 실현을 위하여는 국가나 사회성원이 합의하는 제반 법규이며, 헌법의 이념을 구체화한 법이다.

**2) 사회복지학과 법학의 융합**

-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사회적으로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상태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복지 정신(welfare mind)과 공동사회의 질서유지나 구성원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자 하는 법의 정신(legal mind)의 융합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은 주로 실정법체제로 되어 있다.

**3) 일반적 분류 방법**

(1)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법률의 목적이나 명칭이 사회복지 표방하고 있는 법률을 의미한다. 예로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에 속하는 법률들과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에 속하는 법률들이다.

(2)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법의 존재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법규범의 내용, 목적, 기능들이 사회복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을 의미한다. 예로 노동법, 행정법, 조세법, 민법, 특별법 등이다.

**2. 사회복지법의 법적 성격**

**1) 사회복지에 관한 법이다**

-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의 조직, 급여, 재정,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이다.

**2) 사회법이다**

- 생존권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사회법이다. 사회법은 시민사회의 자유권 중심적 원리와 자본주의의 결함으로 인한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달한 법의 영역이다.

**3) 국내법이다**

- 국내법은 국적을 기본으로 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사회복지법은 지리적으로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적용되는 국내법이다.

**3. 사회복지법의 구성요소**

**1) 주체**

- 사회복지법상 행위주체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주체이며

국가와 전 국민이다.

## 2) 적용대상

- 사회복지법상 적용대상은 좁게는 요보호 미자립자적이고, 넓게는 일반국민이다.

## 3) 목적

- 사회복지법의 목적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며, 세부목적은 최저생활의 보장, 사회복지 증진 및 복지권 보장, 소득재분배, 사회형평과 통합이다.

## 학습내용 3

## 사회복지법 관련 용어

### 1. 사회보장법·사회복지법 관련 용어

#### 1) 사회보장법

- 사회보장에 관한 법으로,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제3조제1호).

#### 2) 사회보험법

- 사회보험에 관한 법으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하며(제3조제2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있다.

#### 3) 공공부조법

- 공공부조에 관한 법으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며(제3조제3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등이 있다.

#### 4)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사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법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가~허)에 따른 각종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며,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사업을 지원하는 법이다.

#### 5) 사회복지서비스

-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제6호).

#### 6) 사회서비스

-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제3조제4호)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서비스
대상	수급자 등 빈곤계층	서민·중산층까지 확대
서비스 내용	기본적 생활보장서비스	국민의 일상생활지원 등
재정 지원 방식	공급자(기관)직원	수요자 지원방식 병행
비용부담	정부지원 중심	본인 일부 부담 도입
서비스 제공 방식	시설보호 중심	재가서비스까지 확대

[출처 : 주교재, p.19]

## 7) 평생사회안전망

- 사회보장기본법에서 '평생사회안전망'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제3조제5호).

## 학습정리

### 1. 법과 사회복지법에 대한 일반적 이해

- 1) 법의 개념
  - 법은 사회질서 유지, 공동생활 안정,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국가권력에 의한 사회규범
- 2) 법의 규범성
  - 사회규범, 강제규범, 문화규범, 상대적규범이자 절대적규범, 행위규범, 조직규범
- 3) 법의 목적
  - 사회정의 실현,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사회질서 유지

### 2. 사회복지법의 개념 및 성격

- 1) 사회복지법의 개념
  - 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국가나 사회성원이 합의한 법규
  - 사회복지학과 법학의 융합
  - 형식적 의미 분류, 실질적 의미 분류
- 2) 사회복지법의 법적 성격
  - 사회복지에 관한 법
  - 사회법
  - 국내법
- 3) 사회복지법의 구성요소
  - 행위주체는 국가와 전 국민
  - 적용대상은 요보호 미자립자들에서 일반국민까지 확대
  - 목적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 3. 사회복지법 관련 용어

- 1) 사회보장법·사회보장법 관련 용어
  - 사회보장법
  - 사회보험법
  - 공공부조법
  -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서비스
- 사회서비스
- 평생사회안전망

## 1주차 2차시 : 사회복지법의 정체성

학습내용	1.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 특징 2. 사회복지법 및 관련법 사이의 연관성
학습목표	1. 시민법에서 사회법으로의 수정에 의해 등장한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 및 헌법, 민법, 노동법 등 관련법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학습내용 1

###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 특징

#### 1. 시민사회의 출현과 변천

##### 1) 계몽주의와 시민사회 출현

-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통해 봉건적 사조가 몰락하고 인간의 이성이 절대적인 위치에 선 계몽주의의 확산으로 프랑스대혁명 등 시민혁명이 일어났고, 이러한 이성적 사고의 발전은 산업혁명과 자본주의로 이어지면서 시민사회가 부각되었다.

##### 2) 시민법의 원리

- 시민법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 이념을 구현하고 자본주의의 원활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도 원리로 삼았다.
  - (1) 소유권절대(사유재산) 원칙
    - 사유재산에 대해 국가와 타인은 간섭하거나 제한을 가할 수 없다.
  - (2) 계약자유 원칙
    -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교환관계가 형성되었다.
  - (3) 과실책임(과실에 대한 자기책임) 원칙
    -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해 그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할 경우만 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을 때는 책임지지 않는다.

#### 2. 자본주의 전개에 따른 사회법 형성

##### 1) 초기 자본주의에서 시민법의 한계

- 시민법에 의한 산업혁명이 만들어 낸 자본주의의 발전은 자본의 독점과 부의 편중으로 인한 불평등, 빈부격차, 사회계급간의 갈등 고조 등 많은 사회문제를 양산
  - (1) 자유·평등사상의 변화
    - 사회정의의 위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 조치 필요, 최소한의 자유와 평등 강조로 수정
  - (2) 계약의 공정성
    - 계약자유를 남용을 개선하기 위해 계약의 공정성으로 수정
  - (3) 소유권 존중과 공공복지
    - 소유권 비호역할인 시민법에 대한 수정 불가피 및 공공복지에 대한 생존권 이념의 형성

## 2) 사회법의 등장

- 시민법의 3대 주요 원칙의 한계점을 수정한 수정시민법인 사회법이 등장하게 되었고 다음 표와 같이 사회법으로 수정되었다.

<표 1> 시민법에서 사회법으로의 수정

시민법	수정방향	사회법 (수정시민법)
소유권 절대 (사유재산)	사유재산을 존중하되 사회공익을 바탕으로 한 사유재산 인정	소유권의 사회성
과실책임 (과실에 대한 자기책임)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가 집합적으로 책임 대응	무과실책임 (집합적책임)
계약자유	계약자유를 인정하되 공정한 계약	계약의 공정성

[자료 : 주교재, pp. 11-24 참고하여 작성함]

## 3) 노동법의 등장과 한계

- 시민법의 원칙이 수정되면서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노동3법(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이 제정되었고,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확보되었다. 그러나 노동법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생존권 보장을 위해 사회보장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 4) 사회보장법(사회보험법)의 등장과 한계

- 노동자의 사고 증가와 대처능력의 한계로 인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보장법(사회보험법)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보험기여를 할 수 없는 비노동 일반시민들에 대한 복지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사회복지서비스법이 등장하게 된다.

## 5) 사회복지서비스법의 등장

- 노동법, 사회보장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와 모든 국민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를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법이 등장하였다.

### 학습내용 2

### 사회복지법 및 관련법 사이의 연관성

#### 1. 사회복지법 상호 간 연관성

##### 1)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상호 연관성

-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의 3대 축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이며, 이 3대 축은 서로 밀접한 상호관련을 맺고 있다.

##### 2) 법 위계에 따른 상호 연관성

- 최고 규범인 헌법의 인간다운 생활과 사회보장권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법이 형성되며, 사회복지법의 총괄법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이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 개별 사회복지법 상 법률>명령>행정규칙>자치법규의 위계구조를 가지고 있다.

## 2. 사회복지법과 타 영역 법과의 연관성

### 1) 헌법과 사회복지법

- 사회복지법은 헌법의 복지권(행복추구권, 기본권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명확한 수직적 위계구조를 갖고 있다.

### 2) 사회복지법과 노동법

- 생존권을 목표하는 것은 두 법이 일치함으로 밀접하나, 노동법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인간다운 생활 보장에 규범목적이 있는 반면, 사회복지법은 노동자 뿐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있기에 그 범위가 넓다.

### 3) 사회복지법과 행정법

- 사회복지법 대부분이 국가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됨으로 두 법은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행정법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주체와 객체 간의 전달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사회복지법은 원칙과 수급권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4) 사회복지법과 민법

- 사법과 공법요소가 섞여있는 사회복지법은 사법인 민법과 관련성이 깊다. 사회복지법에서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도 많고, 가족관계, 친족범위, 부양의무 등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민법은 당사자간 규정인 사법이지만, 사회복지법은 국가와 개인, 개인과 개인, 기관과 개인, 국가와 지방 등 공법적 요소가 많다.

### 5) 사회복지법과 조세법

- 조세법에서 소득재분배, 소득공제, 조세감면 등을 통해 저소득자 보호 등 사회보장법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 조세법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위한 적용이 많은 반면 사회복지법은 특정화된 개별수급자를 위해 구체적으로 적용된다. 사회보험은 기여한 만큼의 권리가 보호되지만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청구권 즉 반대급부권이 없다.

### 6) 사회복지법과 경제법

-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공통적이나 경제법은 경제정책적 입법성격이 강하고 사회복지법은 사회정책적 입법성격이 강하다.



## 1.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 특징

### 1) 시민사회의 출현과 변천

- (1) 계몽주의와 시민사회 출현 : 이성적 사고의 발전은 산업혁명과 자본주의로 이어져 시민사회 부각
- (2) 시민법의 원리 : 소유권절대 원칙, 계약자유 원칙, 과실책임 원칙, 과실책임 원칙

### 2) 자본주의 전개에 따른 사회법 형성

- (1) 초기 자본주의에서 사민법의 한계 : 불평등, 빈부격차, 사회계급 간 갈등 고조 등 사회문제
- (2) 사회법의 등장 : 자유·평등사상의 변화, 계약의 공정성, 소유권 존중과 공공복지로 수정됨
- (3) 노동법의 등장과 한계 : 노동법만으로 해결안 됨으로 사회보장법 등장
- (4) 사회보장법(사회보험법)의 등장과 한계 : 비노동 일반시민들을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법 등장
- (5) 사회복지서비스법의 등장 : 보편적 복지를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법이 등장

## 2. 사회복지법 및 관련법 사이의 연관성

### 1) 사회복지법 상호 간 연관성

- (1)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상호 연관성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 (2) 법 위계에 따른 상호 연관성 : 헌법과 사회보장기본법이 중심축

### 2) 사회복지법과 타 영역 법과의 연관성

- (1) 헌법과 사회복지법 : 헌법의 복지권 표현
- (2) 사회복지법과 노동법 : 생존권 목표 동일하나 대상의 범위 차이
- (3) 사회복지법과 행정법 : 복지수행 속성은 같으나 전달과정과 수급권자 보호의 초점 차이
- (4) 사회복지법과 민법 : 사법요소와 가족관계 등에 대한 적용은 있되, 공법적 요소에는 차이
- (5) 사회복지법과 조세법 : 사회보장법 기능 수행은 동일하나 대상범위에 차이
- (6) 사회복지법과 경제법 :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 측면은 공통적이나 입법성격 차이

## 2주차 1차시 : 인권·시민권·사회복지수급권

학습내용	1. 인권 2. 시민권 3. 사회복지수급권
학습목표	1. 기본권이자 보편적 권리인 인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자유와 평등을 근간으로 한 시민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사회복지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사회복지수급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학습내용 1

### 인권

#### 1. 인권

##### 1) 인권의 정의

- 인권은 모든 사람이 본질적으로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갖는 권리이다.
- 모든 사람은 인간이라는 사실만으로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을 존중받아야 한다.
-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위한 실천적 영역으로 나라마다 제도와 법규를 통해 명시하고 있다(헌법 제10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 세계인권선언 등)
-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은 사회복지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이다.

##### 2) 인권의 의미

###### (1) 기본적인 필수적인 권리

- 인권은 인간다움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며, 그 아래로 떨어지면 '인간답다' 할 수 없는 선이 인권이다.

###### (2) 보편적 권리

- 어떠한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이 인권을 누려야 하며, 어떠한 특권에도 반대하며 어떠한 지위에 따른 차별 없이 누려야 할 권리가 인권이다.

###### (3) 국가권력의 정당성 판단 및 제한

- 국가권력은 오직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국민의 인권을 억압하는 국가권력은 정당성이 없고 국민은 그 권력에 언제든지 저항하고 제한할 수 있다.

###### (4) 법으로 보장되는 이상의 것

- 인권은 현존하는 법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한다는 데 반드시 필요한 권리라면 인권으로 보장될 수 있다.

##### 3) 인권의 보편성

- 인종, 성별,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지위, 종교, 국적, 지능, 육체적 조건 등의 속성으로 인해 차별대우를 받지 않아야 하며, 인간 의로로서의 존엄과 기회의 균등을 보장받아야 한다.

1. 시민권의 개념

1) 일반적 정의

-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도시국가에서 국정에 참가할 수 있는 자유민의 권리를 시민권이라 했다.
- 17~18세기의 서양국가에서 근대 시민혁명을 매개로 인간의 자연권 또는 인권의 보장이 선양되어 실정법상 구체적으로 보장한 것이 시민권이며, 자본주의 성립 후에는 시민계급의 권리를 시민권이라 불렀다.

2) 마샬의 시민권 이론

- 마샬(T. H. Marshall)의 역사적 분석에 따르면 시민권은 서양국가에서 18~20세기에 걸쳐 시민권(공민권, 자유권), 정치권(참정권, 선거권), 사회권(복지권, 생존권)의 3요소에 의해 단계적으로 실현되었다.
- 시민권은 18세기에는 언론자유, 신앙자유, 사유재산권 등 자유와 평등과 관련된 시민적 권리(공민권)로, 19세기에는 보통선거권 등 참정권을 통한 국민의 통치 참여와 관련된 정치적 권리(정치권)로, 20세기에는 근로자의 노동 및 생활조건의 개선, 최저생활 보장 등을 국가로부터 복지서비스로 누릴 수 있는 권리인 사회적 권리(사회권)로 발전되었다.

2. 시민사회의 시민법

1) 시민사회를 전제로 출현

-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통하여 봉건적 사조가 몰락하고, 인간의 자유와 창의성을 강조하는 인문주의가 대두되었다.
- 법적으로도 개인주의 속성이 강한 로마법의 영향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 자연법사상으로부터 영향

- 그로티우스(Grotius), 홉스(Hobbes), 루소(Rousseau), 로크(Locke) 와 같은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자연법사상을 꽃피우면서 시민의 의식변화에 큰 영향을 주게 되어 근대 자본주의 시민사회의 형성과 시민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 인간생명에 대한 권리, 노동의 산물에 대한 권리 등을 강조, 개인의 이윤추구와 자유로운 인간을 표방하는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사회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였다.

1. 사회복지수급권의 개념

- 사회복지수급권은 인권이나 기본권에 비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권리로, 헌법, 사회복지법 등을 통해 국민이 사회복지 받을 권리를 말한다.
- 자유권사상을 바탕으로 한 시민법 체계의 한계에 도달하자 생존권 확보를 위한 노동법, 사회보장법, 사회복지서비스법이 입법되었고 이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이 법적 청구권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2. 우리나라 사회복지수급권

- 헌법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제1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제2항).” 는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 사회복지수급권(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을 실현하도록 하고 있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개별 사회복지법에서 수급권을 명시함으로써 헌법의 사회복지수급권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 개별사회복지법 사례

[영유아 보육법]

제3조(보육 이념) 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②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2조(기본 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노인복지법]

제2조(기본이념) ①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3조(기본이념)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②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 학습정리

### 1. 인권

#### 1) 인권의 정의

- 인권은 모든 사람이 인간이라는 사실만으로 갖는 권리
-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은 사회복지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

#### 2) 인권의 의미

-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권리
- 보편적 권리

- 국가권력의 정당성 판단 및 제한
- 법으로 보장되는 이상의 것

## 2. 시민권

### 1) 시민권의 개념

- 시민혁명에 의한 시민권
- 자본주의 성립 후에는 시민계급의 권리

### 2) 마샬의 시민권 이론

- 시민권(공민권, 자유권)
- 정치권(참정권, 선거권)
- 사회권(복지권, 생존권)

### 3) 시민사회의 시민법

- 인문주의의 대두에 따른 시민사회를 전제로 출현
- 자연법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음

## 3. 사회복지수급권

### 1) 사회복지수급권의 개념

- 인권이나 기본권에 비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권리
- 헌법, 사회복지법 등을 통해 국민이 사회복지를 받을 권리

### 2) 우리나라 사회복지수급권

- 헌법(제34조), 사회보장기본법(제9조)
- 개별 사회복지법

## 2주차 2차시 : 사회적 기본권과 권리구제

학습내용	1.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 2. 사회복지수급권의 구조·보호·제한 3. 권리구제
학습목표	1.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수급권의 구조·보호·제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침해당한 사회복지수급권 등에 대한 권리구제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다.

### 학습내용 1

###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

#### 1. 헌법의 기본권 개념

- 기본권은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 자연법상의 권리뿐 아니라 실정법상의 구체화된 권리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평등권(제11조), 자유권(제12~22조), 재산권(제23조), 참정권(제24~25조), 청구권(제26~30조), 생존권(제31~36조)

#### 2. 헌법의 사회권적 기본권

##### 1)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31조)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제1항)
- 모든 국민은 자녀에게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제2항)
- 의무교육의 무상화(제3항)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제4항)
- 평생교육의 진흥(제5항)

##### 2) 근로의 권리(헌법 제32~33조)

- 근로자 고용의 증진, 적정임금 보장, 최저임금제 시행(제32조제1항)
- 근로조건은 인간존엄성 보장토록 법률로 정함(제3항)
-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 차별금지(제4항)
-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음(제5항)
-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제33조제1항)

#####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1항)
-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노력 의무(제2항)
-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 실시 의무(제4항)
-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등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제5항)
- 재해 예방 및 위험으로부터의 국민보호(제6항)

#### 4) 환경권(헌법 제35조)

-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 생활할 권리(제1항)
- 환경권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 법률로 정함(제2항)

#### 5) 혼인·보건에 관한 권리(헌법 제36조)

-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제1항)
- 국가의 모성 보호를 위한 노력(제2항)
- 국민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제3항)

### 3.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1) 프로그램 규정설

- 헌법은 추상적인 형태로 생존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부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입법을 하지 않으면 행정부의 구체적인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2) 법적 권리설

- 사회복지에 관한 법적 권리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국가는 이를 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추상적 권리와 구체적 권리로 나뉜다.
- 추상적 권리설은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권리는 인정하지만 그 권리성이 추상적이라는 입장으로 프로그램 규정설과 큰차이가 없고, 구체적 권리설은 사회복지에 관한 입법이 없거나, 불충분할 경우 국민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표1>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구분 내용	프로그램 규정성	법적 권리설	
		추상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
법적권리	선언에 불과/권리 아님	법적 권리지만 추상적 권리임	법적권리이며 구체적 권리임
구체성/적극성/강도	매우 약함	약함	매우 강함

[출처 : 주교재 p.65 을 재구성함]

## 학습내용 2

## 사회복지수급권의 구조·보호·제한

### 1.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구조

#### 1) 실체적 권리

- 사회복지수급권의 핵심권리로, 해당 사회복지법에 의거, 실체적인 사회복지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말한다.
- 권리의 내용으로는 수급권자, 수급요건, 급여종류 및 수준, 재정조달, 전달체계,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등이 포함된다.

#### 2) 수속적 권리

- 사회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적절한 절차에 참가하는 권리를 말하며, 크게 수속 전 단계와 수속단계로 구분된다.
- 수속 전 단계의 권리로는 사회복지급여에 대한 각종 정보 요구, 상담과 조언 요구, 각종 복지기관 이용할 권리 등이며, 수속단계에서의 권리로는 신청, 조사, 결정, 실시의 각 단계에서 복지대상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진행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 3) 절차적 권리

- 실체적 권리의 실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이를 보전, 이행, 강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절차적 권리를 말하며, 크게 사회복지급여쟁송권, 사회복지행정참여권, 사회복지입법청구권으로 구분된다.
- 사회복지급여쟁송권은, 사회복지급여청구권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기관의 조치에 의하여 침해되었을 때, 이의 구제를 신청하는 권리를 의미하며, 행정심판인 행정적 구제와 행정소송을 통한 사법적 구제가 있다.
- 사회복지행정참여권은, 사회복지행정과정에 대상자나 국민이 참여할 권리를 의미한다. 특히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남용을 막을 수 있다.
- 사회복지입법청구권은, 사회복지급여를 위한 구체적 법률이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입법을 추진하거나 개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표2> 사회복지수급권의 구조

사회복지 수급권	실체적 권리	사회보험청구권/공공부조청구권/사회복지서비스청구권
	수속적 권리	- 수속 전 단계 : 홍보 및 정보제공 요구권/상담 및 조언제공 요구권/사회복지기관 이용 요구권 - 수속 단계 : 신청/조사/수급권 유무 및 수급내용 결정/급여실시 등 수속단계에서 권리실현의 적절한 진행 요구 권리
	절차적 권리	사회복지급여쟁송권/사회복지행정참여권/사회복지청구권

[출처 : 주교재 p.67 을 재구성함]

## 2.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보호

### 1) 사회보장기본법상 수급권의 보호

-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한 권리와 보호 조치를 담고 있다.
-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권리(제9조), 수급권의 양도, 담보, 압류 금지(제12조), 관계법령에 의해서만 수급권 제한 또는 정지(제13조제1항), 타인의 불법행위 대한 구상권 행사(제15조)

### 2) 사회복지사업법상 수급권의 보호

-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제1조), 시설의 휴지·폐지 시 시설거주자 권익 보호 조치(제38조), 보호대상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제41조의3)

### 3) 사회보험법상 수급권의 보호

-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의 보호), 제119조(근로자의 권익 보호)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수급권의 보호), 제93조(근로자의 권익 보호)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등
- 고용보험법 제38조(수급권의 보호)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66조(수급권의 보호) 등

### 4) 공공부조법상 수급권의 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제34조(급여변경의 금지), 제35조(압류의 금지), 제36조(양도금지) 등
- 의료급여법 제18조(수급권의 보호) 등
- 기초연금법 제21조(기초연금 수급권의 보호) 등
- 장애인연금법 제19조(압류금지 등) 등

## 3.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제한

### 1) 사회보장기본법상 수급권의 제한



- 수급권 보호는 적극적으로 하되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법 제13조 제2항)에서만 한다.

## 2) 사회보험법상 수급권의 제한

- 국민연금법 제82조(급여의 제한), 제83조(장애연금액의 변경 제한), 제84조(유족연금의 지급제한), 제85조(연금보험료 미납에 따른 지급 제한)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3조(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약제의 요양급여 제외 등) 등
- 고용보험법 제18조(피보험자격 이종 취득의 제한),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9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

## 3) 공공부조법상 수급권의 제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급여의 중지 등), 제46조(비용의 징수), 제47조(반환명령) 등
- 의료급여법 제15조(의료급여의 제한), 제17조(의료급여의 중지 등) 등
- 기초연금법 제16조(기초연금 지급의 정지), 제17조(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 등

## 학습내용 3

## 권리구제

### 1. 권리구제의 목적과 근거법률

- 사회복지수급권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 받은 경우에 권리구제를 할 수 있다.
- 헌법 제26조의 포괄 규정 “모든 국민은...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제1항).
- 사회복지기본법 제9조(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와 제39조(권리구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권리구제를 명시하고 있다.

### 2.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

#### 1) 전심절차

-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해당 사회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사기관의 심사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 최초에 이의신청을 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사하며, 재심사는 행정심판의 성격을 지닌다.
- 전심절차의 예(국민연금법 제7장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 제108조~112조) : 심사청구 및 심사(제108조~109조), 재심사청구 및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등(제110조~112조)

#### 2) 행정심판(행정심판법)

- 행정심판법 제1조(목적)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규정하고 있다.
-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전에 행정기관 스스로 판단하여 시정하도록 한 것으로 행정절차이지 사법절차가 아니다.

#### 3) 행정소송(행정소송법)

- 행정소송법 제1조(목적)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절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규정하고 있다.
-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행정심판이 약식쟁송이라면 행정소송은 정식쟁송이다.

#### 4) 헌법소원

- 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 헌법소원은 국민이 직접 심판청구의 주체가 되고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우리 헌법이 마련한 기본권 보장의 제도적 장치 중 핵심적인 것이다.

〈표3〉 사회보험의 권리구제 단계

권리구제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최종단계
국민연금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헌법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고용보험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국민건강보험	이의신청	심판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의신청	심사청구		

[출처 : 주교재 p.72 를 재구성함]

## 학습정리

### 1.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

- 1) 헌법의 기본권 개념
  - 기본권은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임을 헌법에 명시
- 2) 헌법의 사회권적 기본권
  -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31조)
  - 근로의 권리(헌법 제32~33조)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
  - 환경권(헌법 제35조)
  - 혼인·보건에 관한 권리(헌법 제36조)
- 3)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프로그램 규정설
  - 법적 권리설

### 2. 사회복지수급권의 구조·보호·제한

- 1)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구조
  - 실체적 권리
  - 수속적 권리
  - 절차적 권리
- 2)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보호
  - 사회보장기본법상 수급권의 보호
  - 사회복지사업법상 수급권의 보호
  - 사회보험법상 수급권의 보호
  - 공공부조법상 수급권의 보호
- 3)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제한
  - 사회보장기본법상 수급권의 제한
  - 사회보험법상 수급권의 제한

- 공공부조법상 수급권의 제한

### 3. 권리구제

#### 1) 권리구제의 목적과 근거법률

- 사회복지수급권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
- 헌법, 사회보장기본법, 해당 사회복지법 등을 통한 권리구제

#### 2)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

- 전심절차 : 행정소송 전 개별 복지법에 의한 심사기관의 심사
- 행정심판 : 행정심판법에 의거, 법원 판단 전 행정기관 스스로 판단하여 시정토록 한 행정절차
- 행정소송 : 행정소송법에 의거,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사법절차

## 3주차 1차시 : 국제법과 사회복지

학습내용	1. 국제인권규약 2. 사회보장 관련 국제조약 및 선언 3.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학습목표	1. 국제적 합의 인 국제인권규약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보장 관련 다양한 국제기구와 국제조약 및 선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세계화에 따른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학습내용 1

### 국제인권규약

#### 1. 국제인권규약

##### 1) 국제인권규약의 배경과 구성

- 1948년 12월 10일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구속력 있게 만들기 위해, 1966년 유엔(UN)이 채택한 국제협약으로, 1976년 9월 3일 발효되었다.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 노동기본권, 사회보장권, 생활향상·교육권 등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 평등권,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참정권 등
- B규약의 선택의정서 : 개인이 B규약상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인권이사회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
- 회원국은 5년마다 유엔 인권위원회에 보고서 제출 의무

##### 2) 국제인권규약의 특징과 우리나라

- 세계인권선언 인권신장에 기여했으나 도의적 구속력이란 한계, 대신 국제인권규약은 법적 구속력 지님
- 우리나라는 1990년 국제인권규약에 가입(국회동의)했으며 북한은 이보다 앞선 1981년에 가입
- 국가인권위원회 발행 '국제인권동향'(월간) 참조 추천

##### 3) 국제인권규약의 주요 내용

###### (1)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전문과 5부 31조로 구성, 생존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등으로 불림
- 국가의 적극적인 관여에 의한 개인의 생존을 확보, 행복한 생활의 실현 도모 목적
- 국내 사정에 의해 점진적으로 실행
- 공정·안전·건강한 노동조건, 승진기회의 부여, 휴식·유급휴일의 보장(7조)  
예) 제7조 (d) 휴식, 여가 및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 공휴일에 대한 보수와 정기적인 유급휴일
- 가정의 존중, 자유의사에 의한 결혼, 기아에서의 해방(11조)

######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전문과 6부 53조로 구성
- 생명의 존중, 18세 미만 및 임산부 사형 금지(6조)  
예) 제6조 1.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 노예, 강제 노동의 금지(8조)
-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18조)

1. 사회보장 관련 국제기구

1) 유엔(UN)

- 1945년 설립, 총회에서 주요 선언이나 권고협약 채택, 사회복지 등 여러 분야에 국제적 기준 설정
- 전문기구 : 국제노동기구(IL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 세계통화기금(IMF) 등
- 보조기구 :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인권고등판무관(OHCHR), 평화유지활동(PKO) 등

2) 국제노동기구(ILO)

- 1919년 설립, 완전고용 실현 및 노동자의 삶의 수준 향상을 위한 기구
- 일할권리, 공정한 노동조건, 노동조합 결성, 사회보장수급권, 적절한 생활수준 등 경제·사회적 권리
- 우리나라 1991년 가입 이후 189개 중 총 29개 협약 비준(기본 협약 8개중 4개, 거버넌스협약 4개중 3개, 전문협약 177개 중 22개) ; OECD 회원국(35개국)의 평균 비준 ILO협약은 61개
- 헌법 제6조 제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

<표 1> ILO 기본 협약 및 우리나라 비준 현황(2019년 5월 기준)

협약 내용	우리나라 비준	우리나라 비준 추진 중 (2019.05~)
강제노동(제29호)		○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제87호)		○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 적용(제98호)		○
동일 가치 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등보수(제100호)	○	
강제노동의 폐지(제105호)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제111호)	○	
취업의 최저연령(제138호)	○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철폐(제182호)	○	

[출처 : 주교재, p.129를 참조해 작성]

3) 세계보건기구(WHO)

- 세계인권선언에서 규정한 건강권 문제(의식주, 의료 등) 해결을 위해 1948년에 설립된 국제기구
- 우리나라 1949년 가입 이후 그간 세 차례 이사국으로 진출, 2003년 결핵국장 이종욱 박사 제56차 총회에서 사무총장으로 선출 활동 중 2006년 서거

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1961년 유럽경제협력기구(OEEC) 18개국에 미국과 캐나다가 가입해 20개국으로 시작, 1996년 가입한 우리나라를 포함해 2018년 현재 36개국
- 주요목적은, 경제 성장, 개발도상국 원조, 무역의 확대 등
- 주요활동은, 경제 정책의 조정, 무역 문제의 검토, 산업 정책의 검토, 환경 문제, 개발도상국의 원조 문제 논의 등

5) 유엔아동기금(UNICEF)

- 1946년 제1차 유엔총회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유럽과 중국 아동의 음식, 의약품, 의류에 대한 긴급구호를 위해 설립
- 1950년 유엔총회 에서 개발도상국 아동을 위한 장기적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우선순위 임무로 부여
- 1948년부터 우리나라 어린이를 지원, 1950년 3월 25일 대한민국 정부와 기본협정을 체결 한국에서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시작, 한국 전쟁이 발발 후 고통받는 우리나라 어린이들을 위해 대대적인 긴급구호 활동을 시작, 1950년부터 1993년까지 유니세프가 한국에 지원한 총 금액은 약 2,300만 불에 달함(유니세프한국위원회 참조)

### 학습내용 3

###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사회보장 협정

#### 1. 협정목적

- ILO협약 중 제118호(내국인 동등대우협약), 제157호(국제제도 수립협약)을 준거
- 단기간동안 협정상대국에서 근로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양국 중 한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만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이중납부 문제 해소)
- 협정상대국으로 이민가거나 장기 체류하여 연금 가입기간이 양국으로 분리되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양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함(평균10~20년)
- 국가에 따라 적용범위에 있어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협정상대국 국민에 대해서는 연금 수급권 취득, 급여지급 등 법령 적용에 있어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위함
- 협정 당사국간에는 연금 급여를 해외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기업의 국내외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함(협정 대상국 파견 근로자, 상대국 보험료 면제 등)

<표 2> 사회보장 협정 사례

사례	한국에서 9년, 스페인에서 8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A씨 사례
협정 전	스페인 최소 가입기간 15년 부족으로 연금 수급 불가(8년간 납부)
협정 후	한국(9년)과 스페인(8년) 가입기간 합산 총17년으로 최소가입기간 충족, 한국-스페인양국에서 연금 수급 가능

[출처 : 주교재, p.144를 재구성]

#### 2. 협정의 내용 및 업무절차

- 사회보장 협정은 대부분 양 당사국의 정부간에 체결되고 있으며, 그 형태는 협정의 적용범위에 따라 '가입기간 합산 협정', '보험료면제 협정'으로 구분.
- 즉, 우리나라가 캐나다, 미국, 독일 등과 체결한 가입기간 합산 협정은 이중 가입 배제와 가입기간 합산 규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우리나라 국민은 양국에서의 이중가입 배제 및 가입기간 합산, 자국민과의 동등 대우, 연금급여의 해외송금 보장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영국, 중국, 네덜란드, 일본,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등과 체결한 보험료 면제 협정은 이중가입 배제만을 규정함으로, 양국에서의 이중가입 배제 이외에는 그 나라에서의 가입기간이 있더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합산혜택은 받을 수 없음
- 외국과 체결한 「사회보장 협정」이 국회의 비준(헌법 제60조)을 거쳐 발효되면, 국민연금공단은 우리나라 파견근로자에 대해 협정상대국 제도의 가입면제를 위한 가입증명발급, 외국인 파견근로자의 외국제도 가입증명접수·처리, 협정당사국간 가입기간 합산에 따라 외국 실무기관이 보내온 급여청구서 접수·처리, 급여지급, 외국 실무기관에 급여청구서 송부 및 협정시행에 따른 외국 실무기관과의 통계자료교환 등 각종 협정실무를 수행(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참조).

#### 3.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 체결현황

- 2019년 4월 현재 총 38개국 체결(발효 33, 미발효 5)

<표 3> 우리나라의 사회보장협정 체결현황(2019년 4월 현재)

	국 가(지 역)	체결일자	발효일자
1	이 란	1977.5.11.	1978.6.10.
2	캐나다	1997.1.10.	1999.5.1.
3	영 국	1999.4.20.	2000.8.1.
4	미 국	2000.3.13.	2001.4.1.
5	독 일	2000.3.10.	2003.1.1.
6	네덜란드	2002.7.3.	2003.10.1.
7	이탈리아	2000.3.3.	2005.4.1.
8	일 본	2004.2.17.	2005.4.1.
9	우즈베키스탄	2005.5.10.	2006.5.1.
10	몽 골	2006.5.8.	2007.3.1.
11	헝가리	2006.5.12.	2007.3.1.
12	프랑스	2004.12.6.	2007.6.1.
13	호 주	2006.12.6.	2008.10.1.
14	체 코	2007.12.14.	2008.11.1.
15	아일랜드	2007.10.31.	2009.1.1.
16	벨기에	2005.7.5.	2009.7.1.
17	슬로바키아	2009.2.9.	2010.3.1.
18	폴란드	2009.2.25.	2010.3.1.
19	불가리아	2008.10.30.	2010.3.1.
20	루마니아	2008.9.11.	2010.7.1.
21	오스트리아	2010.1.23.	2010.10.1.
22	필리핀	2005.12.15.	미발효
23	덴마크	2010.3.11.	2011.9.1.
24	인 도	2010.10.19.	2011.11.1.
25	스페인	2011.7.14.	2013.4.1.
26	터 키	2012.8.1.	2015.6.1.
27	중 국	2012.10.29.	2013.1.16.
28	브라질	2012.11.22.	2015.11.1.
29	스웨덴	2013.9.9.	2015.6.1.
30	스위스	2014.1.20.	2015.6.1.
31	칠 레	2015.4.22.	2017.2.1.
32	핀란드	2015.9.9.	2017.2.1.
33	퀘 벡	2015.11.24.	2017.9.1.
34	페 루	2017.3.2.	2019.1.1.
35	슬로베니아	2018.2.20.	미발효
36	룩셈부르크	2018.3.1.	미발효
37	아르헨티나	2018.11.27.	미발효
38	크로아티아	2018.12.18.	미발효

[출처 : 외교부 사회보장협정 체결현황을 재구성함]

## 1. 국제인권규약

### 1) 국제인권규약

- 세계인권선언 내용을 구속력 있게 하기 위한 국제협약(1976년 발효)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 B규약의 선택의정서
- 5년마다 유엔 인권위원회에 보고서 제출

### 2) 국제인권규약 특징과 우리나라

- 법적 구속력 있음
- 우리나라 1990년 가입

### 3) 국제인권규약 주요 내용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생존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적 기본권)

## 2. 사회보장에 관한 다양한 국제조약 및 선언

### 1) 사회보장 관련 국제기구

- 유엔(UN)
- 국제노동기구(ILO)
- 세계보건기구(WHO)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유엔아동기금(UNICEF)

## 3.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사회보장 협정

### 1) 협정목적

- 연금가입기간 합산으로 연금혜택 확대
- 보험료 이중납부 문제 해소
- 상대국 거주 급여수급자에 대한 지급제한 해제
- 기업의 국내외 투자환경 개선

### 2) 협정의 내용 및 업무절차

- '가입기간 합산 협정'
- '보험료면제 협정'
- 2019년 4월 현재 총 38개국 체결(발효 33, 미발효 5)



## 3주차 2차시 : 국제협약과 국가인권위원회 사례

학습내용	1. 아동,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에 관한 선언과 국제협약을 설명할 수 있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에 차별에 대한 진정 신청을 통한 법 개정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학습목표	1. 사회적 약자의 권리에 관한 선언과 국제협약 2.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법 개정

### 학습내용 1

### 사회적 약자의 권리에 관한 선언과 국제협약

#### 1. 유엔아동권리협약

#####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배경

- 1924년 국제연맹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
- 1959년 유엔아동권리선언 채택(강제성 X)
-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제44차 유엔총회), 1990년 발효(강제성 O)

#####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구성

- 전문, 3부 54조로 구성, 종전의 유엔아동권리선언의 10개 항목 대체 및 제정
- 가입국에게 국제법으로서의 구속력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의의
- 아동에 대한 4대 일반원칙 : 아동차별금지, 아동이익최우선, 아동 생존보호발달, 아동의사존중

##### 3) 우리나라의 가입

- 193개국에 비준, 우리나라 1991년 비준하여 1994년 첫 보고서 제출
- 아동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국가 책임 의의

#### 2. 지적장애인 권리선언

##### 1) 지적장애인 권리선언의 배경

- 1971년 제26차 유엔총회에서 채택
- 장애인복지의 공통 기반과 준거 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
- 다양한 활동분야에서 지적장애인의 잔존능력 개발 지원
- 가능한 한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정상적 생활 영위 가능
- 지적장애인과 지역사회와의 통합 증진 강조
- 정상화의 이념 활용을 통해 각 나라의 소외된 지적장애인에 대한 평등권 확보운동 전개
- 1975년 채택된 장애인권리선언에 영향 및 반영

##### 2) 지적장애인권리선언의 구성(총7조)

- 일반시민과 동등한 기본권이 있음을 천명
- 적절한 의학적 조치와 교육·훈련·재활 지도를 받을 권리
- 경제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 가족과 함께 살 권리
- 후견인을 가질 권리
- 착취와 남용과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중증으로 권리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전문가의 평가와 법적 도움을 받을 권리

### 3. 장애인권리선언

#### 1) 장애인권리선언의 배경

- 1971년 지적장애인권리선언 → 1975년 제30차 유엔총회 채택 → 1981년 유엔 세계장애인의해 지정
-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일반시민과 같이 모든 사회활동에 차별없이 참여할 권리 강조
- 모든 국가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
- 장애인을 구별한 정책, 시설 등의 불평등 문제 해결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 결의

#### 2) 장애인권리선언의 구성(총13조)

- 모든 장애인에게는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할 천부적 권리가 있다(제3조)
- 모든 장애인에게는 최대한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모든 수단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제5조)
- 모든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모든 사안에 대해 유익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제15조)

### 4. 장애인권리협약

#### 1) 장애인권리협약의 배경

-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인권조약의 별도 제정 필요성 제기(1987년-이태리, 1989년-스웨덴 등)
- 2000년 중국 베이징 개최, '장애인의 참여 및 평등권을 위한 신세기 전략 개발을 위한 장애인 세계 비정부기구의 정상회담'에서 베이징 선언 채택,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제정 요청
- 2001년 제56차 유엔총회에서 멕시코 특별위원회 설치 제안 및 채택
- 2002년 8월~2006년 8월까지 특별위원회에서 장애인권리협약안 작업 수행(8차례)
- 2006년 12월 제61차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 2) 장애인권리협약의 구성

- 전문, 4절 50조,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18조)로 구성
- 제1절 총론(제1~8조) ; 협약 전반에 걸쳐 공통 적용 부분(평등과 차별금지-제5조)
- 제2절 실체적 조항(제9~32조) ; 실체적 권리(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21조, 건강-제25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제28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제30조)
- 제3절 장애인권리위원회와 모니터링(제33~40조) ; 국내이행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도구 설명(장애인권리위원회-제34조, 당사국 보고서-제35조, 위원회 보고서-제39조)
- 제4절 절차적 규정(제41~50조) ; 지역통합기구(제44조), 발표(제45조)

#### 3) 장애인권리협약의 특징

- 교육·건강·노동 등 장애인 생활 전 영역에서 권익 보장을 규정한 유엔 인권협약(8번째로 채택)
- 이 협약의 목적은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 보호 및 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 것이다(제1조).
- 우리나라 2008년 12월 2일 협약 비준동의안에 의결했으나, 선택의정서는 국내 제도 미비로 비준 유보(2019년 5월 현재, 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 모두 비준한 국가는 가입 177개국 중 94개국)
- 제35조에서는 협약 발효 후 2년 안에 협약 이행사항을 1차 국가보고서에 담아 제출하고 이후 4년마다 제출토록 함(우리나라, 2011년 1차 보고서 제출했으나 위원회 심사 일정 지연 등으로 2014년엔 2차 보고서 미제출, 2019년 3월 8일 유엔에 2·3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제출)
- 이번 2019년 국가보고서에서 정부는 장애인 차별 권리구제절차상 개인·집단 진정제도 및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직권조사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선택의정서 비준 추진 의지 밝힘
- 우리 정부 그간 주요 성과평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시행을 통한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신축 공공건축물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무장벽)' 인증 의무화 등을 선정.

## 5.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 1982년 비엔나 회의(고령화에 관한 비엔나 행동계획) → 1991년 12월 제46차 유엔총회 결의로 채택  
→ 2002년 마드리드 회의(고령화에 대한 정치선언과 행동계획)
- '독립, 참여, 돌봄, 자아실현, 존엄' 이라는 5개군 18개 항으로 구성
- 고령화 문제가 특정 나라의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의 문제가 되었음을 환기하고 노인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각 나라에서의 발전적인 노인복지정책 추진의 선도 역할

## 6.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 세계 각 나라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으로,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남녀의 존엄과 제반 권리의 평등권 천명(전문과 6부 30조로 구성)
- 1979년 12월 제34차 유엔총회에서 채택, 1981년 9월 발효, 현재 168개국 비준
- 우리나라 1984년 12월 국회 비준(제9조, 제16조 중 일부 유보), 2006년 9월 모든 유보 조항에 대해 철회 통과
- 여성차별에 대한 정의(제1조) :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남녀 동등의 기초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

### 학습내용 2

###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법 개정

#### 1.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차별 시정 사례

##### 1) 배경 및 진행사항

- 2007년 당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한국국적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을 발급이 가능하나, 외국국적의 장애인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등록증 발급 신청 불허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진정인으로 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
- 국가인권위원회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장애인등록 신청가능토록 장애인등록제도 개선 권고(2008.07.15.)

<표1>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있어 외국인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기관유형	분류 I (행위)	분류 II (영역)	위원회명	의결일자
기타국가기관	기타	장애	차별시정위원회	2008.07.15
주요요지	한국 국적의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 받아 장애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외국 국적의 장애인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등록증발급 신청이 아예 불허되고 있음			
판단요지	국내 거주 외국인들도 장애인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등록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장애인권리협약 제5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등			
개정 결과	2012년 12월 「장애인복지법」 개정, 제32조의2조(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등록)이 신설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있어 외국인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재구성함]

## 학습정리

### 1. 사회적 약자의 권리에 관한 선언과 국제협약

#### 1) 유엔아동권리협약

-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제44차 유엔총회), 1990년 발효(강제성 O)
- 가입국에게 국제법으로서의 구속력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의의
- 4대 일반원칙 : 아동차별금지, 아동이익최우선, 아동생존보호발달, 아동의사존중
- 193개국이 비준, 우리나라 1991년 비준하여 1994년 첫 보고서 제출

#### 2) 지적장애인권리선언

- 1971년 제26차 유엔총회에서 채택
- 장애인복지의 공통 기반과 준거 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

#### 3) 장애인권리선언

- 1975년 제30차 유엔총회 채택
-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일반시민과 같이 모든 사회활동에 차별없이 참여할 권리 강조

#### 4) 장애인권리협약

- 2006년 12월 제61차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 전문, 4절 50조,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18조)로 구성
- 교육·건강·노동 등 장애인 생활 전 영역에서 권익 보장을 규정한 유엔 인권협약
- 우리나라 2008년 12월 2일 협약 비준동의안에 의결(선택의정서 유보)

#### 5)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 1991년 12월 제46차 유엔총회 결의
- ‘독립, 참여, 돌봄, 자아실현, 존엄’ 이라는 5개군 18개항으로 구성
- 노인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각 나라에서의 발전적인 노인복지정책 추진

#### 6)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 1979년 12월 제34차 유엔총회에서 채택, 1981년 9월 발효
- 우리나라 1984년 12월 국회 비준
- 세계 각 나라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 2.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법 개정

#### 1)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있어 외국인 장애인에 대한 차별』

- 국내 거주 외국인들도 장애인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등록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
- 2012년 12월 「장애인복지법」 개정, 제32조의 2조(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등록)이 신설

## 4주차 1차시 : 사회복지법의 법원

학습내용	1. 사회복지법원의 개념 2. 성문법 3. 불문법
학습목표	1. 사회복지법의 원천과 존재양식인 법원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2. 헌법, 법률, 명령 등 성문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자연법, 관습법 등 불문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학습내용 1

#### 사회복지법원의 개념

##### 1. 법원(法源)

###### 1) 법원의 개념

- 법원(法源)이란 법의 존재 형식
- 법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말하는 것이 법원
- 일반적으로 법원은 법을 적용하는 법관이 재판을 할 때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기준
- 일반국민에게 어떤 것을 법으로 인식해야 하고, 이에 따라 어떤 행위를 강제력 있는 법으로 다루어야 하는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
- 법원은 법관에게 있어서 재판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법관에게 무엇이 법인지의 기준을 제시
- 법원은 표현형식에 따라 크게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분류
- 보편적으로 성문법주의를 채택하면서 성문법규에 없는 경우 불문법 인정

##### 2. 사회복지법의 법원

###### 1) 사회복지법원의 개념

- 사회복지에 관한 실정법의 인식근거 내지 그 존재형식
- 사회복지와 관련한 급여성서비스의 내용, 조직과 관리 등 사회복지법의 원천과 존재양식을 의미
-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를 채택, 사회복지법원은 주로 성문법, 불문법은 보충적으로 사용

### 학습내용 2

#### 성문법

##### 1. 성문법에 있는 법의 존재형식

###### 1) 헌법

- 국가의 통치 구조의 원리를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근본규범
- 사회복지의 범위와 내용을 규정한 최상위의 규범으로 하위 법체계인 법률, 명령, 규칙 등 지배
-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행복추구권
-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 제32조 근로의 권리

- 제33조 노동기본권 3권(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제35조 환경권 및 주거권(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제36조 혼인과 가정생활의 보호, 모성의 보호 및 보건권

2) 법률

- 국회에서 제정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한 헌법의 하위 법
-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는 법규들이며 국민의 생존권 실현
- 사회복지기본법,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서비스법 등
- 서비스의 주체, 서비스의 대상자, 서비스의 종류, 급여의 수준, 서비스 전달체계 등 규정

3) 명령과 규칙

- 법률의 현실적 적용을 위해 법률의 하위 규범인 명령(시행령)과 규칙(시행규칙)
-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법률 규정 현실 적용을 위해 구체적인 세부규정이 필요
- 시행령은, 대통령의 명령(대통령령)으로 기본법에 규정이 있어야 함
- 시행규칙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기본법에 규정이 있어야 함

<표 1> 아동복지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b>아동복지법</b> [법률 제16248호, 2019. 1. 15., 일부개정]	<b>아동복지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9627호, 2019. 3. 19., 일부개정]	<b>아동복지법 시행규칙</b> [보건복지부령 제625호, 2019. 4. 16., 일부개정]
<b>제44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b>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하 생략>	<b>제41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b> 법 제44조제1항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b>제19조(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 등)</b>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아동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 3. 소년소녀가정의 아동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정의 아동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 <이하 생략>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http://www.law.go.kr) 발췌]

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
- 각각의 지역특성에 따른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 제정, 해당 지역에만 효력
- 조례와 규칙의 내용이 사회복지에 관한 규정이면 사회복지법원
- 조례는, 지자체의 사무에 관한 법규로 해당 지방의회에서 제정
- 규칙은, 지자체의 장(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정

5) 국제법

- 국제조약과 국제법규로 구분,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제법은 사회복지법원
-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헌법 제6조제1항)
- 국제조약은, 우리나라와 외국 간 또는 국제기관과의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조약, 협약, 협정, 약정 등)

- 국제법규는,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아닌 조약으로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법규(UN헌장, 외교관면책특권 등)

## 학습내용 3

## 불문법

### 1. 불문법에 있는 법의 존재형식

#### 1) 자연법

- 인간의 본성에 바탕을 둠
- 시대와 장소에 관계없이 영구불변의 효력을 가진 보편적인 법
-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약한 사람을 도와줘라!
- 자연법의 인간존엄, 자유 등의 기본적인 지침들이 사회복지법에도 반영

#### 2) 관습법

- 국가나 사회 안에서 일정한 관행(관습)이 장기간 시행
- 사회중심구성원이 법으로 승인 국가가 그 효력을 인정
- 근친상간 불허, 어르신 공경 등
- 관습법 성립 조건(국민다수의 법적 확신, 관행의 영속성, 국가의 법 승인)
- 법령이 없는 경우만 성립, 법의 보충적 성격을 가짐
- 시대에 따라 변함(아동, 아내 폭력적 지배에 대한 처벌 변화)

#### 3) 판례법

- 법원에서 내린 판결(판사가 만드는 법)로, 상급심판례와 선판례로 구분
- 상급심판례는, 상급법원의 판단이 당해 사건에 관한 하급심을 기속(법원조직법 제8조)
- 선판례는, 동종의 사건에서 재판의 선례를 따른다는 것으로 판례에 구속력
- 사회복지법 판례가 적으나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임

#### 4) 조리법

-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물의 이치, 도리, 합리적 원리
- 어르신 공경, 사회적 약자 보호 등
- 성문법, 관습법, 판례법에도 없는 경우 조리가 법원으로 사용
- 인간존중, 인간다운 생활 등을 추구하는 사회복지이념에 대한 보편적 판단 원리

## 1. 법원(法源)

### 1) 법원의 개념

- 법의 존재 형식
- 법관이 재판을 할 때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기준
- 법원은 표현형식에 따라 크게 성문법과 불문법

### 2) 사회복지법의 법원

- 사회복지법의 원천과 존재양식
- 우리나라 성문법주의 중심에 불문법 보충적 사용

## 2. 성문법

### 1) 헌법

### 2) 법률

### 3) 명령과 규칙

### 4) 자치법규

### 5) 국제법

## 3. 불문법

### 1) 자연법

### 2) 관습법

### 3) 판례법

### 4) 조리법



## 4주차 2차시 : 사회복지법의 법적 위계구조

학습내용	1. 법의 위계구조 2. 사회복지법의 위계구조 3. 사회복지법의 내용적 구조
학습목표	1. 최상위 헌법을 포함한 법의 위계구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법인 사회복지법의 위계구조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3. 규범적 타당성 체계와 실효성 체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의 내용적 구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학습내용 1

### 법의 위계구조

#### 1. 법의 위계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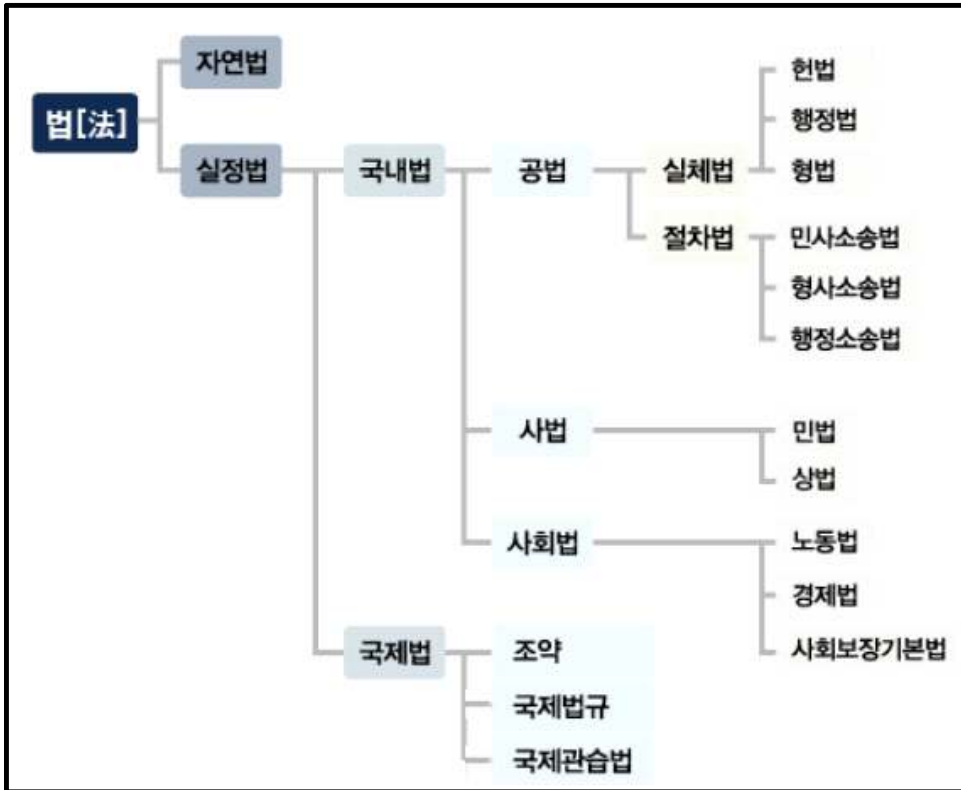
##### 1) 자연법과 실정법

- 법이 실증적으로 제정법화가 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자연법과 실정법으로 구분
- 자연법은, 인간의 본성에 근거하여 인간의 올바른 사회생활을 위한 근본지침으로 당위법
- 실정법은, 특정시대나 특정장소에서 효력을 가지는 법규범으로 성문법과 불문법

##### 2) 실정법의 구조

- 국내법의 최상위는 성문법인 헌법으로 헌법의 정신을 벗어나 제정·개정 불가
- 실정법은 공법, 사법, 사회법으로 구분
- 공법은, 실체법(헌법, 행정법, 형법 등)과 절차법(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으로 분류
- 사법은, 민법과 상법 등으로 구분
- 사회법은, 노동법, 경제법, 사회복지법 등으로 구분
- 국제법은, 조약, 국제법규, 국제관습법 으로 구분
-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헌법 제6조제1항)
- 조약은 국회 동의를 거치므로 법의 위계구조상 법률과 같은 효력

<그림1> 법의 위계구조



[출처 : 두산백과사전 [www.doopedia.co.kr](http://www.doopedia.co.kr)]

## 학습내용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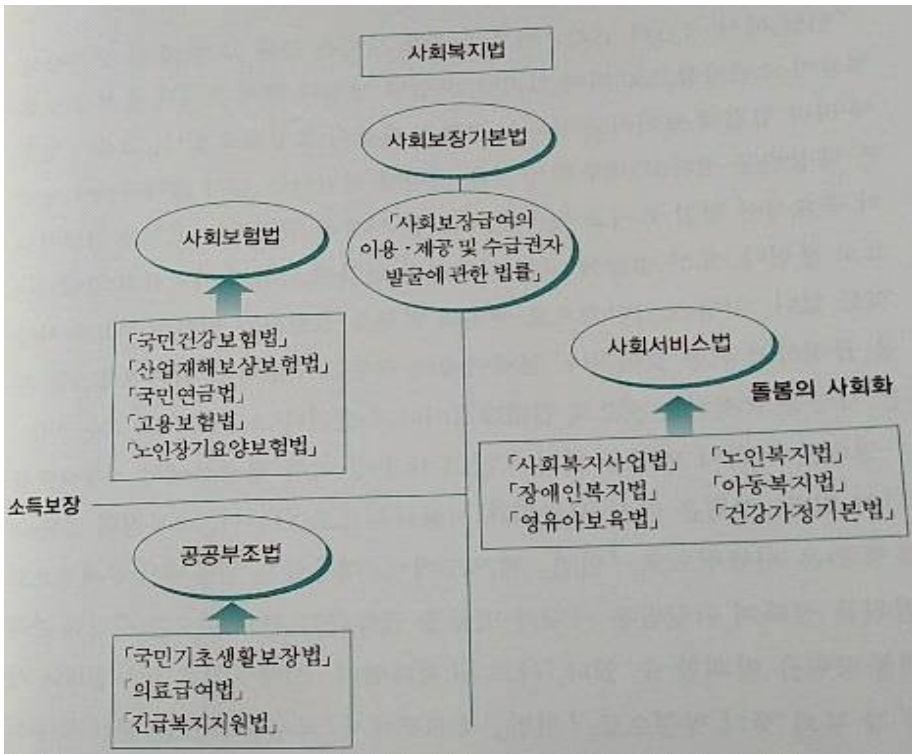
### 사회복지법의 위계구조

#### 1. 사회복지법의 위계

##### 1) 사회복지법의 위계

- 사회법은 노동법, 경제법, 사회복지법으로 구성
- 사회복지법을 총괄하는 법으로 사회보장기본법
- 헌법 제34조에서 명시한 복지권을 구체적이면서 포괄적으로 표현
- 헌법 >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법(사회보장기본법의 정신 안에서 제정·개정)

<그림1> 사회복지법의 위계구조



[출처 : 부교재 p.65에서 발췌]

<표 1> 헌법 제34조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p>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p> <p>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p> <p>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p> <p>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p> <p>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발췌]

<표 2> 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2018. 12. 11.] [법률 제15885호, 2018. 12. 11., 일부개정]
<p>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본 이념)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p>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발췌]

## 2) 사회법으로서의 사회복지법

- 사회복지법은 법률(국회 제정) >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규칙(부령)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지방의회 의결) > 규칙(지자체장)
- 사회복지 관련 조례 및 규칙이 복지욕구의 증대로 증가 추세  
(서울시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아산시 '어르신 이·미용권', 익산시 '백일상·돌상 대여비 지원 등 2천4백여개 ; 2018년말 현재)

### 학습내용 3

### 사회복지법의 내용적 구조

#### 1. 규범적 타당성 체계

##### 1) 권리성

- 사회복지법의 대상자를 권리의 주체로 인정
- 개인의 권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에 따른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
- 권리성에 대한 직접적인 명시가 없어도 헌법에서 규정한 권리성 인정

##### 2)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

- 대상자 선정에 대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 사회복지 수급권리 개념 vs 경제적·정치적 논리 개념

##### 3) 급여의 요건과 범위

- 법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되어야 급여 수급
- 법 문장 중 '~할 수 있다' 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임의규정
- 사회복지급여 수급자를 충족시키기 부족한 급여수준(현금, 현물, 바우처 등)

##### 4) 재정부담의 원칙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재정부담의 규범적 타당성(분담비율 등) 및 국민 책임
- 법 문장 중 '~할 수 있다', '보조할 수 있다'는 국가의 책임 약화, 시혜성 누양스
- 국가부담비율의 후퇴는 규범적 타당성을 낮추는 현상

<표 3> 사회복지법의 규범적 타당성 사례

권리성	<p><b>[아동복지법]</b>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	<p><b>[기초연금법]</b>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p>
급여의 요건과 범위	<p><b>[노인장기요양법]</b> 제29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중단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li> <li>2.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li> </ol>
재정부담의 원칙	<p><b>[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b>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6. 1. 28.&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li> <li>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li> </ol>

[출처 : 주교재 pp. 44-46 재구성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http://www.law.go.kr) 발췌]

## 2. 실효성 체계

### 1) 주체 및 조직

- 공급주체로부터 수급권자에게 실효성 있게 전달되기 위한 전달체계 확립 중요
- 공적주체(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등)와 민간기관(사회복지법인, 기업, 시민단체 등)
- 공신력이 담보된 주체나 조직이 서비스를 공급토록 명확히 규정할수록 실효성 제고

### 2) 인력

- 사회복지급여 제공의 전문인력인 사회복지사 등이 서비스 수행
- 전문인력들에 대한 보수교육 의무화 시행
- 전문인력들에 대한 자격시험, 봉사자 교육 등

### 3) 재정조달 방법

- 공공부조는 조세 등의 수입으로 인한 국가부담으로 재정조달방법 실효성 높음
- 사회보험의 경우 국민 지출 보험료의 기여와 국가 기여의 부담률 차이 관건
- 특수직연금에 대한 국가재정의 과다출혈 현실, 개혁의 필요성 지속 제기

### 4) 권리구제

- 이의신청, 심사청구 규정이 있으나 행정적 구제절차에 불과
- 법적 절차의 복잡성, 시간, 비용 등을 고려시 실효성 의문
-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위해 국민 스스로 점검해야 함

### 5) 형벌

-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복지형법의 의미가 있는 벌칙 규정 존재

- 수급권자의 이익이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강화
- 허위, 부정수혜, 민간기관의 의무이행문제, 보조금 부정수급, 임권 규정 위반

## 학습정리

### 1. 법의 위계구조

- 1) 법의 위계구조
  - 자연법과 실정법
  - 실정법의 구조 : 공법, 사법, 사회법(노동법, 경제법, 사회복지법)

### 2. 사회복지법의 위계구조

- 1) 사회복지법의 위계
  - 사회복지법의 위계(헌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법)
  - 사회법으로의 사회복지법(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등)

### 3. 사회복지법의 내용적 구조

- 1) 규범적 타당성 체계
  - 권리성
  -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
  - 급여의 요건과 범위
  - 재정부담의 원칙
- 2) 실효성 체계
  - 주체 및 조직
  - 인력
  - 재정조달 방법
  - 권리구제
  - 형벌

## 5주차 1차시 : 입법권과 국회에 대한 이해

학습내용	1. 입법권의 개념 2. 입법권의 범위 3. 국회의 구조와 역할
학습목표	1. 국회중심주의에 입각한 입법권의 개념을 파악할 수 있다. 2.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에 의한 입법권의 범위를 분석할 수 있다. 3. 입법기관인 국회의 구조와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 학습내용 1

### 입법권의 개념

#### 1. 입법권의 개념

##### 1) 입법권

-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리
-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헌법 제40조)
- 입법을 통해서 실질적·구체적 법률의 제정·개정·폐지 권한이 국회에 있음 ; 국회중심주의 원칙
- 입법 작용은 '국가기관에 의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성문법 규범의 정립작용'으로서, 헌법 제40조의 입법권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규범 정립 권한
- 법률안을 작성하거나 제출할 권리까지 모두 국회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헌법 제52조)
-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음.
- 현행 헌법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정부에 대하여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
- 이것은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가미한 결과물이며, 국회에 대한 행정부의 우월성이 보장

##### 2) 입법권의 협의적 절차

- 협의적으로 볼 때, 입법절차를 국회에 법률안이 제출되는 시점부터 의미

##### 3) 입법권의 광의적 절차

- 법의 제·개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과 요인 등이 포함
- 정부에서 입법이 준비되는 과정
- 정당 또는 이익집단 등이 행하는 입법에 관한 활동
- 여론의 조성활동 등 정책의 공식화 과정
- 입법에 관한 의견 제시 등

##### 4) 입법체계의 구성

- 입법 절차는 의회와 정부는 물론 정당이나 이익집단, 선거구민, 사법부, 입법전문가단체 등의 상호작용
- 입법체계에 여론, 행정적 요청, 국민적 요청, 압력단체의 주장, 시민운동, 외국의 동향 등의 투입요인이 작용하여 모든 집단의 이해와 대립을 조정하는 과정의 동태적 질서

## 학습내용 2

## 입법권의 범위

### 1. 입법권의 범위

#### 1) 국가기관의 입법권 범위

- 행정입법 :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
- 자치입법 :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 사법입법 : 대법원, 헌법재판소

#### 2) 국회의 단독 입법권 범위

- 헌법 개정 심의·의결권
- 법률안 심의·의결권
-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 국회규칙의 제정권

<표 1> 기본적인 입법권의 범위와 절차

법률안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부령
· 헌법 제95조에 의거 · 정부제출 법률안 · 의원발의 법률안(10인 이상 찬성) · 국회의 의결 필요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 헌법 제75조에 의거 ;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 법률집행에 필요한 사항 · 헌법 제76조제1항 ;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안녕질서 유지 등 긴급한 조치 필요시 명령 발휘 ·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	· 헌법 제95조에 의거 · 국무총리 또는 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발휘

[출처 : 주교재 p.54, 부교재 p.31을 재구성함]

## 학습내용 3

## 국회의 구조와 역할

### 1. 국회의 구조

#### 1) 기본구조

- 국회는 의장(1명)과 부의장(2명), 위원회로 구성(헌법 제49조, 국회법 제15조 1항)
  - 입법지원 조직 :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 교섭단체의 구성 :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
  - 교섭단체는 의원들 간 사전 통합·조정, 정파간 교섭의 창구역할로 국회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
  - 교섭단체는 본회의 및 위원회에 있어서 발언자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선임 등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 기준 시행
- 교섭단체 대표의원

#### 2) 국회의원

- 선거권(만19세 이상), 피선거권(만25세 이상), 임기(4년)
- 2019년 5월말 현재, 국회의원 300인(지역구 253인, 비례대표 47인)



- 지역구 국회의원 :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 비례대표 국회의원 :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배분
- 국회의원 특권 :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등
- 국회의원 의무 : 헌법상의 의무(겸직금지의무, 청렴의무, 국익우선의무, 지위남용금지의무 등)
- 국회법상의 의무 : 품위유지의무, 국회의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의무, 의사에 관한 법령·규칙 준수 의무 등

### 3) 위원회

-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분
- 필요성1 : 고도의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된 입법과 의안을 처음부터 본회의에서 심의·처리가 부적절
- 필요성2 : 본회의 의안심사의 효과성·효율성을 위해, 소수위원들로 하여금 의안을 예비적으로 심사 검토
- 국회는 위원회중심으로 운영, 모든 의안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침
- 위원회는 의안을 자유로이 수정할 수 있음
- 위원회 내 대안 제시는 위원회의 원안 심사기간 동안만 인정

### 4) 상임위원회

- 소관사항에 관한 입법, 기타의 의안을 예비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상설 위원회
- 2019년 5월말 현재, 총 17개 상임위원회
- 사회복지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 개회 : 본회의 의결,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5) 특별위원회

- 상설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비상설특별위원회 :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 심사
- 비상설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 종료(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 시까지 존속

<그림 1> 국회의 조직



[출처 : 대한민국 국회 [www.assembly.go.kr](http://www.assembly.go.kr) 발췌]

## 2. 국회의 역할

### 1) 입법

- 헌법개정안 제안·의결권 : 특정조항을 수정·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
- 법률 제정·개정권 : 법률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

- 조약 체결·비준동의권 :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

## 2) 재정

- 예산안 심의 : 1회계연도에 있어서 국가의 세입·세출에 대한 예정적 계획
- 결산심사 : 1회계연도에 있어서 국가의 수입·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
- 기금심사권 :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자금

## 3) 일반국정

- 국정감사·조사권 :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과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를 수집
- 헌법기관 구성권 :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임명동의권, 헌법재판소재판관(3인) 등
- 탄핵소추권 :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 4) 외교

- 초청외교활동 : 외국 의회 주요 인사를 공식 초청 등
- 방문외교활동 : 의회차원의 협력강화 및 외교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상대국을 방문 등
- 국제회의의 참석 : 다자간 교류 협력강화 및 국제적 현안 대응을 위하여 국제회의에 참석 등

# 학습정리

## 1. 입법권의 개념

### 1) 입법권의 개념

- 입법권
- 입법권의 협의적 절차
- 입법권의 광의적 절차
- 입법체계의 구성

## 2. 입법권의 범위

### 1) 입법권의 범위

- 국가기관의 입법권
- 국회의 단독 입법권

## 3. 국회의 구조와 역할

### 1) 국회의 구조

- 기본구조
- 국회의원
- 위원회(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 2) 국회의 역할

- 입법
- 재정
- 일반국정
- 외교

## 5주차 2차시 : 법률의 입법과정

학습내용	1. 정부의 입법과정 2. 국회의 입법과정 3. 대통령령의 입법과정
학습목표	1. 중앙정부에 의한 법률 입법과정을 나열할 수 있다. 2. 국회에 의한 입법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3. 대통령령에 의한 입법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 학습내용 1      정부의 입법과정

#### 1. 정부입법

##### 1) 정부의 입법절차

- 헌법 제52조에 의거 정부입법 가능
- 법률소관의 정부가 정책을 결정
- 그 정책의 시행과 관련한 입법 필요성 제기 시 법률안 입안
- 입안된 법률안 내 관계된 기관들과 협의(수정·보완 등)후 법률안 확정
- 확정 법률안을 국민들에게 예고·공개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입법예고)
- 국민의 의견을 검토 후 수정·보완된 법률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진행
- 부패영향평가(권익위), 통계기반정책평가(통계청), 성별영향분석평가(여가부) 등 각종 평가
- 법률안 법제처에 심사 의뢰, 법제처 법리적 문제 검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검토 등 심사
- 법제처 심사 마친 법률안 차관회의 → 국무회의 → 대통령 재가 → 국회 제출
- 국회에서 법률안 심사 후 본회의 거쳐 → 정부로 이송
- 법제처 법률안을 국무회의 상정 → 국무회의(심의·의결) → 대통령 재가 → 법제처 관보 게재 및 공포
- 법령의 종류 및 내용 등에 따라 소요기간이 다름
- 정부 내에서의 입법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5개월~7개월 정도 소요.(단축, 연장될 수도 있음)

<그림 1> 정부입법 법률안 절차



[출처 : 법제처 [www.moleg.go.kr](http://www.moleg.go.kr) 발췌]

<표 1> 정부입법 법률안 단계별 소요기간

입법과정	소요기간
법령안의 입안	약 30 ~ 60일
부패영향평가	약 15 ~ 30일
관계기관과의 협의	약 10일 이상
입법예고	약 40 ~ 60일
규제심사	약 15 ~ 20일
법제처 심사	약 20 ~ 30일
차관회의 심의	약 7 ~ 10일
국무회의 심의	약 5일
대통령 재가 및 국회 제출	약 7 ~ 10일
국회의 심의·의결 및 공포안 정부이송	약 30 ~ 60일(국회일정에 따라 변동)
국무회의 상정	약 5일
공포	약 3 ~ 4일

[출처 : 법제처 [www.moleg.go.kr](http://www.moleg.go.kr) 자료를 재구성함]

## 학습내용 2

## 국회의 입법과정

### 1. 국회입법

#### 1) 국회의 입법발의

- 헌법 제52조에 의거 의원발의(입법) 가능
- 국회의원 발의(10인 이상 동의 필요)
- 국회의 위원회 : 그 소관사항에 관하여 법률안 입안 발의(위원장 명의) : 국회의원 발의 범주
- 국회의장 : 헌법상 법률안 제출권이 없는 대법원, 중앙선관위, 감사원에서 관련법 개정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 제안 법률안으로 제출
- 국회에서의 입법과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상임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단계
-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부이송 후 15일 이내에 법률안 거부 가능(헌법 제53조·환부거부)

#### 2) 국회의 입법발의 과정의 다양성

- 의원이 직접 기초하는 경우
- 정부 또는 제3자가 기초하여 제공하는 안을 근간으로 의원이 입안하여 제출
- 관련 단체 등이 마련한 법률 초안을 의원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
- 정당에 소속된 의원이 소속 정당의 정책 실무부서에서 입안한 법률안을 당내 절차를 거쳐 발의

### <그림 2> 국회의 입법과정



[출처 : 대한민국 국회 [www.assembly.go.kr](http://www.assembly.go.kr) 발췌]

### 학습내용 3

### 대통령령의 입법과정

#### 1. 행정입법

##### 1) 대통령령의 입법절차

- 행정입법으로서 입법절차에서 국회의 심의를 요하지 않음
- 법률과 같이 국회제출 → 국회 심의 → 정부이송 절차를 거치지 않음
-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곧바로 공포

##### 2) 총리령과 부령의 입법절차

- 총리령은 국무총리가 부령은 행정 각부의 장관이 발하는 명령



## 1. 정부의 입법절차

### 1) 정부입법

- 헌법 제52조에 의거 정부입법 가능
- 소관 정부 → 법제처 → 국무회의 → 대통령 재가 → 국회
- 국회 → 법제처 → 국무회의 → 대통령 재가 → 공포

## 2. 국회의 입법절차

### 1) 국회의 입법발의

- 헌법 제52조에 의거 의원발의(입법) 가능
- 국회의원 발의(10인 이상 동의 필요)
- 국회 입법과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상임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단계

### 2) 국회의 입법발의 과정의 다양성

- 의원 직접 기초, 정부·제3자 제공 안 기초, 관련 단체 법률초안 기초, 정당 정책 실무부서 입안 기초 등

## 3. 대통령령의 입법절차

### 1) 행정입법

- 대통령령의 입법절차(국무회의 필요)
- 총리령과 부령의 입법절차(국무회의 불필요)
- 행정입법은 입법절차에서 국회의 심의를 요하지 않음

## 6주차 1차시 : 한국 사회복지법의 역사

학습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제강점기, 미군정기의 사회복지법</li> <li>2. 제1~6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li> <li>3. 문민정부부터 최근 사회복지법</li> </ol>
학습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제강점기, 미군정기의 사회복지법을 설명할 수 있다.</li> <li>2. 제1~6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을 파악할 수 있다.</li> <li>3. 문민정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사회복지법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li> </ol>

### 학습내용 1

### 일제강점기, 미군정기의 사회복지법

#### 1. 일제강점기

- 일제강점기는 1910년 8월 29일 ~ 1945년 8월 15일
- 일제강점기의 사회복지입법은 1944년 3월 1일 전문33조로 된 조선구호령이 전부
- 일본은 내선일체로 한국을 일본으로 편입할 뿐 정책이나 법제에는 무관심
- 빈민에 대한 욕구 충족 보다는 식민지의 안정적 지배에 초점을 맞춘 규정에 불과
- 조선구호령(일제) → 후생국보(미군정기) → 생활보호법(1961년)
- 조선구호령은 형식상으로 근대적 의미의 공공부조가 한국에 최초로 제도화된 것

[표1] 일제강점기의 사회복지입법

사회복지법	관련 내용
조선구호령	전문 33조로 구성 · 피구호자(제1조) : 65세 이상 노쇠자, 13세 이하 유아·임산부·불구·폐질·질병·상병·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자 · 구호기관(제3조) : 대상자 거주지의 부윤 또는 읍면장 등 · 구호시설(제6조) : 양로원, 보육원, 병원 등 · 구호종류(제10조) : 생활부조, 의료부조, 조산부조, 생업부조
조선구호령의 근거와 배경	· 일본은 자국에 1929년 구호법을 제정·공포하고 1932년 1월1일부터 사회복지활동을 시작하였으나, 식민지였던 한국에는 22년 뒤 조선구호령을 공포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였다. 군사물자 지원과 징병 등에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일본의 구호법을 한국에서도 확대 실시한 것이다. · 정치적 목적과 식민지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지극히 시혜적인 사회복지법이 실시된 것이다.

\*출처 : 주교재 p.107 및 법제처 [www.law.go.kr](http://www.law.go.kr) 참조 재구성함

#### 2. 미군정기



- 미군정기는 1945년 8월 ~ 1948년 8월
- 과도기적인 한국사회의 혼란에 대처하기 위한 응급적이고 임시방편적 입법
- 일제강점기와 대한민국이라는 독립국가 형성 사이의 과도기적 단계
- 전반적으로 기존 임시적인 성격 계승, 통제 및 온정주의적 성격
- 열악한 경제적 상황 속에서 수많은 월남, 귀환민들 중심으로 광범위한 빈곤 형성
- 기아방지, 최저생계유지, 의료보호 등에 중점

[표2] 미군정기의 주요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	관련 내용
각서	미군정 실시하에 사회사업체 및 구호에 관련된 여러 각서(memorandum)가 후생국보에 발표되어 조선구호령과 함께 사용됨
후생국보 제3호	1946.01.12. 공공부호를 요구하는 자는 ① 65세 이상 된 자 ② 6세 이하의 부양할 아동을 가진 여자 ③ 13세 미만의 아동 ④ 불치병으로 신음하는 자 ⑤ 분만 시 원조를 요구하는 자 ⑥ 정신적·육체적 결함이 있는 자로 규정함.
후생국보 제3A호	1946.01.12. 이재민과 피난민의 구호규정 발표. 구호내용은 식량, 의료, 숙소, 연료, 주택부조, 긴급의료, 매장, 차표 제공 등
후생국보 제3C호	1946.02.07. 거택구호를 원칙으로 규정. 이재민, 피난민, 빈궁자, 고아 등에 대한 응급조치 및 임시구호
군경법령 제112조 (아동노동법규)	1946.09.18. 미군정은 군경법령 제112조. 아동노동법규를 제정하여 어린이의 노동을 보호하는 법령을 공포함
과도정부법령 제4호 (미성년자노동보호법)	1947.05.16. 과도정부법령 제4호. 미성년자노동보호법을 제정공포하여 미성년자를 유해, 위험한 직업 또는 과중한 노동으로부터 보호하여 어린이의 건전한 발육과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도록 함

\*출처 : 주교재 p.108 및 법제처 [www.law.go.kr](http://www.law.go.kr) 참조 재구성함

## 학습내용 2

## 제1~6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 1. 제1~2공화국 시대

- 제1공화국(이승만 대통령) : 1948년 8월 15일(정부수립) ~ 1960년 4월 19일
- 제2공화국(윤보선 대통령, 장면 총리) : 1960년 6월 15일 ~ 1961년 5월 16일
- 미군정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지만 여전히 응급구호와 외원에 의존하는 구호
- 한국전쟁(1950년 6월 25일 ~ 1953년 7월 27일)으로 막대한 재산 및 인명피해 발생
- 수많은 사회복지 대상자 양산, 전쟁고아 수용과 보호, 전쟁이재민 구호를 위한 시설 등장
- 외부원조기관으로부터 유입된 물자를 통해 빈곤과 고통을 해결해 가는 시기(1950년 중반이후)

[표3] 제1~2공화국의 주요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	관련 내용	
제헌헌법	제19조 “노령, 폐질,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함	사회부조의 법적 근거 마련, 제한적이지만 생존권 이념을 헌법에 명시함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1949.04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정	동란·천재지변에 의한 피해자 구제, 의료사업, 사회구호사업, 교화사업 등 시행함
군사원호법과 경찰원호법	1950.04. 군사원호법, 1951년 경찰원호법 제정 : 이후 1961년 군사원호보상법 제정으로 폐기	상이군경, 전몰군경, 유가족들의 생활문제에 대처함
후생시설 설치기준령	1950.02.27. 모든 시설은 이에 준하는 설비의 충실, 강화 및 운영의 적정을 기하려는 목적	어린이 양호에 만전을 기할 목적으로 제정·공포됨
사회사업목적 법인설립규칙	1952.10.04. 사회부장관통첩으로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설립 허가신청에 관한 규칙을 공시함	종전의 시설서립이 등록제였던 것에서 허가제로 전환함. 전쟁 후 우후죽순처럼 난립했던 시설에 대한 통제의 전환점이 됨
후생시설 운영요령	1952.10.04. 각종 구호시설에 대해 지도·감독의 필요성 제기되어 훈령으로 후생시설운영요령을 제정하여 시달함	각 시·도는 시설운영과 지도·감독의 준칙으로 삼음
근로기준법	1953.05.01. 제정, 산업화의 진행에 따른 근로자보호를 제도화, 제28조에서 퇴직금제도를 명시하고, 고용주책임제의 사회보장대책을 마련함	
기타 사회복지 행정시책	1956년 어린이헌장 제정·선포하였고, 사회복지전문인력양성소 설치함	국립중앙사회사업종사자훈련원

\*출처 : 주교재 pp.108~109 를 재구성함

## 2. 제3공화국 시대

- 박정희 대통령 : 1961년 5월 ~ 1972년 10월
- 절대빈곤의 해소를 위해 경제개발계획 수립, 공업화 전략을 통해 산업화, 도시화, 인구집중, 핵가족화 경향, 환경문제 촉진

[표4] 제3공화국의 주요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	관련 내용	
헌법 (생존권 규정)	헌법 제30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생존권 조항이 헌법에 명시됨
공무원연금법	1960.01.01. 제정, 국가, 지방공무원들의 퇴직, 사망, 질병, 부상, 폐질, 재해 시에 본인이나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목적	한국 사회보험법의 효시
갱생보호법	1961.09.30. 제정, 징역, 가석방자, 선고유예자, 가퇴원자 등을 대상으로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고, 자립활동의 경제적 기반을 조성시켜 사회를 보호하고 개인 및 공공의 복질증진을 목적	교정사회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법의 기초이자,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성격을 지님
군사원호보상법	1961.11.01. 제정, 한국전쟁 후의 상이군경, 전몰군경 및 그 유족을 보호하기 위함	중전의 군사원호법, 경찰원호법 통합
윤락행위 등 방지법	1961.11.09. 제정, 윤락행위를 방지하여 국민의 풍기정화와 인권존중에 기여함을 목적	일제 때 공창인정, 행방 후 원칙적으로 윤락금지
생활보호법	1961.12.30. 제정,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자 등에 대한 보호와 방법 규정,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를 목적	1944년 조선구호령 폐지, 실정법으로 공공부조 실시, 빈곤정책의 획기적 전환
아동복지법	1961.12.30. 제정,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	아동은 미래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가의 보호육성 법제화
선원보호법	1962.01.10. 제정, 선원과 그 가족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	시행령 부제로 사문화
재해구호법	1962.03.30 제정, 비상재해 발생 시 응급구호, 재해복구, 이재민 보호, 사회질서유지를 목적	
국가유공자특별 원호법	1962.04.16. 제정, 국가를 위해 공헌·희생한 유공자와 가족에 대한 국가의 예우를 행함으로써 유공자와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함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도 목적
군인연금법	1963.01.28. 제정, 국민의 퇴직 후 생활을 보장함	군인과 가족의 복지향상 기여
산업재해보상보 험법	1963.11.05. 제정, 근로자의 업무 중 재해나 직업병 등을 보상하여 근로자보호, 사용자부담책임 대행함	근로자와 가족, 사업주를 위험부담에서 제거, 경감시키는 목적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1963.11.05. 제정,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효율적 발전을 기함	1995. 12. 사회보장기본법 제정으로 폐기
의료보험법	1963.12.16. 제정, 국민의 질병, 부상, 분만 또는 사망 등에	실시 여건 미비로, 1977. 7. 에서야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 국민보건 증진과 사회보장의 증진 도모 목적	500명 이상 사업장 중심 강제적용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	1968.07.23. 제정, 근로능력이 있는 영세민에게 근로구호를 실시함과 동시에 구호용 양곡의 적정한 관리를 기함으로써 자활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함을 목적	생활보호법의 보충적 성격
사회복지사업법	1970.01.01. 제정,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의 공정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다른 법률들에 대한 기본법

\*출처 : 주교재 pp.109~110 을 재구성함

### 3. 제4공화국 시대

- 박정희 대통령 : 1972년 10월(유신헌법) ~ 1979년 10월(10.26)
- 경제개발정책과 근대화 정책 지속 추진을 통해 고도성장에 성공했으나, 저임금, 환경문제, 소외계층 양산, 빈부격차, 지역 간 불균형 등 양산
- 경제개발과 사회개발 병합하여 사회가치나 사회목적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 사회복지입법 추진

[표5] 제4공화국의 주요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	관련 내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1973.12.30. 제정,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연금(공무원연금의 성격과 동일)임	1975.01.01. 시행(교원 우선적용) 1978.01.01. 직원에게 확대적용
국민복지연금법	1973.12.24. 제정,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	여건미성숙으로 실행되지 못하여, 1988년 국민연금법으로 명칭 개정실시함
의료보험법	1976.12.22. 제정, 기존 의료보험법 전면 개정을 통해, 500명 이상 사업장근로자의 강제적용(최초 강제 적용 규정)	1963년 제정된 법은 임의적용으로, 사회보험의 의미가 상실됨
의료보호법	1977.12.31. 제정,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	생활보호법과 함께 공공부조의 양대 축을 이루는 법으로서 공공부조의 기본골격을 이룸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	1977.12.31. 제정,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및 그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 그들이 건강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 도모	사업장과 함께 의료보험제도의 적용범위가 확장됨

\*출처 : 주교재 p.111 을 재구성함

### 4. 제5공화국 시대

- 전두환 대통령 : 1981년 2월 ~ 1988년 2월
- 12·12사태로 인한 정통성 취약을 4대 국정지표(복지사회건설 포함) 천명으로 추진
- 경제성장의 지속과 더불어 사회발전도 함께 국가목표로 설정

[표6] 제5공화국의 주요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	관련 내용	
헌법 (생존권 규정)	헌법 제34조제2항 : 생존권 규정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욱 명백히 함	생존권 실현이 소득보장, 의료보장뿐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 급여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사회복지사업 기금법	1980.12.31. 제정, 사회복지사업의 효과적 수행에 필요한 비용조달의 한 방법으로 기금을 설치운영할 것과 기부금 모집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사회복지사업기금과 기부금 모금을 통해 적극적으로 국민복지증진 노력 의지
아동복지법	1981.04.13. 전면개정, 급여대상자를 기존 요보호아동에서 범위를 모든 아동으로 확대함	1961년 제정된 아동복지법을 전면개정함
심신장애자 복지법	1981.06.05. 제정, 심신장애자의 재활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및 이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 목적	장애인에 대한 법률 제정 의의
노인복지법	1981.06.05. 제정, 노인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강추함으로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 목적	노인부양의식 약화에 따라 국가 및사회의 노인문제 해결 및 요구에 대한 대처 입법
사회복지사업법	1983.05.21. 전면개정 : 복지증진의 책임 명문화(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사자격 규정(1,2,3급)
생활보호법	1983.12.30. 개정 : 기존 보호에 자활과 교육을 추가함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자에 대한 자활보호 추가
갱생보호법	1986.12.23. 개정 : 갱생보호대상자의 보호 강화 등	경제적 자립기반조성, 재범방지 등
국민연금법	1986.12. 전면개정 :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개칭.	근로능력상실 이후 국민의 소득보장제도의 골격
최저임금법	1986.12 제정, 노동자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의 실현을 목적으로 함	근로자의 생존권 실현을 위한 강행법이라는 점 의의

\*출처 : 주교재 pp.111-112 을 재구성함

## 5. 제6공화국 시대

- 노태우 대통령 : 1988년 2월 ~ 1993년 2월
- 19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진 시대로, 지방자치를 다시 시작
-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제정 및 적용대상과 내용의 확충

**[표7] 제6공화국의 주요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	관련 내용
보호관찰법	1988.12.15. 제정, 재범 방지 및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를 위한 지도·원조를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 및 공공복지와 사회보호를 목적
모자복지법	1989.04.01. 제정, 모자가정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영위 및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
의료보험법	1989.07.01. 개정, 도시지역 주민을 제도권 내에 포함 1989.10.01. 개정, 약국에서도 의료보험을 적용함
장애인복지법	1989.12.20. 개정,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의 법제명을 변경, 장애인이 법적 권리의 주체로 인정, 다양한 서비스 수급 등
영유아보육법	1991.01.14. 제정, 보호자가 근로, 질병, 기타 사정으로 영아 및 유아를 보호하기 어려울 때, 이들의 심신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해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
사내근로자 기금법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생활안정의 지원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사업이익의 일부를 출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목적
사회복지사업법	1991.12. 개정, 사회복지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함

\*출처 : 주교재 pp.111-112 을 재구성함

**학습내용 3**

**문민정부부터 최근 사회복지법**

**1. 문민정부 시대**

- 김영삼 대통령 : 1993년 2월 ~ 1998년 2월
-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등 사회복지입법사에서 큰 기초를 잡음

**[표8] 문민정부의 주요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	관련 내용
고용보험법	1993.12.27. 제정,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향상을 도모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94.01.05. 제정, 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 등을 규정하여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을 목적
국민연금법	1995.01.05. 개정, 당연적용대상을 농어민과 농어촌지역 자영자에게까지 확대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995.01.05. 개정, 갱생보호법에 의한 관찰보호가 보호관찰로서 일원화, 성인범죄까지도 보호관찰의 적용대상이 됨
사회보장기본법	1995.12.30. 제정, 1963년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확대 개편하여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법 폐기 ; 이 법은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기본법임

정신보건법	1995.12.30., 제정, 정신질환자에게 효율적인 의료 및 사회복지귀를 돕는 데 기여함을 목적
사회복지공동모금법	1997.03.27. 제정,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공동 모금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 지역민간복지의 발전에 기여함
청소년보호법	1997.03.07. 제정,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함
사회복지사업법	1997.08.22. 개정,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7개에서 13개 법으로 확대하고,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국가고시로 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97.12.31. 제정,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
국민의료보험법	1997.12.31. 제정, 국민의 질병·부상·분만·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 증진 도모를 목적.

\*출처 : 주교재 pp.113-114 을 재구성함

## 2. 국민의정부 시대

- 김대중 대통령 : 1998년 2월 ~ 2003년 2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급여의 권리성 및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 정책
-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으로 의료보험제도의 통합과 각종 법률의 개정을 통한 내실화

[표9] 국민의 정부 주요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	관련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1999.02.08. 제정, 종래의 의료보험법을 확대 개편하여 직장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농어촌 및 도시 자영자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의료보험체계를 구축함(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09.07. 제정,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한 최저생활 보장 및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생활보호법은 폐지됨
장애인과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2000.01.12. 개정, 근로능력과 의욕이 있는 모든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개정됨
정신보건법	2000.01.12. 개정, 정신보건법 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함
의료급여법	2001.05.24. 전부개정,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변경됨 ; 시혜에서 권리개념으로 변경됨
모·부자복지법	2002.12 개정, 부자가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모자복지법을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

\*출처 : 주교재 pp.114-115 을 재구성함

## 3. 참여정부 시대

- 노무현 대통령 : 2003년 2월 ~ 2008년 2월
- 사회복지정책에서 분배에 초점을 둔 입법

- 현대사회에 맞는 전문화된 법령들의 제정·시행, 국민 이해를 위해 법령문구의 수정

**[표10] 참여정부의 주요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	관련 내용
건강가정기본법	2004.02.09. 제정,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발전을 위한 국민과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담은 법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004.03.22. 제정, 성매매알선행위자를 처벌하는 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4.03.22. 제정, 성매매된자 등의 사회복지권을 돕는 법제로, 2010년 4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시 폐기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2006.03.24. 제정,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하기 위하는 등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제
기초노령연금법	2007.04.25. 제정, 노인의 국가 및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점을 인정, 저소득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려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7.04.27. 제정,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보험방식을 도입운영하는 법제
고용보험법	2007.05.11. 전면개정,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제한 규정 등을 법률에서 직접 정함
국민연금법	2007.07.23. 전면개정, 급여수준의 단계적 인하(급여수준을 평균소득액의 60%에서 2008년 50%, 2009년부터 2028년에는 40%로 인하), 기존 수급자 및 기존 가입자를 기득권 보장
한부모가족지원법	2007.10.17. 모·부자복지법의 법제명 변경 및 일부개정, 자녀가 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까지 확대지원토록 함

\*출처 : 주교재 pp.115-116 을 재구성함]

#### 4. 이명박정부 시대

- 이명박 대통령 : 2008년 2월 ~ 2013년 2월
- 실용정부 표방, 맞춤형 복지, 빈곤의 대물림 차단 등 일하는 복지를 표방한 능동적 복지 정책
- 일자리 창출, 장애인·노숙자 대상 입법제정

**[표11] 이명박정부의 주요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	관련 내용
장애인연금법	2010.04.12. 제정,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저소득층에 대해 매월 일정액의 무기여연금을 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0.05.20. 개정,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를 신설함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2011.01.04. 제정,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 등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또는 주간보호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
노숙인 등의 복지 및	2011.06.07. 제정, 노숙인 등에 대한 지원체계 통합, 주거·급식·의료 등 복지서비스 제공 및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립지원하여 건전한 사회복지권을 도모 목적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2011.07.21. 개정,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해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과 실업급여가 가능토록 개정
아동복지법	2011.08.04. 전부개정, 아동종합실태조사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시행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 강화함
입양특례법	2011.08.04. 고아입양특례법을 입양특례법으로 변경, 국내외 입양 모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국내입양 우선 추진 의무화 등으로 개정함
장애아동복지 지원법	2011.08.04. 제정,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담은 법제
국민건강보험법	2011.12.31. 개정,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2016년말까지 연장, 직장가입자에 관하여 소득월액보험료 징수 근거 마련
사회보장기본법	2012.01.26. 전부개정, 국민의 보편적·생애주기적 특성에 맞게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확대
사회복지사업법	2012.01.26. 개정, 사회복지사업에 있어 인권보호 강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권을 광역자치단체로 이임 및 법인 이사구성을 7인 이상으로 높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12.02.01. 개정, 지자체 내 광역자활센터 지정, 중앙자활센터의 수행사업 규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012.05.23. 개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소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서 대통령으로 격상함

\*출처 : 주교재 pp.116-117 을 재구성함

## 5. 박근혜정부 시대

- 박근혜 대통령 : 2013년 2월 ~ 2017년 3월 10일
- 창조경제 표방, 기초연금 제정 및 연금액 인상, 기초법에서는 기준중위소득을 기준 적용 맞춤형 복지제도로 전환, 발달장애인법 등 제정

**[표12] 박근혜정부의 주요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	관련 내용
아동복지법	2014.01.28. 개정,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재취업 불가기간 10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4.01.25. 제정, 긴급한 조치 및 보호가 가능토록 하고, 강력한 대처와 예방 추진
기초연금법	2014.05.20. 제정, 기존 기초노령연금법 폐지하고 신규제정을 통해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인상
장애인연금법	2014.05.20. 개정, 20만원으로 인상
발달장애인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4.05.20. 제정,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보호자 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14.06.25. 개정, 일상생활 곤란한 경증치매환자에게까지 장기요양급여 확대(5등급 신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14.12.30. 개정, 빈곤기준선의 중위소득 도입, 급여별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 지원대상 확대 일할수록 유리한 급여체계 마련 등 탈수급 유인 촉진 및 빈곤예방 기능 강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014.12.30. 제정,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조사, 결정, 지급, 사후관리 등을 일원화와 수급권자 보호를 강화함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및 보장에 관한 법률	2015.01.28. 개정, 편의시설 설치비용 높이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 도입
영유아보육법	2015.05.18. 개정, 어린이집의 CCTV의무화, 보육교직원의 자격기준 강화 및 보수교육에 인성함양 과목 추가 등 아동학대범죄의 예방과 재발을 목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016.05.29. 전부개정,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으로 축소 정의, 입원·퇴원 제도 개선, 복지서비스 제공 추가함

\*출처 : 주교재 p.118 을 재구성함

## 6. 문재인정부 시대

- 문재인 대통령 : 2017년 5월 ~
- 사회보장관련 내용들의 강화 방향으로 진행 중
- 부양의무자 규정이 주거급여에서 폐지, 향후 단계적 폐지 방침 밝힘
- 1988년 도입된 장애인 등급제 폐지(2019년 7월), 기존 6개 등급제를 장애 정도에 따라 두 단계(중증·경증)로만 구분, 각종 장애인 지원 확대추진
-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수당법이 2018년 제정

### 1. 일제강점기, 미군정기의 사회복지법

- 1) 일제강점기 : 조선구호령을 통한 식민지 지배 관리
- 2) 미군정기 : 후생국보를 통한 임시적·응급적

### 2. 제1~6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 1) 제1~2공화국 : 응급구호와 외원에 의존하는 구호
- 2) 제3~4공화국 : 급속한 경제개발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 3) 제5공화국 : 경제성장의 지속과 더불어 사회발전도 함께 국가목표로 설정
- 4) 제6공화국 :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제정 및 적용대상과 내용의 확충

### 3. 문민정부부터 최근 사회복지법

- 1) 문민정부 :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등 사회복지입법사에서 큰 기초를 잡음
- 2) 국민의정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권리성 및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 정책
- 3) 이명박정부 : 맞춤형 복지, 빈곤의 대물림 차단 등 일하는 복지를 표방한 능동적 복지 정책
- 4) 박근혜정부 : 기초연금 제정 및 연금액 인상, 맞춤형 복지제도로 전환, 발달장애인법 등 제정
- 5) 문재인정부 : 사회보장관련 내용들의 강화 방향으로 진행 중

## 6주차 2차시 : 한국 사회복지법의 특성과 전망

학습내용	1. 사회복지입법의 시대별 특성 2. 사회복지입법의 전망
학습목표	1. 사회복지입법의 제·개정 특성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시대별 특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의 제·개정에 대한 전망을 예측할 수 있다.

### 학습내용 1

### 사회복지입법의 시대별 특성

#### 1. 일제강점기

- 조선구호령(1944) 외에 특별한 법제가 없음
- 식민지 지배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차원의 단순 시혜적 제도
- 생활보호법(1961) 제정까지 공공부조의 역할을 함

#### 2. 미군정기

- 사회복지조치, 조선구호령과 군정법령에 근거
- 구호대상은 가족·친족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생활무능력자를 대상
- 사회적 혼란에 대처하기 위한 구호적·응급적 성격만 가짐

#### 3. 제1~2공화국(1948.8~1961.5)

- 법률적·입법적 근거 없이 정부(사회부)의 행정명령에 의해 시행
- 응급구호, 외국원조의 시대
- 전후 복구이후에도 비효율적·비합리적 정책지속 ; 정치적 갈등 지속, 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 부족, 민간의 사명감 부족 등

#### 4. 제3~4공화국(1961.5~1979.10)

- 사회복지입법에 있어 정치적 요소가 영향을 많이 미침
- 정치적 이유로 만들어진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유보되었던으로 법의 시행 이루어짐
- 사회보험 도입을 선별주의에 입각하여 경제개발과 사회보장제도를 병행하여 추진
- 제3공화국은 공공부조와 관련된 법들이 주로 제정
- 제4공화국은 사회보험 관련된 법들이 주로 제정
- 사회복지법 체계상 가장 주요한 사회보장법의 골격을 갖추게 된 의의

#### 5. 제5공화국(1981.2~1988.2)

- 헌법(제34조제2항)을 통한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책임 확립
- 사회복지서비스법 분야의 제정과 개정을 통한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심신장애자복지법 등 중요 법 제정
- 사회보험에서는 국민연금법 전면개정을 통해 다음 정권에서 국민연금의 본격시작 밑거름

- 사회복지서비스법의 보완과 함께 최저임금법, 보호관찰법 등 사회복지 관련법의 범위가 확대

## 6. 제6공화국(1988.2~1993.2)

- 실시가 유보되었던 국민연금의 시행과 실행중인 법률의 적용대상 확대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 및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공무원의 서비스 수행
- 사회복지서비스법에서 가족과 관련된 법률(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이 제정·개정

## 7. 문민정부(1993.2~1998.2)

-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으로 사회복지 관계법의 체계화 가능하게 된 역사적 의의
- 고용보험법 제정으로 실업문제 대처 가능
- 사회복지법에서 임상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제정(정신보건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
- 국민의 자발적 사회복지재원의 참여 관련 법 제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8. 국민의정부(1998.2~2003.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과 생산적 복지의 기반 마련
- 세계화의 흐름 속에 대세가 된 근로연계복지의 모습을 법 내용에 본격 적용

## 9. 참여정부(2003.2~2008.2)

- 성매매에 대한 근절을 법제정(성매매자에 처벌과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위한 법)으로 보임
- 국민연금의 재정압박은 결국 기본연금액을 2028년에 4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전면개정
-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을 통해 사각지대 노인들의 노후 소득 보장 추진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푸드뱅크 사업의 법적 장치 마련 및 기부문화 활성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을 통해 치매·중풍 등 노후의 요양문제 대한 국가정책 강구
- 법령의 문구를 국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수정

## 10. 이명박정부(2008.2~2013.2)

-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을 통해 국민의 보편적·생애주기별 사회보장제도 확대
- 장애인연금법 개정을 통해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 보전 방향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제정하여 장애아동의 양육보호 지원 등 보편적 성격으로 전환
- 노숙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 및 사회복지귀를 돕는 법 제정
- 입양특례법을 개정하여 국내외 입양 모두 법의 허가 실시 및 입양숙려제도 실행
-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진폐근로자 특례 실행
-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저출산·고령화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

## 11. 박근혜정부(2013.2~2017.3)

-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 및 제정
- 기초연금법 제정으로 기준연금액 인상(약2배인 20만원으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급여체계 변경
-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률 제정
- 정신질환자의 입원에서의 권리침해 부분들을 보완하는 등을 포함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 12. 문재인정부(2017.5~2017.3)

-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방향으로 추진 중(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액 인상 등)
- 부양의무자 규정 단계별 폐지, 장애인 등급제 폐지

## 13. 한국 사회복지입법의 평가

### 1) 형식적 모양에서 실질적 입법 과정으로 변화

- 외형상 법률이 존재했으나 실제 적용이 어려운 법들을 보완
- 1963년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1995년에 가서야 사회보장기본법으로 실질적 적용 등

### 2) 정치적 성격이 강했던 법제정에서 국민욕구를 중요시 하는 입법과정

- 군인연금법(1963), 공무원연금법(1960)에 대한 개혁이 2000년대 넘어서면서 추진

### 3) 경제·교육 등 국민의 의식 수준 향상에 따라 발전

- 심신장애자복지법(1981), 노인복지법(1981), 영유아보육법(1990),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1990년대)

### 4) 국가중심의 복지입법에서 국민중심의 복지입법으로 진화

- 법개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확대
- 영유아보육법이 지금의 무상보육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맞춤형 복지로 진화

### 5)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입법에서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 입법으로 전개

- 사실상 시행이 어려운 국민복지연금법(1973)이 1986년 국민연금법 제정으로 시행
- 법률의 제정·개정을 통한 미래세대와 공감하는 입법 필요

### 6) 국제화에 맞추어 가는 입법 확대

- 그간 국제화 흐름에 맞춘 입법이 부진, 세계 경제적 위상에 맞는 국제법 준수 필요
- 국제법상 각종 규범, 규약, 협약에 있어 비준안 확대 필요

## 학습내용 2

## 사회복지입법의 전망

### 1. 입법과정에서의 국민의 참여와 적극적인 의견수렴

- 국민의견수렴 단계의 활성화
- 사회복지계 법률안 국회 상정 전 의견제시토록 노력 필요(소관 상임위원회 대상)

### 2. 강행규정으로 제정·개정되어 복지수급권의 타당성 제고

- 임의규정이 많은 사회복지법들의 개정 필요
- 사회복지법 제정시 복지수급권에 대한 강행규정화 노력

### 3. 세계화 시대에 맞는 사회복지입법

- 다문화가족, 이주노동자 관련 인권과 복지문제 노력
-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선연적 규정이 실효성 있는 법으로 개정 필요

### 4. 생활중심의 사회복지입법

- 급변하는 시대에 비해 뒤떨어지는 입법 활동의 역동성 필요
- 특히, 저출산, 보육, 청소년, 청년실업, 노령화, 건강보장 등 실생활과 직결된 복지욕구에 적극 대응 필요

### 5. 국회 계중 중인 사회복지법률안을 통한 입법 전망

-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주요 법률안

[표]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입안자)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1인)	2019-06-27	노인장기요양급여의 부정수급 적발 강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범죄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2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0인)	2019-06-27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내용에 주간활동서비스 제반 업무를 명시함으로써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자 확대에 따른 예산과 인력 확보의 용이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의원 등 11인)	2019-06-26	이에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입원을 통해 정신질환 증상을 조기에 치료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2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3인)	2019-06-25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취업제한 등 대상이 되는 기관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정기관을 추가하여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제7호, 제32조제1항제2호 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욱의원 등 11인)	2019-06-24	가. 경찰관이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등에게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한 경우, 요청을 받은 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44조제2항 후단 신설). 나.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이 신고 현장에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2 신설). 다.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할 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퇴원등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에 그 퇴원등의 사실을 통보하는 주체에 관할 경찰서장을 추가함(안 제52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욱의원 등 11인)	2019-06-12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의 실제소득 산정 시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보훈급여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제4호 단서 신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등 10인)	2019-06-10	전통시장,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을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인 공동주택의 규모도 현행 500세대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장소 및 안내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p>것임.</p> <p>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이용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 신설).</p>
<p>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등 10인)</p>	2019-06-07	<p>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장애 정도가 심한 자폐성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가족도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단서).</p>
<p>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3인)</p>	2019-06-04	<p>UN 인간정주위원회에 따르면, 열악한 주거환경은 아동의 놀이, 학습능력 뿐만 아니라 건강한 성장에 장애가 됨. 아동의 주거환경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아동 주거 빈곤에 관한 아동정책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음.</p> <p>특히, 우리나라가 1990년에 비준한 「UN 아동권 협약」에 규정된 아동의 주거 관련 국가의 의무에 대해 여전히 법률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p> <p>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주거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빈곤아동에 대한 주거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아동이 적절한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3조제3호, 제4조제1항 등).</p>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을 재구성함]

## 학습정리

### 1. 사회복지입법의 시대적 특성

- 일제강점기 : 조선구호령 외에 특별한 법제가 없음
- 미군정기 : 사회적 혼란에 대처하기 위한 구호적·응급적 성격만 가짐
- 제1~2공화국 : 응급구호, 외국원조의 시대
- 제3~4공화국 : 정치적 입법이 있었으나 사회보장법의 골격을 갖추었음
- 제5공화국 : 헌법(제34조제2항)을 통한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책임 확립과 개별 사회복지법이 제정
- 제6공화국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 및 사회복지공무원의 서비스 수행
- 문민정부 :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으로 사회복지 관계법의 체계화 가능하게 된 역사적 의의
- 국민정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과 생산적 복지의 기반 마련
- 참여정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을 통해 치매·중풍 등 노후의 요양문제 대한 국가정책 강화
- 이명박정부 :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을 통해 국민의 보편적·생애주기별 사회보장제도 확대
- 박근혜정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급여체계 변경
- 문재인정부 :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방향으로 추진 중(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액 인상 등)
- 한국 사회복지입법의 평가 : 실질적 입법, 국민욕구 중시, 국민 의식수준 고려, 국민중심 입법, 미래지향적 입법, 국제화 등

### 2. 한국 복지입법의 전망

- 입법과정에서의 국민의 참여와 적극적인 의견수렴
- 강행규정으로 제정·개정되어 복지수급권의 타당성 제고
- 세계화 시대에 맞는 사회복지입법
- 생활중심의 사회복지입법



## 7주차 1차시 : 사회복지 자치법규(조례와 규칙)의 개념과 기능

학습내용	1. 사회복지 조례와 규칙의 개념 2. 사회복지 조례와 규칙의 기능 3. 사회복지 조례의 제정 범위와 내용
학습목표	1. 지방자치입법인 사회복지 조례와 규칙의 개념에 대해 정의할 수 있다. 2. 지방자치입법인 사회복지 조례와 규칙의 중요성과 기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지방자치입법인 사회복지 조례의 제정 범위와 내용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 학습내용 1

### 사회복지 조례와 규칙의 개념

#### 1. 조례

-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만든 지방자치지역 내에서 효력을 나타내는 자치법규
- 사회복지조례는 사회복지에 관련된 조례
-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제정됨으로 일률적일 수 없음
-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인 반영 의지

#### 2. 조례의 분류

##### 1) 법령 위임 여부에 따른 분류

- 위임조례 :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부령) - 조례(지방자치단체의 법령 시행을 위해 제정) ;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됨(규정과 입법 취지 모두 포함) ; 상하관계 라기 보다는 위임
- 자치(직권)조례 : 법령의 위임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하여 직권으로 정하는 조례

##### 2) 조례 제정, 재량 여부에 따른 분류

- 필수조례 : 법령에 의하여 반드시 제정하여야 하는 조례
- 임의조례 : 법령의 규정 여하에도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재량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

##### 3) 주민과 관계 여부에 따른 분류

- 주민의 권리의무 및 벌칙에 관한 조례는, 거의 대부분이 위임조례 내지 필수조례
- 필수조례 중에는 법령상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조례로 규정토록 명시 다수

#### 3. 규칙

-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자치법규(지방자치법 제23조)
- 법령위임규칙, 조례위임규칙, 기관위임규칙

#### [표1] 규칙의 분류

분류	내용
법령위임규칙	·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규칙 ·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함(규칙 부재시 법령의 시행이 불가능 한 경우) · 위임조례와 유사한 성격
조례위임규칙	· 조례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규칙 · 조례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은 조례집행규칙
기관위임규칙	· 시·도 및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함(지방자치법 제102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해 규칙 제정(지방자치법 제23조) · 법령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가 없어도,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은 규칙을 제정할 수 있음

\*출처 : 이명남(2018), (5판)사회복지법제론, 창지사 p.147-148을 재구성함

#### 4. 자치법규의 효력

##### 1) 자치법규 상호 간의 효력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사이의 우월관계 다양한 유형
- 법령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위임에 의한 조례와 규칙은 동급
- 조례에서 규칙에 위임한 경우 규칙은 조례의 하위
- 법률의 위임없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관해 제정된 직권조례는 규칙보다 상위

##### 2) 공간적 효력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한정되는 것이 일반 원칙
- 예외적으로 자치법규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서도 효력을 가질 수도 있음 ; 공공시설을 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지방자치법 제144조제3항)

##### 3) 시간적 효력

- 법령과 같이 공포·시행되어 실효 또는 폐지될 때까지 효력을 가짐
- 특별한 규정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 지나면 효력 발생(지방자치법 제26조제8항)
- 원칙적으로 시행 이후의 발생 사실에 대하여만 효력 발생
- 예외적으로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 소급효 인정될 수 있음

##### 4) 인적 효력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 일반적
- 예외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들어온 다른 지자체 주민이나 해당 지자체와 특별한 관계를 가진 자에 대해 효력을 미침(지방세 중 공동세, 관광지 관리조례 등)

#### 5. 자치법규 관계 법령

##### 1) 헌법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음(헌법 제117조제1항)
- 자치법규를 담당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조직과 운영,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에 관한 사항(헌법 제117조제2항 및 제118조)

##### 2)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할 수 있는 자치법규를 조례(제22조)와

규칙(제23조)으로 규정

-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
  -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음
  - 넓은 의미의 자치법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는 법규 보충적인 행정규칙(훈령, 예규 등)과 그 권한의 범위에서 직권으로 정하는 행정규칙도 포함되나,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조례와 규칙만을 자치법규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시·도의회에 교육 학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둠(제4조)
  - 교육의원은 시·도의회 의원 지위와 권한을 가짐(제6조제1항)
- 4) 행정절차법, 법제업무운영 규정
- 주민의 자치입법에의 직접 참여를 활성화하고 자치입법에 대한 민주성 제고 위해 입법예고제도 시행 규정(행정절차법 제41~45조)
- 5) 의회규칙, 의회위원회조례
- 각 지방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등

## 6. 자치법규의 기본원칙

1) 소관사항의 원칙

- ‘그 사무에 관하여’ 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국가사무, 기관위임사무 등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 제정 불가

2) 법령의 범위 안의 원칙

-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가능 ; 자치법규에 한미 FTA 조약 관련 사항 규정 불가능

3) 법률유보의 원칙

- 헌법 제37조제2항에 의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만 법률로 제한 가능
- 조례로 주민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경우, 법률의 위임여부 확인

4) 효력우위의 원칙

-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은 광역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위반할 수 없음 ; 광역자치단체 위임사무·공동사무·관련 사무에만 해당

5) 기타 원칙

-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권한분리 및 배분원칙
- 법의 일반원칙(비례, 평등, 신뢰보호, 적법절차, 체계정당성, 포괄위임금지)

1. 지역복지 발전

- 지방자치 정착, 자치입법권의 확대로 주민생활과 자치행정에 미치는 영향력 증대
- 사회복지 조례와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내의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사회복지법령의 제정 못지않게 지역복지 발전을 위한 조례와 규칙 제정 중요
- 국회에서 제정 된 사회복지법률들이 지역에 맞게 운용되고 실천되기 위한 역할과 기능

2. 조례와 규칙의 기능

- 새로운 규범을 창조하는 기능
- 법률의 제정을 선도하는 기능
- 법률을 보완하는 기능
- 법률과 사회적 현실 간의 괴리를 조정하는 기능

3. 조례와 규칙의 의미

- 자치법규의 입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그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으로서의 의미

1. 조례 제정권의 헌법적 보장

- 조례는 지역사회복지의 보장 요인이나 사회복지조례 상당수는 법령 위임 수준
- 조직 유지와 관리 중심으로 주민을 위한 자치입법으로는 한계
- 헌법 제117조제1항에서 부여한 자치입법권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규정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
- 법상 공백상태라도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는 헌법정신(117조 제1항)에 입각, 지역성을 갖는 자치(자주)조례 제정 필요

2. 사회복지 조례 제정 범위

- 법령의 범위 안에 있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의 별표1에 규정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10가지)와 지방자치법령의 주민의 복지증진에 위반되지 않는 사무 제정 가능
- 조례는 반드시 법령의 명시적 위임사항만이 아닌 법령의 위임 없이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 가능

3. 사회복지 조례 내용

- 지역 특성을 담아낸 창의적인 사회복지 자주조례 입법 필요
- 지역사회 문제, 지역사회 욕구, 지역사회 사회적 위험 등 예방·해결을 위한 조례 필요
- 지역적 특성 고려 수급권자 선정, 급여의 종류 및 수준, 재정부담, 관련 조직, 전문인력 사항 포함 필요

[표2] 지방자치법에 의한 사회복지조례의 범위

조항	내용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p>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p> <p>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p> <p>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p> <p>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p> <p>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p> <p>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p> <p>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p> <p>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p> <p>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p> <p>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p> <p>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p>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내용을 재구성함

[표3]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사회복지조례의 범위(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구분	시·도 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2.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복지 증진 및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li> <li>시·군·자치구에 공통되는 복지업무의 연계·조정·지도 및 조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복지 증진사업계획의 수립·시행</li> <li>시·군·자치구 단위 주민복지시설의 운영·지원</li> <li>주민복지 상담</li> <li>환경위생 증진 등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사업 실시</li> </ul>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복지시설의 수요 판단과 지역별 배치 등 기본계획의 수립</li> <li>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li> <li>사회복지법인의 지도·감독 및 지원</li> <li>사회복지시설 수혜자에게 비용 수납 및 승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li> <li>사회복지시설 수혜자에게 비용 수납</li> <li>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보조 및 지도</li> <li>사회복지법인 등의 시설 설치허가 및 그 시설의 운영 지도</li> </ul>
다. 생활이 어려운 자의 보호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보호 실시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li> <li>생활보호비용의 일정액 지원</li> <li>시·군·자치구에 대한 생활보호보조금 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보호대상자 조사·선정</li> <li>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관리</li> <li>생활보호의 실시(생업자금대여, 직업훈련, 취로사업, 수업료 지급, 강제보호비지급등)</li> <li>생활보호비용의 일정액 지원</li> </ul>
라. 노인·아동·장애인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인복지사업계획 수립·조정</li> <li>경로사업의 실시·지원</li> <li>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인복지사업계획 수립·시행</li> <li>노인복지사업의 시행</li> <li>경로행사 등 경로사업의 실시·지원</li> <li>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복지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li> <li>• 아동상담소의 설치·운영</li> <li>• 아동전용시설의 운영</li> <li>• 아동보호조치</li> <li>•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지원</li> <li>•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li> <li>• 장애인복지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조정</li> <li>• 아동전용시설의 운영</li> <li>• 아동보호조치</li> <li>•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지원</li> <li>•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li> <li>• 장애인복지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조정</li> <li>• 장애인의 검진·재활상담 및 시설에의 입소</li> <li>• 장애인의 고용 촉진</li> <li>•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지도·권고</li> <li>•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li> <li>• 청소년 건전육성계획 수립·조정</li> <li>•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li> <li>•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시·도 단위)</li> <li>• 청소년육성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li> <li>• 청소년의 달 행사 추진</li> <li>• 청소년단체 육성·지원</li> <li>•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li> <li>• 불우청소년 보호 지원</li> <li>• 여성복지 종합계획 수립·조정</li> <li>• 모자보건사업계획의 수립·조정</li> <li>• 여성단체 육성·지원</li> <li>• 여성복지시설의 운영·지원</li> <li>• 성매매피해자 등의 선도 및 직업교육·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복지사업계획 수립·시행</li> <li>• 아동상담소의 설치·운영</li> <li>• 아동전용시설의 운용</li> <li>• 아동보호조치</li> <li>•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지원</li> <li>•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li> <li>•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인 지정</li> <li>• 장애인복지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li> <li>• 장애인의 파악·관리</li> <li>• 장애인의 검진, 재활상담 및 시설에의 입소</li> <li>• 장애인의 고용 촉진</li> <li>•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지도</li> <li>•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li> <li>• 청소년선도대책 수립·추진</li> <li>• 보호할 필요가 있는 청소년의 선도·계몽</li> <li>• 불우청소년보호</li> <li>•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li> <li>•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시·군·구 단위)</li> <li>• 청소년지도위원 위촉</li> <li>• 청소년의 달 행사 추진</li> <li>• 여성복지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li> <li>• 모자보건사업의 세부계획 수립·시행</li> <li>• 모자보건기구의 설치·운영</li> <li>• 모자보건대상자의 선정 (수첩의 발급 등)</li> <li>•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li> <li>• 여성교실 운영 및 여성 교육</li> <li>• 여성단체 육성·지원</li> <li>• 여성복지시설의 운영·지원</li> <li>• 성매매피해자 등의 선도 및 직업교육·지원</li> </ul>
<p>마. 국민건강증진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계획 수립</li> <li>•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운영</li> <li>• 보건교육 지도·감독</li> <li>• 영양개선업무 지도·감독</li> <li>• 구강건강사업계획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건강증진업무 세부계획수립</li> <li>• 주민건강실천운동 지원</li> <li>•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운영</li> <li>• 보건교육의 실시 및 지도·감독</li> <li>• 영양개선업무 수행 및 조사</li> <li>• 구강건강사업의 수행</li> </ul>
<p>바.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자치구 보건소 설치·운영비의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소 및 지소의 설치·운영</li> <li>• 무의촌(無醫村) 및 오지 주민에 대한 순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환경연구원의 설치</li> <li>• 시·도의료원의 설치·운영</li> <li>• 공중보건사의 배치·지도</li> <li>• 보건진료소 설치·운영비의 지원</li> </ul>	<p>진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li> </ul>
사. 전염병 및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염병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및 주민 홍보</li> <li>• 전염병 예방시설 설치</li> <li>• 전염병 예방·방역과 그에 따른 비용 지원</li> <li>• 전염병 진료를 위한 대응기관의 지정 및 기관에 대한 경비 보조</li> <li>•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염병 예방을 위한 주민 홍보·계도</li> <li>• 전염병 예방접종 실시</li> <li>• 전염병 예방대응시설 지정 및 운영</li> <li>• 전염병의 예방조치와 소독의 실시</li> <li>• 전염병환자의 격리수용 및 진료조치</li> <li>•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li> </ul>
아. 묘지· 화장장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봉안당의 설치·운영</li> <li>• (도의 경우는 제외한다)</li> <li>•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묘지· 화장장 및 봉안당의 허가</li> <li>• 재단법인이 설치한 묘지· 화장장 및 봉안당의 구역 및 시설변경과 폐지허가</li> <li>• 재단법인이 설치한 묘지· 화장장· 봉안당의 이전명령, 시설개수 또는 허가취소</li> <li>• 분묘의 일제신고</li> <li>• 시체운반업 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봉안당의 설치·운영</li> <li>• (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li> <li>• 매장· 화장 및 개장신고와 묘적부관리</li> <li>• 종중· 문중 또는 자연인이 설치하는 묘지· 화장장 및 봉안당의 허가</li> <li>• 종중· 문중 또는 자연인이 설치한 묘지· 화장장· 봉안당의 구역 및 시설변경과 폐지허가</li> <li>• 종중· 문중 또는 자연인이 설치한 묘지 등의 이전명령, 시설개수 또는 허가취소</li> <li>• 무연분묘(無緣墳墓)의 정리</li> <li>• 분묘의 개장명령</li> <li>• 무연분묘의 개장허가</li> </ul>
이하 생략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내용을 재구성함

## 학습정리

### 1. 사회복지 조례와 규칙의 개념

- 1) 조례 : 지방의회에서 만든 지방자치지역 내에서 효력을 나타내는 자치법규
- 2) 규칙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사무에 관하여 제정
- 3) 자치법규의 효력 : 자치법규 상호 간 효력, 공간적 효력, 시간적 효력, 인적 효력
- 4) 자치법규 관계 법령 : 헌법,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령 등
- 5) 자치법규의 기본원칙 : 소관사항, 법령의 범위 안, 법률유보, 효력우위 등

### 2. 사회복지 조례와 규칙의 기능

- 1) 지역복지 발전
- 2) 새로운 규범 창조, 법률 제정 선도, 법률 보완 등
- 3)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그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으로서의 의미

### 3. 사회복지 조례의 제정 범위와 내용

- 1) 조례 제정권의 헌법적 보장
- 2) 사회복지 조례 제정 범위
- 3) 사회복지 조례 내용
  - 지방자치법에 의한 사회복지조례의 범위
  -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한 사회복지조례의 범위(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 7주차 2차시 : 사회복지 자치법규(조례와 규칙)분석

학습내용	1. 사회복지 자치법규 사례 분석 2. 사회복지 자치법규의 문제점과 대안 사례
학습목표	1. 우리나라 사회복지 자치법규의 실태에 대한 사례를 분석할 수 있다. 2. 우리나라 사회복지 자치법규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학습내용 1      사회복지 자치법규 사례 분석

#### 1. 전국 자치법규 현황(2019년 6월 30일 기준)

- 전국 자치법규 106,300개(조례 81,729개, 규칙 24,571개)

[표1] 자치법규 현황표(2019.06.30 기준)

구분	시도	시군구	총계
조례	8,526	73,203	81,729
규칙	2,101	22,470	24,571
훈령	1,576	12,781	14,357
예규	564	2,508	3,072

\* 출처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참조

#### 2. 경기도 안산시 사회복지 자치법규 현황

- 안산시의 경우 현행(2019년 6월 기준), 사회복지영역 자치법규는 7개 영역 총75개
- 대부분의 조례가 위임조례
- 일자리정책 조례 확대 : 2015년 3개 → 2019년 6월 14개
- 노인, 장애인 영역 조례 소폭 상승 : 2015년 19개 → 2019년 6월 24개
- 여성·가족 조례 소폭 상승 : 2018년 4월 12개 → 2019년 6월 16개

[표2] 경기도 안산시 사회복지조례 및 규칙 현황(2019.6)

사회복지영역	사회복지 자치법규			
	조례		규칙	
	갯수	예시	갯수	예시
복지정책	13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2017.11)	1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2018.11)
노인복지	11	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1	안산시 노인복지관 관리 운영

		관리 운영 조례(2017.2)		지침(2018.5)
장애인복지	12	안산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2018.5)	0	-
여성·가족	14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19.5)	2	안산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2019.2)
보육정책	1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2019.5)	0	-
위생정책	4	안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18.2)	2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2009.10)
일자리정책	10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한 조례(2017.11)	4	안산시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사업 운영 규정(2017.9)
계	65		10	

\* 출처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재구성

### 3. 경기도 사회복지 자치법규 현황

- 경기도의 경우 현행(2019년 6월 기준), 사회복지영역 자치법규는 14개 영역 총183개
- 위임조례의 빈도가 높으나, 자치조례도 상당 수 임
- 특색 있는 자치법규로, 청년기본소득, 고려인 주민 지원, 아동의 놀 권리, 생활임금 등을 들 수 있음

[표3] 경기도 사회복지조례 및 규칙 현황(2019.6)

사회복지영역	사회복지 자치법규			
	조례		규칙	
	갯수	예시	갯수	예시
복지정책	24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19.6)	3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2016.1)
청년복지정책	7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2019.6)	0	-
노인복지	17	경기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2015.4)	1	경기도 장사재단법인 관리지침(2012.6)
장애인복지	23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2019.1)	1	경기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2018.3)
보건정책	17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2019.3)	0	-
감염병관리	1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2019.1)	0	-
건강증진	23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9.6)	1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시행규칙(2015.10)
식품안전	3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2018.8)	1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2014.8)
여성정책	8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2019.1)	3	경기도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2012.11)
복지여성	2	경기도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2017.11)	1	경기도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2018.5)
가족다문화	9	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2016.2)	0	-
보육정책	1	경기도 보육 조례(2019.3)	0	-
아동청소년	16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2019.6)	1	경기도 청소년상조례 시행규칙(2015.12)
노동일자리 정책	16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2016.12)	4	경기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규정(2019.4)
계	167		16	

\* 출처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재구성

## 학습내용 2

## 사회복지 자치법규의 문제점과 대안 사례

### 1. 자치법규의 한계

- 지역주민의 삶에 구체적으로 반영된다는 점에서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직접 기여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이 중앙정부의 정책에 수동적인 입장에서 형식적인 입법 다수

### 2. 자치법규의 문제점

- 사회복지 자치법규의 제정 부진 : 지역복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제정 부진
-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성 결여 : 각종 사회복지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장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에 걸맞게 사회복지 자치법규 제정 의지가 부족
- 사회복지시설 조례의 성격이 위탁(위임)운영이 많아 시설물의 존립에 대한 법적 형식에 국한 및 시설 종류별 조례의 제정으로 중복적이고 비효율적
-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참여 문제 : 지역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상당수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관리업무 주력, 기타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전문가 부족
- 사회복지재원의 확보 문제 : 국가와의 비율 분담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복지예산을 확보해야 하나, 재정 자립도가 낮은 경우 재정운용 압박
- 상위 법률에서 위임된 조례에 대해 미제정되거나 부실하게 제정된 경우 문제,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이 지역주민에게 이루어져야 함

### 3. 사회복지 자치법규 대안을 위한 선진 사례

#### 1)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1991년 7월24일)

- 2년여 만에 전국의 18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정보공개조례를 제정
- 1996년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 정보공개법이 법률로 만들어지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13번째,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정보공개법 국가

#### 2)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2006년 4월10일)

- 2010년 거창군 내 모든 초·중·고교생에게 무상급식 시행
- 경남도 전체 기초자치단체에도 무상급식이 빠르게 확산
- 2019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 내 모든 기초자치단체 초·중학교에서 무상급식 시행
- 고등학생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체 또는 부분 무상급식 진행되는 등 무상급식 전국 확산

#### 3) 기타 사례

- 경기도학생인권조례(2010년 10월5일), 2019년 6월 기준, 광주, 서울, 전북 등 현재 전국 4곳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
- 서울특별시성동구의 일명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방지 조례’(2015년 9월), 2019년 6월 기준, 40여개 지방자치단체 유사한 조례 제정 시행 중, 상가 임대와 관련된 정책이나 법률 개정도 정부나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 중

## 학습정리

### 1. 사회복지 자치법규 사례 분석(2019년 6월 기준)

- 안산시의 경우 현행, 사회복지영역 자치법규는 7개 영역 총75개
- 경기도의 경우 현행, 사회복지영역 자치법규는 14개 영역 총183개

### 2. 사회복지 자치법규의 문제점

- 중앙정부의 정책에 수동적인 입장에서 형식적인 입법 다수
- 사회복지 자치법규의 제정 부진
-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성 결여
- 사회복지시설 조례의 비효율성
-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참여 부족
- 사회복지재원의 확보 문제
- 미제정 위임조례, 부실조례 등

## 9주차 1차시 : 사회복지구조와 연계성 I

학습내용	1.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과의 관계 2.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법과의 관계
학습목표	1. 사회복지구조에 있어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과의 관계를 학습할 수 있다. 2. 사회복지구조에 있어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법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 학습내용 1

###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과의 관계

#### 1.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의 필요성

##### 1) 계획에 대한 약속 실현

- 정책은 하나의 계획이고 큰 틀
- 사회복지정책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서비스나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 각종 의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지침, 계획, 과정**(박병현, 2011)
- 사회복지법은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을 실제로 현실에서 실천하겠다고 국가가 국민에게 약속한 내용

##### 2) 거시적 접근에서 실질적 실현

-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적 욕구나 사회문제들이 왜 생기며, 어떤 욕구나 문제들이 사회문제로 수용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어 나타남
- 사회적 이슈를 통해 정책 목적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규칙, 규정, 절차 등을 만들어 인간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
- 사회복지정책은 거시적 접근 방법으로서,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간접적인 서비스 영역에 속함
- 개입 규모가 보다 광범위하고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법 등을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펼쳐지게 됨

##### 3) 정책의 구체화 실현

-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누구에게 얼마나 무엇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 가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차원의 결정
- 할당 · 급여 · 전달 · 재정에 관한 기초적인 차원을 사회복지정책의 모든 영역에 적용됨으로 이를 근거로 한 사회복지법이 반드시 존재해야 함

#### 2. 사회복지법을 통한 사회복지정책의 안정성

##### 1) 법적 강제성

- 사회복지정책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가지고 실행되기 위한 제반 여건들의 조성을 위한 강제력 필요
- 이러한 강제력의 법적 뒷받침을 위해 구체적으로 입법의 형태로 진행

##### 2) 사회복지 입법의 주요 내용

- 급여의 대상은 누구인가?

- 대상자 선정의 기준은 무엇인가?
- 어떤 형태의 급여를 제공할 것인가?
-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 누가 급여제공에 있어 주체로서 의무를 지는가?
- 구체적인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전달체계는 누가 되는가?

### 3. 사회복지법을 통한 사회복지정책의 제도화

#### 1) 정책의 의무화

- 관련된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법적 의무조항은 지속됨
- 사회복지법은 사회적약자를 위한 사회적 보장 장치에 대한 법적 장치(지속적인 보장과 지원 가능)
- 법령에 의한 정책만이 일관성·적법성·투명성을 담보
- 제도화를 필요로 하는 정책은 법령의 형식으로 변환하는 정책의 법제화 작업 추진 필요

#### 2) 정책의 안정성과 가치 중심 지향

-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복지정책의 특정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함
- 최근 자본주의의 위기로 법의 우위보다 경제의 논리가 행정을 지배하는 경향
- 조정자로서의 국가 역할이 강조됨으로 경제의 논리로 법이 개정될 가능성 높아짐
- 사회복지적 가치와 인간중심의 내용이 권리의 형태로 사회복지법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으면 왜곡된 정책이 집행될 가능성 높아짐

[표1] 사회복지정책의 사회복지입법화 사례

의안명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세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의안번호	21296
발의연월일	발의연월일 : 2019. 7 3.	
발의자	발 의 자 : 김세연·김경진·유승민 이동섭·김재경·윤소하 윤일규·신상진·윤종필 전혜숙·박인숙·김명연 김승희·김병욱·유재중 김순례·남인순·오제세 심상정·이종걸·기동민 의원(21인)	
제안이유	<p>뇌전증은 뇌신경세포의 전기적 방전으로 인하여 갑자기 이상 감각, 경련, 의식 소실, 기억 상실, 쓰러짐, 이상 행동 등 다양한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만성적인 질환임. 뇌전증환자는 발작 등이 나타나는 질병의 특성상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회적 편견과 낙인이 심하여 교육·결혼·대인관계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차별과 제약을 받고 있음.</p> <p>또한 장기간의 유병기간과 집중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특성을 고려할 때, 치매·희귀난치성질환·중증만성질환 등 유사질환과 비교하여 의료적·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이 결코 덜하다고 할 수 없음.</p> <p>이와 같이 뇌전증은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심각히 저하시키고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p>	

	<p>관리가 미흡한 실정임.</p> <p>이에 뇌전증의 예방·진료 및 연구와 뇌전증환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뇌전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뇌전증환자의 재활과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려는 것임.</p>
<p><b>주요내용</b></p>	<p>가. 이 법은 국가가 뇌전증의 예방·진료 및 연구와 뇌전증환자에 대한 지원·인식개선 및 차별방지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뇌전증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국민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p> <p>나.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뇌전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뇌전증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p> <p>다. 뇌전증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뇌전증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뇌전증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p> <p>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전증의 진단 및 진료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p> <p>마.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뇌전증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뇌전증지원센터 및 지역뇌전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p> <p>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료 및 수술을 위하여 뇌전증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p> <p>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뇌전증환자에게 직업훈련 지원, 의료비 지원, 심리상담 지원, 재활·주간활동·돌봄 지원,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p> <p>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뇌전증전문진료센터 및 뇌전증관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뇌전증관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p>

\*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서 검색한 내용을 재구성함

## 학습내용 2

##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법과의 관계

### 1.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법의 필요성

- 구체적인 법조항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회복지수급권자의 이용(지원) 여부 파악 가능
- 이용(지원) 못했을 경우 권리구제나 벌칙조항을 통해 사회복지수급권자의 문제해결 가능
-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수급권자와의 상담을 통해 급여 대상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법이며,
- 프로그램 개발, 국가지원 여부 파악, 자원개발 및 연계 등 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 시 법 인식 필요
- 사회복지법 뿐 아니라 다른 영역의 법에 대한 이해도 필요

예)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국적 취득(국적법)

## 2. 정책과 법의 변화 제시

- 사회복지실천은 사회복지수급권자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이어옴으로 정책과 법의 문제점 발견용이
- 실천에서 발견된 문제점 제기 및 해결책 요구, 정책과 법의 변화 모색
- 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조건 중 부양의무자 로 인해 공공부조 지원을 못 받는 빈곤사각지대 발생(2015년 기준 약93만 명 추산) → 사회적 이슈에 대한 부양의무자 조건 폐지 지속 제기 → 부양의무자 단계별 폐지 → 부양의무자 완전 폐지(조항 삭제) 목표

[표2] 정부의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계획(2015~2020년)

구분	2015년 7월	2017년 11월	2018년 10월	2019년 1월		2020년 1월
생계급여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소득하위 70%)	수급자(신청)가 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의료급여	-		-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소득하위 70%)	또는 보호종료아 동인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이 포함된 가구 (소득하위 70%)
주거급여	-		모든 가구	-		-
교육급여	모든 가구					

\* 출처 : 보건복지부, 2015~2019년 보도자료를 재구성함

### 학습정리

#### 1.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과의 관계

- 1)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의 필요성
  - 계획에 대한 약속 실현
  - 거시적 접근에서 실질적 실현
  - 정책의 구체화 실현
- 2) 사회복지법을 통한 사회복지정책의 안정성



- 법적 강제성
  - 사회복지 입법의 주요 내용(급여대상자, 급여종류, 재원마련, 전달체계 등)
- 3) 사회복지법을 통한 사회복지정책의 제도화
- 정책의 의무화
  - 정책의 안정성과 가치 중심 지향

## 2.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법과의 관계

- 1)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법의 필요성
- 2) 정책과 법의 변화 제시

## 9주차 2차시 : 사회복지구조와 연계성 II

학습내용	1. 사회복지행정과 사회복지법과의 관계 2.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학습목표	1. 사회복지구조에 있어 사회복지행정과 사회복지법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전문가인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 정의할 수 있다.

### 학습내용 1

### 사회복지행정과 사회복지법과의 관계

#### 1. 행정과 정책

- 사회복지행정과 사회복지정책의 구분 선행 필요
- 이념적으로 정책과 행정의 관계는 목적과 수단으로 구분
- 정책이 일종의 방향을 제시한다면, 행정은 그것을 실천하는 수단이나 과정을 의미
-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조직의 내부를 관리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 조직의 목적을 설정하거나, 외부환경과의 관계를 맺는 활동을 포함함
-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조직이 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함

#### 2. 사회복지기관의 책임성

- 조직은 하나의 유기체이며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과업을 달성함으로써,
- 사회복지행정의 기능을 통해 책임성이 나타남
- 사회는 개별 구성원이 아닌 기관 자체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권한을 위임해 준 것

#### 3.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복지행정은 업무의 조정, 협조체제 유지, 상호작용 등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사회복지행정의 역할은 곧바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로 연계됨

#### 4. 사회복지 영역 간 가교

-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실천 영역을 잇는 가교역할을 함
- 가교의 과정은 공공이나 민간 영역의 조직들로 구성되며, 기관, 프로그램, 서비스, 전달체계 등이 포함

#### 5. 사회복지법을 통한 사회복지행정의 구체화

-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관련 기관과 전달체계에 대한 내용이 포함

- 사회서비스법에는 각종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음

[표] 사회복지법을 통한 사회복지행정의 구체화 사례

법률명	주요내용
<p><b>사회복지사업법</b>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47호, 2019. 1. 15., 일부개정]</p>	<p>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①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lt;중략&gt; 제18조(임원)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lt;개정 2012. 1. 26.&gt; &lt;중략&gt; ③ 이사회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lt;개정 2012. 1. 26.&gt; ④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lt;개정 2012. 1. 26.&gt;</p> <p>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lt;개정 2011. 8. 4.&gt;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lt;개정 2011. 8. 4., 2012. 1. 26., 2016. 2. 3., 2017. 10. 24.&gt; &lt;중략&gt;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lt;신설 2011. 8. 4., 2019. 1. 15.&gt;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gt;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gt; [제목개정 2011. 8. 4.]</p> <p>제46조(한국사회복지사협회) 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하되, 협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8. 4.]</p>

<p>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약칭: 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67호, 2019. 4. 23., 일부개정]</p>	<p>제19조(보장기관)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실시한다. 다만,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다. &lt;개정 2014. 12. 30.&gt;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수급자를 각각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보장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lt;개정 2014. 12. 30.&gt; ③ 수급권자나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의 처리방법과 보장기관 간의 협조, 그 밖에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보장기관은 수급권자·수급자·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 등 이 법에 따른 보장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따로 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p>
<p>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69호, 2019. 4. 23., 일부개정]</p>	<p>제52조(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①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둔다. ② 등급판정위원회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단위로 설치한다. 다만,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2 이상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거나 2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lt;개정 2013. 8. 13.&gt; ③ 등급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위원은 7인, 의사 또는 한의사가 1인 이상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lt;개정 2013. 8. 13.&gt; 1.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lt;개정 2018. 12. 11.&gt; [시행일 : 2019. 12. 12.] 제52조</p>

아동복지법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48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13조(아동복지전담공무원) ①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전담공무원은 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조치,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확인 및 지도·감독 등 지역 단위에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단체(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전담공무원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3. 22.>

제14조(아동위원) ①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둔다. <중략>

제15조(보호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3.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후략>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한 내용을 재구성함

## 6. 사회복지행정상의 법률관계

• 사회복지행정조직 내부관계 : 상급청과 하급청 간의 관계, 대등행정청 간의 관계, 주무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관계 ;

예)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전달되는 사무 위임

• 사회복지행정주체 간의 관계 :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허가 등 감독관계, 보조금·교부금의 교부 등 원조 관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의, 사무의 위탁, 조합의 설립 등 ; 서울시립승화원, 서울시립고양정신병원 등

### 학습내용 2

###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 1. 사회복지구조와 연계성이해의 중요성

- 사회복지 전반의 활동이 모두 법에 기초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법을 이해하기 위해 사회복지정책, 실천 및 행정과의 연계성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복지분야에서 적용되는 법의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그 지식을 사회복지현장에서 필요한 도구로 활용하기 위함
- 사회복지사는 현존하거나 제안된 사회복지프로그램들과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고 욕구와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복지법제의 내용을 알아야 함
- 사회복지사는 법의 공식적·형식적·정태적·사후적 특징을 확인하고 사회복지법제의 환경을 실천적·역동적·사전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개입할 수 있어야 함
-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정책과 법이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를 찾아 알려주어, 정책과 법이 변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발굴하여 제시해야 함
- 사회복지사는 법의 제정 및 개정, 법을 통한 권리에 대한 이행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함
- 인권을 실천하는 사회복지사의 영역이 한층 더 확장되고 전문성이 더 깊어짐

## 2. 사회복지사의 역할 모색

### 1) 입법과정 참여자

- 사회복지법 제정 및 개정 등의 입법과정에 참여자로 활동해야 함
- 전국 각지의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에 충분하고 중요한 인력임
- 수급권자의 삶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보완해주고 법의 사각지대를 파악할 수 있는 존재임
- 스스로 사회에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수급권자를 위한 옹호자 역할
- 제정 및 개정 필요성 제기, 서명운동, 집회 등 활동 전개 시 중심적 역할

### 2) 법의 안내자

- 수급권자에게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소개하고 안내함으로써 스스로의 권리 인식 제고
- 법에 의한 처벌에 대해서도 소개 및 안내해야 함

### 3) 협력자

- 수급권자들과 함께 법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협력자의 역할
- 역사상 어떤 기본권도 기득권층의 일방적인 시혜로 주어지지 않았고, 투쟁을 통해 이룸
- 사회복지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함과 동시에 그 권리를 찾는 싸움에 동행하고 참여해야 함
- 사회적·행동적 조치에 침묵하기보다 함께 투쟁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함
- 사회복지사의 3無(무반응, 무표정, 무대응)의 지양과 사회복지사의 정치화를 위한 노력 필요

## 학습정리

### 1. 사회복지행정과 사회복지법과의 관계

- 1) 행정과 정책의 구분 : 정책이 방향제시면, 행정은 실천하는 수단이나 과정
- 2) 사회복지기관의 책임성
- 3)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 4) 사회복지 영역 간 가교
- 5) 사회복지법을 통한 사회복지행정의 구체화

6) 사회복지행정상의 법률관계(사회복지행정조직 내부관계, 사회복지행정주체 간의 관계)

## 2.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 1) 사회복지구조와 연계성 이해의 중요성
- 2) 사회복지사의 역할 모색
  - 입법과정 참여자
  - 법의 안내자
  - 협력자

## 10주차 1차시 : 사회복지사의 권리와 의무

학습내용	1.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2. 사회복지사의 책임과 의무
학습목표	1. 각종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각종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 학습내용 1

###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 1. 사회복지사 정의 및 자격

#####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종사자로 시작하여 1983년 5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사업가 또는 사회사업종사자의 명칭이 "사회복지사"로 규정되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발급되기 시작
- 이후 사회사업은 사회사업학의 학문적 체계에서 사용되어지고, 사회복지사의 영문표기는 "Social Worker"로 사용
-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를 사회복지사로 규정
- 봉사 정신과 전문적 지식 및 기술습득·적용 및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준수를 정체성으로 봄

##### 2) 표준국어대사전

- 사회 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
-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발급받으며 1급·2급·3급(\*2019년부터 폐지)의 등급이 있다. 등급별 자격 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3)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 [시행일 : 2020. 12. 12.]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항)
-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2급으로 하되, 정신건강·의료·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2항)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한다. (제3항)

#### 2.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 1) 국가공무원법(제2조 등)

- 국가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
- 경력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으로 구분
- 사회복지사는 경력직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에 해당되고 사회복지직렬에 속함



<표 1> 국가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행정직, 사회복지직)

직군	직렬	직류	계급 및 직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행정	행정	일반행정	부이사관	서기관	행정 사무관	행정 주사	행정 주사보	행정 서기	행정 서기보
		인사조직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운수							
		고용노동							
		문화홍보							
	교육행정								
	회계								
사회 복지	사회 복지			사회복지 사무관	사회복지 주사	사회복지 주사보	사회복지 서기	사회복지 서기보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에서 검색한 공무원임용령 [별표 1] 내용을 재구성함

2) 지방공무원법(제2조 등)

-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
- 경력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으로 구분
- 사회복지사는 경력직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에 해당되고 사회복지직렬에 속함
- 사회복지전문요원 : '87년 서울시 관악구 시범사업을 시작, 전국에 별정직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91년부터 읍·면·동에 본격 배치, 2000년을 맞이하여 사회복지직으로 전환됨
- 사회복지직 증원 : 2008년 1만여명 → 2016년 2만 여명으로 2배 증가
- 복지담당 공무원 중 복지직렬의 비중 2008년 50% → 2016년 57% 수준
-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조항 삭제됨(2017. 10. 24.)

<표 2> 지방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행정직군)

직군	직렬	직류	계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행정	행정	일반행정	지방 관리 관	지방 이사 관	지방 부이사 관	지방 서기 관	지방행 정사무 관	지방행정 주사	지방행정 주사보	지방행정 서기	지방행정 서기보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노동									
		문화홍보									
		감사									
		통계									
	기업행정										
	운수										
세무	지방세						지방세무 주사	지방세무 주사보	지방세무 서기	지방세무 서기보	
전산	전산						지방전산 주사	지방전산 주사보	지방전산 서기	지방전산 서기보	
교육행정	교육행정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교육행정 정사무 관	교육행정 주사	교육행정 주사보	교육행정 서기	교육행정 서기보
	사회복지	사회복지				지방 사회복 지사무 관	지방 사회복지 주사	지방 사회복지 주사보	지방 사회복지 서기	지방 사회복지 서기보
	사 서	사 서				지방사 서사무 관	지방사서 주사	지방사서 주사보	지방사서 서기	지방사서 서기보
	속 기	속 기				지방속 기사무 관	지방속기 주사	지방속기 주사보	지방속기 서기	지방속기 서기보
	방 호	방 호				지방방 호사무 관	지방방호 주사	지방방호 주사보	지방방호 서기	지방방호 서기보
		경 비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에서 검색한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 내용을 재구성함

### 3) 민간기관

- 근로자의 지위와 근로기준법의 보호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사회복지사를 고용된 법인이나 기관과의 노사관계의 위치
- 다양한 근로형태(정규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로 재직, 관련법에 의한 근로자성 인정되나, 비정규직근로의 확대 우려

### 4) 전문가(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등)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사를 채용토록 규정(제1항)
-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제2항) : 연간 8시간 이상(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인권영역 중 1개 영역 이상 1평점 이상을 필수 이수)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를 위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채용 의무화(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5) 사회복지사의 지위 제고

- 사회복지의 현상이 봉사, 희생, 섬김의 가치 중시로 인해 근로자로서의 사회복지사 권익보호 강화 필요
- 헌법(제33조)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권리보장 한계
- 사회복지사의 장시간 노동의 근거였던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2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 삭제(2018. 6. 29.) 등 노동운동 필요성
- 대법원 판례(대판 2006. 12.7, 2004다29736 등)를 통한 사회복지사의 사용종속관계 여부 판단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사(민간 기관 재직)는 사용종속관계임
-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이 보조금 등 공적자금에서 지급받으므로, 실질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공무원 수준의 지위 제고 필요 ; 사립학교의 교원은 국공립학교의 교사처럼 그 신분을 보장받아야 함(대판 1972. 12. 12. 71다2752)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사회복지사법)의 대대적인 개정 운동 필요

### 3. 사회복지사의 권한

#### 1) 공무원

- 신분 :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분의 안정성 보장
- 직무집행 : 직권신청, 조사 등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직무집행에 대한 권한 보장(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보수 :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수를 법적으로 보장
- 기타 : 공무원연금 등 사회보장 규정, 보수 외 직무수행 시 실비변상 규정 등

#### 2) 민간 사회복지사

- 2012년 1월 시행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규정하고 있으나 신분, 보수 등에 대한 실효성 부족
- 통상 사회복지사가 소속된 법인이나 기관의 내부규정을 준용 ; 공무원에 비해 권리보장 상대적 취약
- 해당 직위에 따른 직무의 권한에 대한 법조항 부재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메뉴얼 수준) 매 해 공지되나 강제성 부족
-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다’. ‘노력하여야 한다’ 등 선언적인 임의규정으로 한계 노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정 필요
- 민간이지만 공공기관(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법인 및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분, 직무집행, 보수 등이 높은 것으로 평가

## 학습내용 2

## 사회복지사의 책임과 의무

### 1.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책임

-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금지행위 준수(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 사회복지사로서의 의무(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윤리강령 등)

#### <표 3> 국가공무원의 의무와 금지 행위(국가공무원법)

#### 법에서 규정한 국가공무원의 의무와 금지 행위

-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중략>
-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59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①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중략>
-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 제61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62조(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중략>
  -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중략>
  -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후략>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에서 검색한 국가공무원법 내용을 재구성함

## 2. 민간 사회복지사

- 책임과 의무는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유사하지만 차이점 존재
- 소속 법인이나 기관의 내부규정 중요
- 사회복지사업법(제5조, 제47조, 5장 벌칙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책임 규정
- 사회복지사윤리강령(전문, 6개 윤리기준)

<표 4> 사회복지사의 의무

규정	주요 내용
<b>사회복지사업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조(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 ① 이 법에 따라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li> <li>· 제47조(비밀누설의 금지)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li> </ul>
<b>사회복지사윤리강령</b>	<p>[전문]</p> <p>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한다. 특히 사회적·경제적</p>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선다.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들과 함께 일하며,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여건 에서도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우리는 클라이언트·동료·기관 그리고, 지역사회 및 전체사회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의 행위와 활동을 판단·평가하며 인도하는 윤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윤리기준]

I.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1. 전문가로서의 자세, 2.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3.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

II.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1.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2. 동료의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III. 사회복지사의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1. 동 료, 2. 수퍼바이저

IV.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V. 사회복지사의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VI. 사회복지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http://www.welfare.net/> 의 내용을 재구성함

**학습정리**

**1. 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와 권한**

1) 사회복지사 정의 및 자격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봉사 정신과 전문적 지식 및 기술습득·적용 및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준수
- 표준국어대사전 : 사회 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증(1,2급) 발급

2)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 경력직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에 해당되고 사회복지직렬에 속함
- 전문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사 채용 규정
- 민간기관 사회복지사 : 공무원 수준의 지위 제고 필요

3) 사회복지사의 권한

-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분의 안정성 보장
- 민간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규정 불구, 신분, 보수 등에 대한 실효성 부족

## 2. 사회복지사의 책임과 의무

- 1)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책임 :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금지행위 준수
- 2) 민간 사회복지사 : 책임과 의무는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유사하지만 차이점 존재

## 10주차 2차시 :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학습내용	1.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법률 2.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전략 3. 외국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학습목표	1.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법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3. 외국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학습내용 1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법률

####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약칭 : 사회복지사법)

##### 1) 법률 안내

- [법률 제10511호, 2011. 3. 30, 제정] [시행 2012. 1. 1.],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담당

##### 2) 입법배경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관련한 연구는 주로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 수준,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주류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공무원 동일직종 호봉과 비교했을 때 보수수준이 낮음
-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제시는 실제 임금인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상이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 등으로 인해 시설 간 임금의 편차 발생
- 1990년부터 종사자 이직률 증가 언론보도로 사회적 이슈 및 심각성 제기
- 2005년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 후 발생한 지역 간 격차에 대한 각종 민간포럼 등의 논의 발생, 사회복지사 처우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

- 2000년 이후 사회복지사협회의 사회복지사의 근로환경에 대한 조사 시작 후 이슈로 부각

##### 3) 입법과정

- 2006년 고경화 의원실 정책토론회 시 · 사회복지사업법의 대통령령으로 확정할 것 주장
- 사회복지관협회 제정안 선호,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사협회 개정안 선호
- 제18대 국회 시 다양한 입법 활동 전개(간접적 방식인 사회복지사 공제회 도입 포함), 총 6개의 개정 및 제정안이 상정
- 정부 및 관련 이익집단이 법률안의 개정 요구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법률 제정(신상진 의원안의 수정안)이라는 대안 채택

#### <표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전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약칭: 사회복지사법 )

[시행 2019. 12. 12] [법률 제15886호, 2018. 12. 11,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를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11.>

제4조(한국사회복지공제회) ① 사회복지사 등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③ 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삭제 <2012. 5. 23.>

[제목개정 2012. 5. 23.]

제4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2. 5. 23.]

제4조의3(회원의 자격) ① 공제회의 회원은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 제2조에 따른 법인 및 시설 등에 종사하는 사람
3.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그 밖에 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②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납입한 날에 공제회의 회원이 된다.

[본조신설 2012. 5. 23.]

제5조(조직 등) ①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이사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서 감사를 둔다.

---



---

② 공제회 대의원의 선정, 대의원회의 구성과 권한,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 임원의 정수, 임원의 선출 및 임기, 임원의 직무, 직원의 임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2. 사회복지시설의 안전·화재 등에 대한 공제사업
  3. 자금조성을 위한 사업
  4. 회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공제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재원) 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1. 회원의 부담금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3. 공제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8조(예산과 결산, 준비금의 적립 등) ①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가 장래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 결산상 순이익금 등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행정조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한 때
  2. 공제회를 현저하게 부당 운영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때
- ② 공제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과태료) ① 제4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12. 5. 23.]

부칙 <제15886호, 2018. 12. 1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에서 검색한 내용을 발췌함

## 2.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조례

###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 2012년 5월, 경기도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13년 7월 기준 42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9년 6월 기준 200개 지자체가 조례 제정
- 법령에 의한 위임조례 규정 미흡에 따라 조례가 없는 지자체와 빈약한 조례 존재 개선 필요
- 서울시의 조례 등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10년간의 노력(단일임금제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휴가, 단체연수, 유급병가 등) 사례 준용 필요

## 학습내용 2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전략

### 1. 관련 법의 개정

####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전면 개정

- 사회복지사에 대한 정의 법제화
- 사회복지공제회 편중(총 10개 조항 중 6개 조항) 법제의 다양한 처우 및 지위분야로의 개정
- ‘사회복지사 등’을 ‘사회복지사’를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
- 처우개선, 신분보장, 보수 등에 대한 ‘노력하여야 한다’를 강제성 있는 조항으로 개정
- 특히, 시설 유형에 관계없이 동등한 대우의 보수수준을 지급하는 내용과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각종 수당의 명시 등의 법제화
  -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대하여 명확히 파악하고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원계획 수립 현실화
  - 사회복지사 급여수준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급여수준 도달을 위해 사회복지사 채용 절차의 투명성 · 공정성 법제화
  - 사회복지사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주기를 효율성과 현실성 제고를 위해 지역사회복지계획과 동시 실행토록 4년 주기로 개정
  - 사회복지사를 위한 고충처리센터(지원센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 법제화

#### 2) 사회복지서비스원법의 개정

- 사회복지사에 대한 공공전문가로서의 신분보장, 보수 등 법제화
- 사회복지서비스원을 통한 복지사업의 확대를 위한 민간 영역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 개선 법제화

#### 3)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사회복지시설 범위에 대한 현실을 고려한 능동적인 확대로의 개정
-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대한 법 적용으로 개정
-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인정과 사회복지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한 협력적인 지원체계 구축으로 개정

### 2. 사회복지사의 정치화와 연대 강화

- 국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결정과정에서 복지전문가인 사회복지사의 능동적 참여 필요
-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권과 복지추구권을 확보하는 사회복지사의 자구노력과 단합 필요
-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 기본권(단결권 ·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 행사(노동조합의 활성화 등)
- 사회복지사 대표의 국회, 지방의회 등 입법기관 진출 추진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조직 강화를 통한 단합과 사회복지사 유관단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 필요

### 3. 사회복지교육 강화 및 사회적 인식제고

- 사회복지사의 노동자성 인식 제고를 위한 노동권 교육 강화(학교, 보수교육 등)
- 봉사자에서 전문가로의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사회복지 및 사회복지사 이해 시민교육 전개
- 전문가로서의 역량강화 및 인식제고를 위한 보수교육의 전문성 강화

### 4. 사례연구 : 2019 사회복지정책대회를 통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모색

- 2019. 6. 14 오후 2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2019사회복지정책대회' 개최
- '사회복지 국가책임제 실현'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비롯해 사회복지 직능을 총망라한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상 최초의 연대 행사로 기록(총 26개 사회복지단체 참여)
- 당·정 인사들과 함께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복지단체 연대(약칭: 복지국가연대)' 출범

<표 2> 2019 사회복지정책대회 슬로건 및 5대 요구사항

#### 슬로건 : 사회복지 국가책임제 실현

#### <사회복지정책 5대 요구사항 및 정책 제안>

1. OECD 국가 평균 사회복지예산 확보
  2. 사회복지 이용자 중심 복지서비스 강화
  3. 민간 및 공공의 사회복지서비스 인력 증원
  4. 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및 보장
  5.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시행
- OECD 국가 평균 사회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중장기로드맵 수립
  - 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세수 확충방안 및 재원확대에 따른 사회적 공감대 형성
  - 거주시설, 피해자보호시설 등 3교대 근무를 위한 단계적 로드맵 수립
  -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지역, 분야, 부처별로 차별없는 적정 인력 및 예산 투입 근거 법령 명시 및 제도적 기준 마련
  -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전수조사 및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공표
  - 지역, 분야, 지원 방식 차별 없이 '사회복지 종사자 임금기준' 동일 적용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준 보수 현실화
  - 서울 및 제주 등 지역별 우수 복지정책 벤치마킹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의 공공성 인정을 기반으로 관련 제도개선은 민·관이 공동으로 중장기로드맵 수립 통해 추진
  -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 지침서인 개정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전면 폐지
  - 시설 서열화 방식 평가를 민관협치 및 운영 자율성 확대 방식으로 혁신

\*출처 : 2019사회복지정책대회조직위원회 자료집 내용을 재구성함

### 1. 영국의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자격과정을 2년에서 3년으로 개혁(학위자격증제도) 이후 지위와 권한의 질적 제고 중
- 지자체, 공적 및 법률에 기반을 둔 단체, 자원봉사 단체, 개인단체 등에서 활동
- 사회복지업무 종사를 위해 사회복지사자격증(The diploma in Social Work : DipSW) 필수
- 전문사회복지사자격증(The Post Qualifying Award in Social Work : PQSW) 제도 운영

### 2. 미국의 사회복지사

- 법적 자격제도와 전문가 단체나 기구에 의한 자격제도로 운영
- 법적 자격제도는 비전문가의 사회복지 업무를 법적으로 금지하며, 면허, 등록, 법적 자격증 운용
- 사회복지사 직함 보호 법제정, 사회복지사 직함 없이 관련 일 불가
- 미국사회복지사협회(NASW)에서 인정하는 자격으로는 공인사회복지사(Academy of Certified Social Worker : ACSW), 임상사회복지사(Qualified Clinical Social Worker : QCSW), 전문임상사회복지사(Diplomate in Clinical Social Work : DCSW)와 분야별 다섯 가지로 구분되며, 법적 구속력은 없음
- 최소한의 학위와 실천경험, 시험을 통과하도록 하여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

### 3. 일본의 사회복지사

- 1992년 법개정과 1993년 지침마련으로 처우개선, 자질향상, 사회적 평가의 향상 등을 도모
- 과거 공적 자격제도나 관계 법령에 근거한 사회복지사 중심에서, 민간부분의 역할 점차 확대 및 강조
- 사회복지사 자격의 국가 고시화 및 개호복지사와의 상호연계성 추진

## 학습정리

### 1.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관련 법률

-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약칭 : 사회복지사법)
- 2)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조례

### 2.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전략

-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의 개정
- 2) 사회복지사의 정치화와 연대 강화
- 3) 사회복지교육 강화 및 사회적 인식제고
- 4) 사례연구 : 2019 사회복지정책대회를 통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모색

### 3. 외국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 1) 영국의 사회복지사
- 2) 미국의 사회복지사
- 3) 일본의 사회복지사

## 11주차 1차시 : 사회보장기본법 I

학습내용	1. 사회보장기본법의 입법배경 및 연혁 2. 사회보장기본법의 총칙과 권리
학습목표	1. 사회보장 총괄법인 사회보장기본법의 입법배경 및 연혁을 이해할 수 있다. 2. 사회보장기본법의 총칙, 사회보장의 권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학습내용 1

### 사회보장기본법의 입법배경 및 연혁

#### 1. 기본법 이해

##### 1) 기본법 수직 증가

- 1990년대 이후 ‘○○기본법’ 명칭 입법형식 다수 제정으로 변화 ; 건강가정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군인복지기본법 등
- 2018년 11월 25일 기준, ‘기본법’ 형식 법률 총 66개(1990년 대 이후 59개)

##### 2) 기본법의 특징

-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률 분야의 정책 기본방향 규정, 관련 입법의 체계화 도모
- 어떤 분야의 정책 지향, 방향성, 대략적 사항 규정하고, 구체적 내용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도록 규정
- 기본법과 개별 법률의 관계는, 총론과 각론의 연계성
- 기본법은 정책입법· 프로그램법으로서의 기능과 성격
- 특정 분야의 정책의 이념이나 기본사항을 정하고 이에 의거 시책 추진 및 제도 정비 도모
- 국가정책의 기본방침, 원칙, 준칙, 대강 명시하고 그 분야 다른 법률·행정을 지도 유도하는 역할
- 필요에 따른 규율 중심의 단편적 입법화 → 전망중심, 정책지향점 및 관련 법의 입법 방향 제시

##### 3) 기본법의 기능과 한계

- 해당 분야의 정책이념이나 기본사항을 정한다는 의의에 비해, 추상적으로 제·개정 시 정책변화 곤란
- 외견상의 해결방안에 국한된 강제성 결여의 보여주기식 국가활동을 위한 일종의 ‘알리바이입법’ 한계
- 해당 분야의 제도와 정책 전체상 제시의 의의에 비해, 정책 메뉴의 나열과 비체계화 시 역할 약화
- 개별 법률들을 강제하거나 상위 규범으로서의 법적 지위 없음,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시 개별 법률 우선
- 실질적 측면에서 행정부의 과도한 재량 야기 우려, 개별 법률과의 차별성 필요
- 추상적이고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지 않도록, 구체적 조항들로 구성 및 동시 제·개정 추진 필요

#### 2. 사회보장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개정 연혁

##### 1)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 1963년 11월 5일 제정(제3공화국), 전문 7개조로 빈약함
- 군사정부의 경제우선정책에 밀려 국민의 사회보장 욕구에 응급적으로 대처

- 제정된 개별 사회보장 법률에 대한 기본법의 역할 못함(32년간 사문화)

2) 사회보장기본법

- 1995.12.30. 제정(문민정부), 4장 35조로 구성
- 1963년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의 발전수준과 국민의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여 국민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 헌법과 개별 사회복지법을 연결하는 역할 및 사회보장에 관한 총괄법

<표 1>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 개정 연혁(2012년 이후)

개정일 · 형태	개정 이유
2012.01.26. 전부개정	현재 여러 부처에서 사회보장정책을 관장함에 따라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모든 국민이 평생 동안 겪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의 보편적·생애주기적인 특성에 맞게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확대·재정립함으로써 한국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중장기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건강한 복지국가를 설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하려는 것임.
2015. 12. 29. 일부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여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최저생계비 대신 최저보장수준 및 기준 중위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2933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제도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018. 12. 11. 일부개정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상호 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음. 관련 업무가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및 분석 업무를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 업무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 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사회보장정보원 또는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협의 업무가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에서 검색한 내용을 재구성함

1. 총칙(제1장)

1) 목적(제1조)

•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2) 기본이념(제2조)

•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함

3) 용어의 정의(제3조)

•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제1호)

•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제2호)

•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제3호)

•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제4호)

•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제5호)

<표 2> 사회보장의 일반적 구성(제3조)

구분	주요 내용
사회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공공부조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사회서비스	- 노인복지서비스 - 장애인복지서비스 - 아동복지서비스 - 가정복지서비스

\*출처 : 사회보장위원회 <http://www.ssc.go.kr/> 에서 발췌함



4)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함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제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짐(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함(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함(제3항)
-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함(제4항)

6) 국가 등과 가정(제6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함(제2항)

7) 국민의 책임(제7조)

-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自活)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1항)
- 모든 국민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신체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함(제2항)
-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정보의 제공 등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하여야 함(제3항)

**2.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제2장)**

1)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제9조)

-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짐

2)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제10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함

3)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제11조)

-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음(제1항)
-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로 봄(제2항)

#### 4)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제12조)

-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음

#### 5) 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 등(제13조)

-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1항)
- 제1항 단서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함(제2항)

#### 6)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제14조)

-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음(제1항)
-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음(제2항)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음(제3항)

#### 7)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제15조)

- 제3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그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음

## 학습정리

### 1. 사회보장기본법의 입법배경 및 연혁

#### 1) 기본법 이해

- 2018년 11월 25일 기준, '기본법' 형식 법률 총 66개(1990년 대 이후 59개)
- 기본법과 개별 법률의 관계는, 총론과 각론의 연계성
- 국가정책의 기본방침, 원칙, 준칙, 대강 명시하고 그 분야 다른 법률·행정을 지도 유도하는 역할
- 추상적이고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지 않도록, 구체적 조항들로 구성 및 동시 제·개정 추진 필요

#### 2) 사회보장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개정 연혁

-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 1963년 11월 5일 제정(제3공화국), 전문 7개조로 빈약함(32년간 사문화)
- 사회보장기본법 ; 1995.12.30. 제정(문민정부), 헌법과 개별 사회복지법을 연결하는 역할 및 사회보장에 관한 총괄법임

### 2. 사회보장기본법의 총칙과 권리

#### 1) 총칙(제1장)

- 목적(제1조)
- 기본이념(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제5조)
  - 국가 등과 가정(제6조)
  - 국민의 책임(제7조)
- 2)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제2장)
-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제9조)
  -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제10조)
  -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제11조)
  -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제12조)
  - 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 등(제13조)
  -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제14조)
  -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제15조)

## 11주차 2차시 : 사회보장기본법 II

학습내용	1. 사회보장위원회 2.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3. 사회보장의 운영 및 정보의 관리
학습목표	1.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회보장위원회에 대해 정의할 수 있다. 2.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3. 사회보장전달체계 등 사회보장의 운영 및 정보의 관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학습내용 1

### 사회보장위원회

#### 1.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제3장)

##### 1)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제16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제1항) ;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 ① 국내외 사회보장환경의 변화와 전망
  - ② 사회보장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 ③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 ④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 ⑤ 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방안
  - ⑥ 사회보장 전달체계
  - ⑦ 그 밖에 사회보장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기본계획은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음(제3항)

##### 2) 다른 계획과의 관계(제17조)

-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됨

##### 3)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제18조)

-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소관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제2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보건복지부 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제3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제4항)
-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5항)

4)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제19조)

- 지방자치단체장은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 지역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함(제2항)
-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5) 사회보장위원회(제20조)

-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둠(제1항)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함(제2항)
  - ①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 ②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 ③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 ④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
  - ⑤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
  - ⑥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
  -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 ⑧ 사회보장의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⑨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 ⑩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 ⑪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
  - ⑫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함(제3항)
  - ① 제16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 ② 제2항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한 결과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함(제4항)

6) 위원회의 구성(제21조)

-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제1항)
-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됨(제2항)
-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제3항)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②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

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다.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제4항)

-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제6항)

<표 1> 사회보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비교 사례

법률	시행령
제16조(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중략> ③ 기본계획은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후략>	제3조(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중략> ③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보장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사회보장 전달체계 관련 사항 등 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후략>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중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후략>	제9조(위원회의 위원 등) ①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법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국가보훈처장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후략>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에서 검색한 내용을 재구성함

## 학습내용 2

##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 1.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제4장)

#### 1) 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운영(제22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함(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함(제2항)

#### 2) 사회서비스 보장(제2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제24조에 따른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함(제2항)

### 3) 소득 보장(제2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 하에서도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함(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득보장제도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함(제2항)

## 학습내용 3

## 사회보장의 운영 및 정보의 관리

### 1.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제5장)

#### 1) 운영원칙(제2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함(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함(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함(제3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함(제4항)
-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협의·조정할 수 있음(제5항)

#### 2) 협의 및 조정(제26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제1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제2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제3항)
  - 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
  - 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함(제4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제5항)

<그림 1>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제26조)



\* 출처 : 사회보장위원회 <http://www.ssc.go.kr/> 에서 발췌함

3) 민간의 참여(제27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함(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제2항)
  - ① 자원봉사, 기부 등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
  - ② 사회보장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 부문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
  - ③ 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보장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4) 비용의 부담(제28조)

-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함(제1항)
-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被傭者)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제2항)
- 공공부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제3항)
-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제4항)



5) 사회보장 전달체계(제29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사회보장급여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지역적·기능적으로 균형잡힌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갖추어야 함(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보장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3항)

6) 사회보장급여의 관리(제30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 및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회보장급여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제1항)
  - ① 사회보장수급권자 권리구제
  - ②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 ③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오류 관리
  - ④ 사회보장급여의 과오지급액의 환수 등 관리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 마련, 평가 및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음(제2항)
- 제2항의 전담기구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7) 전문인력의 양성 등(제31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학술 조사 및 연구, 국제 교류의 증진 등에 노력하여야 함

8) 사회보장통계(제32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이하 "사회보장통계"라 한다)를 작성·관리하여야 함(제1항)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회보장통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제2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회보장통계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제3항)
- 사회보장통계의 작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9) 정보의 공개(제3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함

10) 사회보장에 관한 설명(제3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권리나 의무를 해당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11)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제3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함

12) 사회보장에 관한 통지(제36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알려야 함

## 2. 사회보장정보의 관리(제6장)

###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제37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편익의 증진과 사회보장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보장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1항)
- 국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제2항)

### 2) 개인정보 등의 보호(제38조)

- 사회보장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사회보장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함(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단체, 개인이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이 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보유, 이용, 제공 불가(제2항)

## 3. 보칙(제7장)

### 1) 권리구제(제39조)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음

### 2) 국민 등의 의견수렴(제40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함

## 학습정리

### 1.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제3장)

- 1)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제16조) ; 5년마다
- 2) 다른 계획과의 관계(제17조)
- 3)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제18조) ; 매년 수립
- 4)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제19조)
- 5) 사회보장위원회(제20조) ; 국무총리 소속
- 6) 위원회의 구성(제21조) ; 30명 이내

### 2.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제4장)

- 1) 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운영(제22조)
- 2) 사회서비스 보장(제23조)
- 3) 소득 보장(제24조)

### 3.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제5장)

- 1) 운영원칙(제25조) ;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
- 2) 협의 및 조정(제26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 3) 민간의 참여(제27조)
  -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 정책 개발·시행 및 여건 조성
- 4) 비용의 부담(제28조)
- 5) 사회보장 전달체계(제29조)
- 6) 사회보장급여의 관리(제30조)
- 7) 전문인력의 양성 등(제31조)
- 8) 사회보장통계(제32조)
- 9) 정보의 공개(제33조)
- 10) 사회보장에 관한 설명(제34조)
- 11)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제35조)
- 12) 사회보장에 관한 통지(제36조)

### 4. 사회보장정보의 관리(제6장)

-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제37조)
- 2) 개인정보 등의 보호(제38조)

### 5. 보칙(제7장)

- 1) 권리구제(제39조)
- 2) 국민 등의 의견수렴(제40조)

## 12주차 1차시 : 사회보장급여법 I

학습내용	1. 사회보장급여법의 입법배경 및 연혁 2. 사회보장급여법의 총칙 3. 사회보장급여의 절차
학습목표	1. 사회보장급여의 절차 및 방법 등을 담은 사회보장급여법의 입법배경 및 연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보장급여법의 총칙인 목적 및 기본개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대상자 발굴 등 절차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 학습내용 1

### 사회보장급여법의 입법배경 및 연혁

#### 1. 입법배경 및 연혁

##### 1) 제정 이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 사회보장급여법)
- [시행 2015. 7. 1.] [법률 제12935호, 2014. 12. 30. 제정]
- 늘어나는 복지예산과 서비스의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복지전달체계가 중앙행정기관별·지방자치단체별로 분절 운영되어 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를 기대하기 어렵고,
- 복지혜택이 중복 제공되거나 2014년 2월 26일 송파구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세 모녀가 동반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도움이 절실한 계층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동시 발생
- 「사회보장기본법」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포괄하는 사회서비스 개념을 도입, 국민의 보편적·생애주기적인 특성에 맞게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을 지향하고 있으나,
-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방안과 절차가 미비하여 적절한 조사와 지급 이후의 사후관리의 미흡으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담보 못하는 문제 제기.
-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사업 중심의 서비스 이용 절차와 운영에 한정되어 있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지역단위 사회보장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하는 한계 노정
- 이에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조사, 결정·지급, 사후관리에 이르는 복지대상자 선정과 지원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 소외계층을 발굴하기 위한 신고의무, 보호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의 직권신청, 보호계획 수립·지원, 상담·안내·의뢰 등 수급권자 보호를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 목적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 간 정보의 연계를 통하여 복지행정 업무를 전자적으로 지원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함으로써 복지사업의 효과성을 제고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통일성을 기하여 지역 단위의 종합적 사회보장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 및 지원체계를 정립
-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목적

<표 1> 사회보장급여법의 주요 개정 연혁(2016년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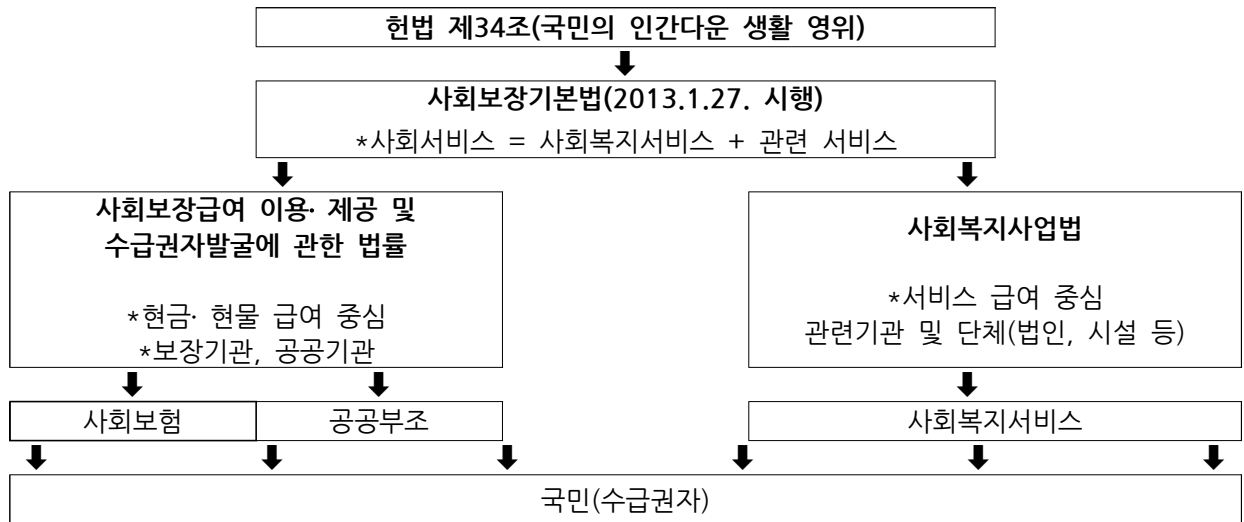
개정일 · 형태	개정 이유
2016. 2. 3. 일부개정	업무담당자가 신청자와 부양의무자 등을 조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b>지도감독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b>
2017. 3. 21. 일부개정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발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b>개인신용정보 중 연체정보에 대하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b> ,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에게 보건·복지·고용·교육 등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및 민간 법인·단체·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18. 12. 11. 일부개정	<p>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발굴하여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과 홍보, 정보공유,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p> <p><b>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복지사각 지대가 존재함. 특히 생계 위험에 놓인 사람이 복지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생계형 범죄로 이어져 현대판 장발장이 늘어나고 있음.</b></p> <p>이에 보장기관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b>매 분기별 지원대상자 발굴조사를 실시</b>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대상자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며, 그 밖에 <b>부정수급 신고포상제의 근거를 마련</b>하고, 비밀유지의무 대상에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며, 자살자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도 위기가구에 포함하여 보호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한 점을 정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p>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에서 검색한 내용을 재구성함

## 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변화

- 사회보장급여법 제정으로, 사회보장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공공전달체계를, 사회복지사업법은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로 이원화
- 그간 사회복지사업법 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공전달체계를 ‘사회보장급여’ 개념 도입으로 사회보장급여법에서 규정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법이 보다 포괄적인 법률이 됨
- 공공 복지전달체계가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이관되고, 사회복지사업법은 민간부분의 사회복지활동만을 국가가 관할하는 법으로 남음
- 또한 사회보장급여법(제4조 제4항)에서 사회보장기관에 의한 민간 법인·단체·시설이 제공하는 복지혜택 또는 서비스까지 정함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도 사회보장급여법의 영향 범위 대상

<표 2>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법체계



\*출처 : 유병선 최연혁 이사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방향 -사회서비스 기본법으로 전환, 경기복지재단, 2015 내용을 재구성함

## 학습내용 2 사회보장급여법의 총칙

### 1. 총칙(제1장)

#### 1) 목적(제1조)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 정의(제2조)

- "사회보장급여"란 제5호의 보장기관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제1호)
- "수급권자"란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제2호)
- "수급자"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제3호)
- "지원대상자"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제4호)
- "보장기관"이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제5호)

#### 3)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준용

#### 4) 기본원칙(제4조)

-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은 이에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함(제1항)
-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2항)

-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투명·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3항)
- 사회보장급여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시설이 제공하는 복지혜택 또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4항)
- 국민이 사회보장급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정책 및 관련 제도를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제5항)
-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6항)

### 학습내용 3

### 사회보장급여의 절차

#### 1. 사회보장급여(제2장)

##### 1)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제5조)

-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등은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제1항)
-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봄(제2항)

##### 2)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제6조)

-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 요구와 관련된 사항(제1호)
- 지원대상자의 건강상태, 가구 구성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제2호)
- 그 밖에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사항(제3호)

##### 3) 수급자격의 조사(제7조)

-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배우자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 확인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하고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근거)할 수 있고,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시 제외(제1항)

- ①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 ②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 ③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에 관한 사항
- ④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4)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제8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금융정보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 서면을 받아야 함
-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등(제1호)
-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신용정보 중 채무액 등(제2호)
- ③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에 관한 사항(제3호)
- ④ 「보험업법」의 보험에 가입하여 낸 보험료 등(제4호)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제3항)
-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관련 법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 등을 제공해야 함(제4항)

5)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제9조)

-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요구와 수급자격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 및 제공 유형을 결정하되,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보장급여는 지원대상자가 현재 제공받고 있는 사회보장급여와 보장내용의 중복 금지(제1항)
-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결정에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제2항)
- 결정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와 그 유형 및 변경사항 신고의무 등을 서면(신청인의 동의 전자문서 포함)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구두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음(제3항)

6) 위기가구의 발굴(제9조의2)

-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제1항)
  - ①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결과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제1호)
  - ②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제2호)

7)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제10조)

-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다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해야 함
  - ① 사회보장급여의 내용 및 제공규모
  - ② 수급자가 되기 위한 요건과 절차
  - ③ 그 밖에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8) 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제11조)

- 관할 지역 거주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 등의 장에게 소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공유,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함
  -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제1호)
  - ② 「국민연금법」 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제2호)
  - ③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제3호)
  - ④ 「지역보건법」 에 따른 보건소(제4호)
  - ⑤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각 호의 학교(제5호)
  - ⑥ 「경찰법」 에 따른 경찰서(제6호)
  - ⑦ 「소방기본법」 의 소방대(제7호)
  - ⑧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제8호) ; 수도, 가스, 전기 등 사업자

9)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제12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이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음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제1항)
  - ① 「전기사업법」에 따른 단전, 단수, 단가스 가구 정보(제1호)
  - ②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담당교원이 위기상황으로 판단한 학생의 가구정보(제2호)
  - ③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6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한 사람의 가구정보(제3호)
  -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신청 또는 지원 중 탈락가구의 가구정보(제4호)



- 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시설장이 입소 탈락자나 퇴소자 중 위기상황으로 판단한 사람의 가구정보(제5조)
- 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개인신용정보(제6조)
- ⑦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의 소방대(제7호)
- ⑧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제8호) ; 공공주택임대료, 관리비, 국민연금, 전기료 각 3개월 이상 체납자, 범죄피해자, 치매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화재피해자, 자살시도자 등)
- 10) 발굴조사의 실시 및 실태점검(제12조의2)
  -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제1항)
- 11)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제13조)
  -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 함(제1항)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대한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입을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보장기관에 알리고,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2항)

<표 3>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자(제13조 제3항 각호)

개정 이유
1.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활동지원인력
3.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5. 응급구조사
6. 구조대 및 구급대의 대원
7. 경찰공무원
8. 자치경찰공무원
9.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1.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등
12. 학교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등 및 산학겸임교사 등
13.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14.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성매매피해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6.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7.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19. 보건소의 방문간호 업무 종사자
20.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이장 및 통장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에서 검색한 내용을 재구성함

- 12) 민관협력(제14조)

- 보장기관과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제1항)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역사회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특별자치시 시·도사회보장위원회)에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 및 그 밖에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한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 등을 포함시켜 운영할 수 있음(제2항)

### 13)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15조)

-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결정한 때, 필요한 경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수급권자별 사회보장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제1항)
  - ① 사회보장급여의 유형·방법·수량 및 제공기간(제1호)
  - ②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기관 및 단체(제2호)
  - ③ 동일한 수급권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제공 보장기관 등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간 연계방법(제3호)
  - ④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시설이 제공하는 복지혜택과 연계가 필요한 경우 그 연계방법(제4호)

### 14) 수급권자등에 대한 상담·안내, 의뢰 등(제16조)

-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수급권자 등을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명칭,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보장내용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담 및 안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지원하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제1항)

### 15) 이의신청(제17조)

- 이의가 있는 수급권자등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제1항) ; 최대 60일 이내 연장
- 보장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함(제2항) ; 최대 10일 이내 연장

### 16) 수급권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제18조)

- 보장기관의 장은 급여 제공이 결정된 수급권자를 자신의 가정에서 돌보는 사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상담을 실시하거나 금전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 학습정리

### 1. 사회보장급여법의 입법배경 및 연혁

#### 1) 제정 이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 사회보장급여법)
-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조사, 결정·지급, 사후관리에 이르는 복지대상자 선정과 지원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 소외계층을 발굴하기 위한 신고의무, 보호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의 직권신청, 보호계획 수립·지원, 상담·안내·의뢰 등 수급권자 보호를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 목적

#### 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변화 :

- 사회보장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공공전달체계를, 사회복지사업법은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로 이원화

### 2. 사회보장급여법의 총칙(제1장)

#### 1) 목적(제1조)

- 2) 정의(제2조)
- 3)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조)
- 4) 기본원칙(제4조)

### 3. 사회보장급여의 절차(제2장 사회보장급여)

- 1)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제5조)
- 2)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제6조)
- 3) 수급자격의 조사(제7조)
- 4)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제8조)
- 5)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제9조)
- 6) 위기가구의 발굴(제9조의2)
- 7)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제10조)
- 8) 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제11조)
- 9)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제12조)
- 10) 발굴조사의 실시 및 실태점검(제12조의2)
- 11)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제13조)
- 12) 민관협력(제14조)
- 13)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15조)
- 14) 수급권자등에 대한 상담·안내, 의뢰 등(제16조)
- 15) 이의신청(제17조)
- 16) 수급권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제18조)

## 12주차 2차시 : 사회보장급여법 II

학습내용	1.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2. 사회보장정보 3.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등
학습목표	1.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 등 관리방법에 대해 숙지할 수 있다.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 등 사회보장정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등을 학습할 수 있다.

### 학습내용 1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 1.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 1)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제19조)
  -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자격조사(제7조)를 할 수 있음(제1항)
- 2)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제19조2)
  - 보건복지부장관은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 대하여 보장기관이 효과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 발생 현황, 피해사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제1항)
- 3) 수급자의 변동신고(제20조)
  -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는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 상태, 근로능력, 다른 급여의 수급이력 등 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4) 사회보장급여의 변경·중지(제21조)
  -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제19조) 및 수급자의 변동신고(제20조)에 따라 수급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인적사항, 가족관계, 소득·재산 상태,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종류·지급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음(제1항)
  - 조사 결과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제2항)
- 5) 사회보장급여의 환수(제22조)
  - 수급자의 변동신고(제20조)를 고의로 회피,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거나 타인이 부정수급을 받도록 한 경우 사회보장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제1항)
  - 소비하였거나 부득이한 경우 반환 면제할 수 있음(제2항)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제3항)

1. 사회보장정보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등

1)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등(제23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의 선정 및 급여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제1항)
  - ① 근거 법령, 보장대상 및 내용, 예산 등 사회보장급여 현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제1호)
  - ② 제5조~제22조(신청~환수)의 상담, 신청, 조사 및 자격의 변동관리에 필요한 인적사항·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제2호)
  - ③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제3호) 등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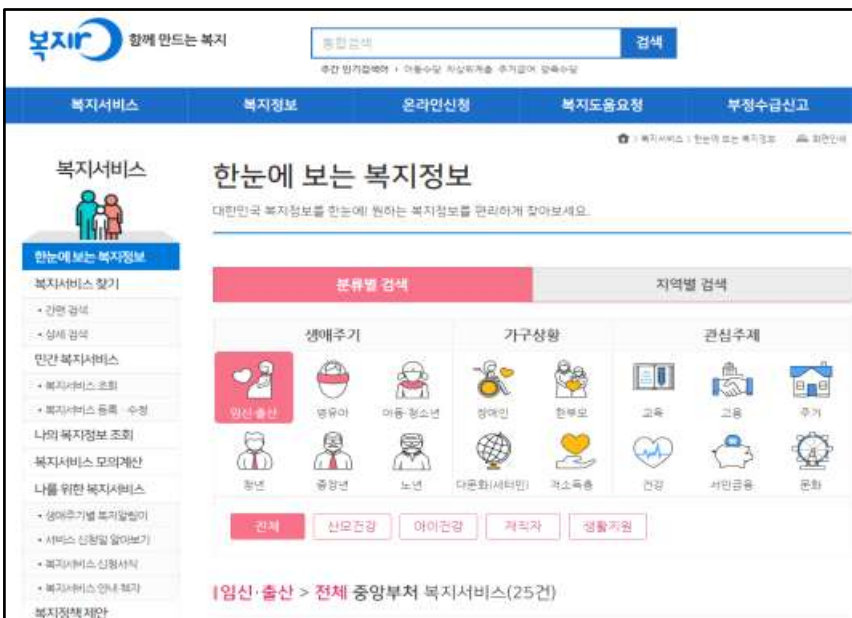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등(제24조)

- 보장기관의 장은 신청부터 환수까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업무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음(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된 정보를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시설의 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제2항)

3) 대국민 포털 구축 등(제25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국민에게 사회보장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검색, 조회 등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대국민 포털을 구축·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야 함(제1항)
- 국민이 대국민 포털 등을 통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도 제5조에 따른 신청으로 보고, 제6조부터 제22조까지를 준용(제3항).

<그림 1> 사회보장급여법 제25조에 의한 대국민 포털(복지로)



\*출처 : 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 에서 발췌함

- 4) 사회보장정보의 정확성 유지(제26조)
  - 정보보유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제1항)
- 5) 사회보장정보의 표준화(제27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와 관련된 각종 기준, 절차, 방법, 서식 등을 표준화하여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음(제1항)
- 6) 사회보장정보 등의 협의·조정(제28조)
  -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고, 불협이시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제1항)
- 7) 사회보장정보원(제29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원을 설립(제1항)
  - 주요 업무(제3항 제1호~8호) : 정보시스템과 포털 운영, 정책지원연구와 사업지원, 정보보호와 시스템 사용 지원 등

## 2.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 1) 사회보장정보의 보호대책 수립·시행(제30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사회보장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물리적·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 2) 사회보장정보 침해행위 등의 금지(제31조) : 위조·변경·훼손·말소·유출 등(제1호~제4호)
-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복구조치(제32조)
- 4) 사회보장정보 등에 대한 침해행위의 시정요구(제31조)
- 5) 사회보장정보의 파기(제34조)
  - 보장기관의 장 및 사회보장정보원의 장은 사회보장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해야함(\*예외는 대통령령)

### 학습내용 3

###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등

#### 1.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 1)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제35조)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함(제1항)
    -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 지역사회보장협의체(제41조)의 심의와 해당 기초의회의 보고를 거쳐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제출(제2항)
  -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제36조)
    -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보장계획(제1항)
- ①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 ② "지역사회보장지표" 의 설정 및 목표
  - ③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 ④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 ⑤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 ⑥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 ⑦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 ⑧ 지역 내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 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실제 정하지 않음)
  -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보장계획(제2항~제3항)
- 3)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제37조)
  -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시 사회보장 관련 법인·단체·시설에 인력, 기술, 재정 등 지원 할 수 있음(제2항)
- 4)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변경(제38조)
  -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보장의 환경 변화,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변경 등이 있을 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변경 가능
- 5)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제39조)
  - 지방자치단체장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 보건복지부장관 → 사회보장위원회(제1항~제2항)
- 6) 시·도사회보장위원회(제40조)
  - 시·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지표, 제공, 추진 등 업무 심의·자문(제2항)
  -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제3항)
    - ①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 ②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 ③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 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⑥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천한 사람
    - ⑦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특별자치시에 한정)
    - ⑧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7) 지역사회보장협의체(제41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치·운영(제1항)
  -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지표, 제공, 추진 등 업무 심의·자문(제2항)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 운영(제4항)

<그림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격 및 기능변화 추이

구 분	'05.7.31. 이전	'05.7.31.~'15.6.30.	'15.7.1. 이후
법 적 근 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명 칭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목 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	- 관할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건의 -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 의료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 강화
성 격	심의/자문기구	심의/자문기구	기능 강화
배 고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운영	공공과 민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지역복지 거버넌스의 구조와 기능 확대	기존 사회복지에서 탈피하여 사회보장으로 범주 확대

\*출처 : 보건복지부 201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www.mohw.go.kr](http://www.mohw.go.kr) 에서 발췌함

8)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제42조)

9) 통합사례관리(제42조의2)

-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 수준 제고 및 지원대상자 상담과 지도,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및 실시, 대상자에게 보건·복지·고용·교육 등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및 민간 법인·단체·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 실시 가능(제1항)
- 통합사례관리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음(제2항)
- 보건복지부장관,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전문적 지원 위해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실시 가능(제3항)
-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제4항)

<표 1>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보건복지부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33호, 2019. 6. 12., 일부개정]
제7조의2(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업무 등) ①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또는 보건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또는 보건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② 통합사례관리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자에 대한 상담·지도 및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조사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과 그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의 연계 3. 보장기관과 민간 법인·단체·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관리·점검 4. 그 밖에 통합사례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 9. 21.]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에서 검색한 내용을 재구성함

10)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43조)

- 동 조항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조항 삭제됨(2017. 10. 24.)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음(제1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업무 중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 지도, 생활실태의 조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업무를 담당(제3항)
- 국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제4항)



<표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임용 및 업무에 관한 사항(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사회복지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6. 12.] [대통령령 제29750호, 2019. 5. 7., 일부개정]	사회복지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33호, 2019. 6. 12., 일부개정]
제23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 법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중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담당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계층 발굴 및 상담과 지도,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서비스 제공 및 점검, 사후관리 등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업무 2.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취약계층의 소득·재산 등 생활실태의 조사 및 가정환경 등 파악 업무 3. 사회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 안내, 상담 업무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에서 검색한 내용을 재구성함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s://local.gosi.go.kr> 활용 : 시험시행정보, 시도별접수, 응시표 출력, 합격 및 성적 조회 등
- 11) 지역사회보장의 균형발전(제45조)
- 12)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제46조) : <http://www.kccwp.or.kr/>
- 1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제47조)
- 14) 사회복지 특별지원구역 운영(제48조)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영구임대주택단지, 저소득층 밀집 거주지, 그 밖에 보건, 복지, 고용, 주거, 문화 등 특정 분야의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사회복지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하여 지원 가능(제1항)
- 15) 비밀유지의무(제49조)
- 16) 사회복지급여의 압류 금지(제50조) : 사회복지급여로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 금지
- 17) 고발 및 징계요구(제53조) : 범죄혐의 인정 시 수사기관에 고발(제1항)
- 18) 신고포상금의 지급 등(제53조2)
  -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가능하며 단, 직무관련 공무원은 제외 (제1항)
  - ① 제22조제1항(환수 대상)의 부정수급자
  - ② 법령 위반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복지급여를 제공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복지 관련 법인·단체·시설

<표 3>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시행 2019. 6. 1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06호, 2019. 6. 12. 제정]		
신고 대상 유형	환수결정금액	지급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3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 500만 원 이하	• 환수결정금액 × 30/100 ※ 최대 지급금액 150만원
	○ 500만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 환수결정금액 × 20/100 ※ 최대 지급금액 250만원 (150만원 + (500만원 초과 × 20/100))
	○ 1,000만원 초과	• 환수결정금액 × 10/100 ※ 최대 지급금액 5,000만원 (250만원 + (1,000만원 초과 × 10/100))

※ 공통기준 : 예산 범위 내 지급, 환수결정금액은 환수 결정된 정부지원금, 천원 미만 절사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에서 검색한 내용을 재구성함

19) 복지 · 보조금 부정 신고방법 : 전화(110 또는 1398),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http://www.clean.go.kr>)

## 학습정리

### 1.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 1)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제19조)
- 2)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제19조2)
- 3) 수급자의 변동신고(제20조)
- 4) 사회보장급여의 변경 · 중지(제21조)
- 5) 사회보장급여의 환수(제22조)

### 2. 사회보장정보

- 1)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등(제23조)
-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등(제24조)
- 3) 대국민 포털 구축 등(제25조)
- 4) 사회보장정보의 정확성 유지(제26조)
- 5) 사회보장정보의 표준화(제27조)
- 6) 사회보장정보 등의 협의 · 조정(제28조)
- 7) 사회보장정보원(제29조)
- 8) 사회보장정보의 보호대책 수립 · 시행(제30조)
- 9) 사회보장정보 침해행위 등의 금지(제31조)
- 10)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복구조치(제32조)

- 11) 사회보장정보 등에 대한 침해행위의 시정요구(제31조)
- 12) 사회보장정보의 파기(제34조)

### 3.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등

- 1)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제35조)
-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제36조)
- 3)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제37조)
- 4)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변경(제38조)
- 5)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제39조)
- 6) 시·도사회보장위원회(제40조)
- 7) 지역사회보장협의체(제41조)
- 8)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제42조)
- 9) 통합사례관리(제42조의2)
- 10)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43조)
- 11) 지역사회보장의 균형발전(제45조)
- 12)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제46조)
- 1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제47조)
- 14)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제48조)
- 15) 비밀유지의무(제49조)
- 16) 사회보장급여의 압류 금지(제50조)
- 17) 고발 및 징계요구(제53조)
- 18) 신고포상금의 지급 등(제53조2)
- 19)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 13주차 1차시 : 사회복지사업법 I

학습내용	1. 사회복지사업법 입법배경 및 연혁 2. 사회복지사업법 총칙 3.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주체
학습목표	1. 사회복지사업 기본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배경 및 연혁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 대상 및 정의 등 총칙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주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학습내용 1

### 사회복지사업법 입법배경 및 연혁

#### 1. 입법배경 및 연혁

##### 1) 제정 의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1970. 4. 2.] [법률 제2191호, 1970. 1. 1., 제정]
-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34조 제1항과 국가의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책임을 규정한 같은 조 제2항을 구체화하는 법률임
-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관한 입법들의 일반법이자 사회복지사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사회복지 증진 도모를 위한 기본법의 의의

##### 2) 입법배경

- 일제강점기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비체계적으로 근거법령 없이 사회복지서비스 도입
- 복지서비스 주로 외국의 원조로 민간이 서비스 제공 · 운영해왔으며, 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역할 미미
- 1961년에 제정된 아동복지법, 생활보호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등이 시행되고 있었으나 복지서비스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효과적으로 사회복지사업 전개를 위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 제기
- 1960년대 후반 외국원조단체 철수로 원조액수 감소, 민간단체 정부로부터 재정지원 운영
- 민간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감독의 필요성 대두,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추진
- 1966년 12월 최초의 입법 활동 이후 1970년 1월 제정됨

##### 3) 연혁

[표1]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연혁(2016년 이후)

개정일 · 형태	제정, 개정 이유
1970. 1. 1. 제정	<p>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그 공정한 운영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사업은 생활보호법 · 아동복지법 · 윤락행위등방지법등에 의한 보호사업 · 복지사업 · 선도사업 · 복지시설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함.</li> <li>•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타의 법인에 한함.</li> <li>• 보건사회부장관은 공동모금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법인인 모금회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li> </ul>
<p>1992. 12. 8. 전부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읍·면·동에서 저소득층·노인·장애인등 요보호대상자의 선정과 상담·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b>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b></li> <li>• <b>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등에 관한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이들의 권한으로 이양함.</b></li> <li>•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설립허가취소사유,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보조금반환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등 <b>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을 합리화하도록 함.</b></li> </ul>
<p>1997. 8. 22. 전부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사회복지사 자격은 1·2·3 등급으로 법에 규정하고,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며, 국가시험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b></li> <li>•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b>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한편, 개인에게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b> 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설치·운영하도록 함.</li> <li>• <b>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동 시설의 감독 또는 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b></li> </ul>
<p>2012. 1. 26. 일부개정 (일명 도가니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대표자의 전횡, 시설 내 이용자 인권 침해, 사적이익 추구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b>사회복지법인의 이사를 외부에서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는 등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b></li> <li>• <b>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회복지공무원</b> 등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또는 시설의 장 등이 될 수 없도록 하며,</li> <li>•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 대하여 <b>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b>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법인 이사회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운영을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li> <li>• 사회복지시설 <b>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b> 제고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인권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li> </ul>
<p>2018. 12. 11. 일부개정 [시행 2020. 12. 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정신건강·의료·학교 등의 직무영역별 사회복지사를 신설함(제11조).</b></li> <li>• <b>성폭력범죄자가 그 형을 마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b>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함(제19조).</li> <li>•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 등이 채용광고와 다르게 채용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여 <b>불합리한 채용관행을 개선함(제35조의3 신설).</b></li> <li>•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은 <b>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1조제2항 신설).</b></li> </ul>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에서 검색한 내용을 재구성함

1. 총칙

1) 목적(제1조)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기본이념(제1조의2)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제공 가능(제1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공공성 확보(제2항)
- 사회복지사업을 시행 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 보장(제3항)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 보장(제4항).

3) 정의(제2조)

-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제1호)

[표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47호, 2019. 1. 15. 일부개정]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 러. 「기초연금법」
- 머. 「긴급복지지원법」
-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 서. 「장애인연금법」
-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에서 검색한 내용을 재구성함

[표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허목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9. 6. 12.] [대통령령 제29832호, 2019. 6. 11. 일부개정]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9. 6. 11.>

1. 「건강가정기본법」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4.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에서 검색한 내용을 재구성함

-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제2호)
  -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제3호)
  -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제4호)
  -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제5호)
  -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제6호)
  -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제7호)
- 4)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조)
-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 목 법률에 특별 규정 없는 한 이 법을 따라야 함(제1항)
  -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 개정 시 이 법에 부합해야 함(제2항)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1) 복지과 인권증진의 책임(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증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짐(제1항)
-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서비스 연계 제공 노력(제2항)
- 복지사업과 관련한 상담, 작업치료, 직업훈련 등을 실시 및 필요시 주민의 복지욕구 조사(제3항)
- 국민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이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제4항)
-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활성화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제5항)
-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교육 강화(제6항)
- 이용자가 긴급한 인권침해 상황에 놓인 경우 신속히 대응할 체계를 갖추어야 함(제7항)
- 시설 거주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호체계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제8항)
-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제9항)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을 위하여 간이고 신속한 구제조치를 마련(제10항)

2) 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제5조)

-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함(제1항)

3)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제5조의2)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제1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1항의 서비스 제공 시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여, 서비스 제공 받게 할 수 있음(제2항)
- 사회복지서비스 품질향상, 원활한 제공, 제공 인력의 전문성 평가, 평가기관 운영 등(제3항~제6항)

4) 시설 설치의 방해 금지(제6조)

-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방해 금지(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 설치 지연·제한 조치 금지(제2항)

5)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제6조의2)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관한 자료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제1항)

6)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제9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지원·육성 의무(제1항)

- ① 자원봉사활동의 홍보 및 교육
- ②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③ 자원봉사활동 중의 재해에 대비한 시책의 개발
- ④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7) 지도·훈련(제10조)

- 보건복지부장관 이 법 및 사회복지 관련 법률 시행 관련 사무 종사자(공무원,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등 실시(제1항)



## 2. 사회복지사 자격 관리

- 1)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제11조) ; <개정 2018. 12. 11.>, [시행일 : 2020. 12. 12.]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제1항)
  -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2급으로 하되, 정신건강·의료·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제2항)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제3항)
  - 사회복지사의 등급별·영역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 2)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제11조의2)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음(제1항)
    -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제1호)
    - ②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제2호)
    - ③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제3호)
    - ④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제4호)
    - ⑤ 관련 법에 따른 정신질환자(단, 전문의가 인정 시 제외) (제5호)
- 3)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제11조의3)
  -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 취소 또는 1년 범위 내 정지(제1항)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제1호)
    - ② 제11조의2(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2호)
    - ③ 자격증을 대여·양도 또는 위조·변조한 경우(제3호)
    - ④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제4호)
    - ⑤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제5호)
    - ⑥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제6호)
- 4)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11조의4) :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 금지
- 5) 국가시험(제12조)
  -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제1항)
  - 시험 과목, 응시자격 등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함(제4항)
- 6) 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제13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고 보고(제1항)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제2항)
- 7) 사회복지의 날(제15조의2)
  -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하고, 사회복지의 날부터 1주일을 사회복지주간으로 함(제1항)

## 1. 사회복지사업법 입법배경 및 연혁

### 1) 제정 의의

-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관한 입법들의 일반법이자 사회복지사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사회복지 증진 도모를 위한 기본법

### 2) 입법배경

- 복지서비스 전반의 체계적 정비, 효과적인 사회복지사업 전개 등을 위한 법적 근거 필요

## 2. 사회복지사업법 총칙

### 1) 목적(제1조)

### 2) 기본이념(제1조의2)

### 3) 정의(제2조)

### 4)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조)

## 3.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주체

### 1)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제4조)

### 2) 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제5조)

### 3)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제5조의2)

### 4) 시설 설치의 방해 금지(제6조)

### 5)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제6조의2)

### 6)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제9조)

### 7) 지도·훈련(제10조)

### 8)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제11조)

### 9)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제11조의2)

### 10)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제11조의3)

### 11)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11조의4)

### 12) 국가시험(제12조)

### 13) 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제13조)

### 14) 사회복지의 날(제15조의2)

## 13주차 2차시 : 사회복지사업법 II

학습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및 전달체계</li> <li>2. 사회복지 재정</li> <li>3.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사례</li> </ol>
학습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및 전달체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li> <li>2. 보조금 등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li> <li>3. 사회복지법인의 비리 등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사례를 실천현장을 대비해 적용할 수 있다.</li> </ol>

### 학습내용 1

###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및 전달체계

#### 1. 사회복지법인

- 1) 법인의 설립허가(제16조)
  -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제1항)
  -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제2항)
- 2) 정관(제17조)
  - 법인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업의 종류 등 이 포함되어야 함(제1항 제1호~11호)
  - 법인 정관 변경 시 시·도지사의 인가(제2항)
- 3) 임원(제18조)
  -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제1항)
  - 이사회 구성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이상 초과금지(제3항)
  -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각각 연임(제4항)
- 4) 임원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 금지(제18조의2)
  -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약속 금지
- 5) 임원의 결격사유(제19조) ; 제1호~제3호(미성년자, 파산선고 후 미복권된 자, 성범죄자 등)
- 6) 임원의 보충(제20조) ;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
- 7) 임원의 겸직 금지(제21조)
  -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 겸직 금지(제1항)
  -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 겸직 금지(제2항)
- 8) 임원의 해임명령(제22조)
  - 시·도지사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제1호)
  -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제2호)
  -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시·도지사에게 고의로 지연보고 또는 거짓 보고하였을 때(제3호)
- 9)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제22조의2) ; 조사나 감사 진행중, 해임명령 기간 중
- 10) 임시이사의 선임(제22조의3)과 임시이사의 해임(제22조의4)
- 11) 재산 등(제23조)
  -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함(제1항)
  -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價額)을 정관 명시(제2항).

-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경우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제3항)
  - ①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제1호)
  -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제2호)
-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으로 정함(제4항)

#### 12) 재산 취득 보고(제24조)

- 법인이 매수·기부채납(寄附採納),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및 그 취득 사유, 취득재산의 종류·수량 및 가액을 매년 시·도지사에게 보고

#### 13)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제25조) ; 이사회 회의록 작성, 공개 등(제1항~제5항)

#### 14) 설립허가 취소 등(제26조)

- 당연 취소(제1호~7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 설립허가 조건 위반, 목적 달성이 불가능, 목적사업 외의 사업, 허가 후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법인 운영 시설에서 반복적·집단적 성폭력범죄 및 학대관련범죄 발생, 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 미출연

- 시정 명령 또는 취소(제8호~11호) : 임원 관련 위반 등

#### 15) 남은 재산의 처리(제27조)

-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제1항)
- 귀속된 재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무상으로 사용·수익(제1항)

#### 16) 수익사업(제28조)

-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 가능(제1항)
-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 불가(제2항).
-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 처리(제3항)

#### 17) 합병(제30조)

- 법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이 법에 따른 다른 법인과 합병 가능(제1항)

#### 18) 동일명칭 사용 금지(제31조) ;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 사용불가

#### 19) 다른 법률의 준용(제32조) ;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

## 2. 사회복지협의회

#### 1) 사회복지협의회(제33조) ; \*사회복지포털 복지넷(<https://www.bokji.net/>) 참조

-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시·도 단위의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음(제1항)

- ①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 ②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 ③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 3. 사회복지시설

#### 1)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제34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1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정관,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예산서, 시설의 평면도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제2항)
  - 시설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제4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제5항)
- 2) 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등에 관한 특례(제34조의2)
-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 가능(제1항)
- 3) 보험가입 의무(제34조의3) ;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손해배상책임보험(화재, 안전사고 등) 가입 의무
- 4) 시설의 안전점검 등(제34조의4) ; 시설에 대한 수시 안전점검 실시, 기초단체의 시설에 대한 개·보수 요구 및 비용 보조 가능
- 5) 사회복지관의 설치 등(제34조의5) :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등

[표1] 사회복지관의 사업(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9. 6. 12.>)

기능	사업분야	사업 및 내용
사례 관리 기능	사례발굴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를 발굴하여 개입계획 수립
	사례개입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의 문제와 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개입
	서비스 연계	사례개입에 필요한 지역 내 민간 및 공공의 가용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계, 의뢰
서비스 제공 기능	가족기능 강화	1. 가족관계증진사업 2. 가족기능보완사업 3. 가정문제해결·치료사업 4. 부양가족지원사업 5.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지역 내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사업
	지역사회 보호	1. 급식서비스 2. 보건의료서비스 3. 경제적지원 4. 일상생활 지원 5. 정서서비스 6. 일시보호서비스 7. 재가복지봉사서비스
	교육문화	1. 아동·청소년 사회교육 2. 성인기능교실 3. 노인 여가·문화 4. 문화복지사업
	자활지원 등 기타	1. 직업기능훈련 2. 취업알선 3. 직업능력개발

		4. 그 밖의 특화사업
지역 조직화 기능	복지 네트워크 구축	지역 내 복지기관·시설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복지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관이 지역복지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 - 지역사회연계사업, 지역육구조사, 실습지도
	주민 조직화	주민이 지역사회 문제에 스스로 참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주민 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고, 이러한 주민협력강화에 필요한 주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 - 주민복지증진사업, 주민조직화 사업, 주민교육
	자원 개발 및 관리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인력, 자원 등을 발굴하여 연계 및 지원하는 사업 - 자원봉사자 개발·관리, 후원자 개발·관리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의 내용을 재구성함

6) 시설의 장(제35조)

- 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해야 함(제1항)
- 시설의 장 불가(제2항 제1호~3호 ;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준거, 전관예우 금지).

7) 종사자(제35조의2) 불가 ;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미성년자, 파산선고 후 미복권된 자, 성범죄자 등) 준거, 형 집행 후 7년 이상 경과 되어야 종사 가능

8) 종사자 채용 시 준수사항(제35조의3)

- 해당 법인 또는 시설의 종사자를 채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채용 금지(제1항)
- 종사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종사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적용 금지(제2항)

9) 운영위원회(제36조) ; 시설운영계획 수립·평가, 프로그램 개발·평가,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거주자 생활환경 개선 등(제1호~제7호)을 위해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함(제1항)

10) 시설의 서류 비치(제37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시설 비치

[표2] 시설의 서류 비치 목록(보건복지부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41호, 2019. 6. 12. 일부개정] 제25조(시설의 서류비치)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에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 1. 26.>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한다) 2. 법인설립허가증사본(법인에 한한다) 3. 사회복지시설신고증 4.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명부 5.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상담기록부 6.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7. 후원금품대장 8.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9.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에서 검색한 내용을 재구성함

- 11) 시설의 휴지·재개·폐지 신고 등(제38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신고 수리
- 12)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제40조)
  -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제1항)
- 13) 시설 수용인원의 제한(제41조) ; 각 시설의 수용인원 300명 초과 금지(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외)

#### 4. 재가복지

- 1) 재가복지서비스(제41조의2)
  - 가정봉사서비스 : 가사 및 개인활동을 지원하거나 정서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제1호)
  - 주간·단기 보호서비스 : 주간·단기 보호시설에서 급식 및 치료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낮 동안 또는 단기간 동안 제공하거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제2호)
    - 시설 입소에 우선하여 재가복지 제공(제2항)
- 2) 가정봉사원의 양성(제41조의4) ; 가정·시설 보호대상자의 일상생활 편의 제공을 위함

### 학습내용 2

### 사회복지 재정

#### 1. 보칙

- 1) 보조금(제42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상담 및 자립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제1항)
  -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제2항)

-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제3항)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제1호)
- ②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제2호)
- ③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제3호)
  - 보조금 관련,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준용(제4항)
- 2) 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제42조의2)
  - 사회복지사업 관련 시설 설치·사업 육성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국유·공유 재산을 우선매각 또는 임대
-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제42조의3)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업 수행비용 지원 가능(제1항)
  - 「사회보장급여법」제39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가능(제2항)
  - 지원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복지사업 평가점수가 높거나 현저히 향상, 복지행정 발전 및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경우 등)으로 정함(제3항)
- 4)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제43조)
  - 보건복지부장관, 시설 제공 서비스의 최저기준 마련(제1항)
  - 시설 운영자, 서비스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 수준 유지 의무(제2항).
- 5) 시설의 평가(제43조의2)
  -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공표,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 가능 및 시설 거주자 전원 조치 가능(제1항)
- 6) 비용의 징수(제44조)
  -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산출근거 서면 통지, 기초수급자 본인 면제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징수 가능
- 7) 후원금의 관리(제45조)
  -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 공개 및 관리에 명확성 확보해야 함(제1항)
  -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그 밖에 후원금 관리 및 공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제2항)
- 8) 한국사회복지사협회(제46조)
  -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설립(제1항)
  - 협회는 법인으로 하되, 협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제3항)
- 9) 비밀누설의 금지(제47조)
  -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 누설 금지
- 10) 압류 금지(제48조)
  - 이 법 및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 금지
- 11) 청문(제49조)
  -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법인 설립허가 취소, 시설 폐쇄(제1호~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 실시
- 12) 포상(제50조)
  - 정부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게 포상 가능
- 13) 지도·감독 등(제51조)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음(제1항)

•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 실시 가능(제2항)

• 검사·질문 또는 회계감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함(제5항)

14) 벌칙(제54조) ; 시설설치 방해 등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5) 과태료(제58조) ; 종사자 채용 위반 자 등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학습내용 3

###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사례

#### 1.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횡령

##### 1) 관련규정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며, 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행하여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5조 및 제28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2) 지적사항

• □□법인 ○○시설장 A씨는 2008년에 시설 증·개축 기능보강사업(595,650천 원)과 2012년에 엘리베이터 설치 기능보강사업(100,000천 원)을 하면서,

• 6개 업체로부터 총 29,563천 원을 돌려받아 자부담분 516천 원을 제외한 29,047천 원을 관할 ○○시장에게 반납하지 않고 용도불명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함

#### 2. 보조금인 시설생계비로 종사자 급식 제공

##### 1) 관련규정

•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사회복지시설에서 생계급여 보조금은 시설입소자의 주·부식비 등으로만 사용하고 직원들의 식대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5조

##### 2) 지적사항

• □□법인 산하 ○○시설에서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시설 생계비로 시설입소자와 종사자들이 시설 내

식당에서 공동급식을 하면서 종사자 식대비용으로 총 214,000천 원을 수납·관리함

- 위 식대비용 214,000천원 중 공동급식에 따른 식자재 구입으로 지출한 금액은 10,100천 원으로 입소자 생계비 1식 단가를 감안할 때 최소 133,000천 원을 추가로 지출했어야 함에도,
- 대부분을 제세공과금, 퇴직급여, 기관운영비, 여비, 기타 수용비 등 시설의 일반 운영비로 사용함

## 학습정리

### 1.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및 전달체계

- 1) 법인의 설립허가(제16조)
- 2) 정관(제17조)
- 3) 임원(제18조)
- 4) 임원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 금지(제18조의2)
- 5) 임원의 결격사유(제19조) ; 제1호~제3호(미성년자, 파산선고 후 미복권된 자, 성범죄자 등)
- 6) 임원의 보충(제20조) ;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
- 7) 임원의 겸직 금지(제21조)
- 8) 임원의 해임명령(제22조)
- 9)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제22조의2)
- 10) 임시이사의 선임(제22조의3)과 임시이사의 해임(제22조의4)
- 11) 재산 등(제23조)
- 12) 재산 취득 보고(제24조)
- 13)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제25조)
- 14) 설립허가 취소 등(제26조)
- 15) 남은 재산의 처리(제27조)
- 16) 수익사업(제28조)
- 17) 합병(제30조)
- 18) 동일명칭 사용 금지(제31조)
- 19) 다른 법률의 준용(제32조)
- 20) 사회복지협의회(제33조)
- 21)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제34조)
- 22) 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등에 관한 특례(제34조의2)
- 23) 보험가입 의무(제34조의3)
- 24) 시설의 안전점검 등(제34조의4)
- 25) 사회복지관의 설치 등(제34조의5)
- 26) 시설의 장(제35조)
- 27) 종사자(제35조의2)
- 28) 종사자 채용 시 준수사항(제35조의3)
- 29) 운영위원회(제36조)
- 30) 시설의 서류 비치(제37조)
- 31) 시설의 휴지·재개·폐지 신고 등(제38조)
- 32)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제40조)

- 33) 시설 수용인원의 제한(제41조)
- 34) 재가복지서비스(제41조의2)
- 35) 가정봉사원의 양성(제41조의4)

## 2. 사회복지 재정

- 1) 보조금(제42조)
- 2) 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제42조의2)
-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제42조의3)
- 4)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제43조)
- 5) 시설의 평가(제43조의2)
- 6) 비용의 징수(제44조)
- 7) 후원금의 관리(제45조)
- 8) 한국사회복지사협회(제46조)
- 9) 비밀누설의 금지(제47조)
- 10) 압류 금지(제48조)
- 11) 청문(제49조)
- 12) 포상(제50조)
- 13) 지도·감독 등(제51조)
- 14) 벌칙(제54조)
- 15) 과태료(제58조)

## 3.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사례

- 1)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횡령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
- 2) 보조금인 시설생계비로 종사자 급식 제공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14주차 1차시 : 판례의 이해와 사회복지 판례

학습내용	1. 판례법 이해 2. 헌법재판소 결정례 3. 대법원 및 하급법원 판례
학습목표	1. 판례와 판례의 법원기능 및 사회복지판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2. 사회복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해석할 수 있다. 3. 사회복지 관련 대법원 및 하급법원 판례를 해석할 수 있다.

### 학습내용 1

### 판례법 이해

#### 1. 판례법

##### 1) 판례의 의의

- 판례는 선행된 재판들을 통하여 형성된 법(\*불문법)
- 그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선행된 판례들이 법원으로 역할
- 대륙법계(제정법을 1차 법원 + 판례)와 영미법계(판례법을 1차 법원)로 구분
- 선행판례에 반하는 판례가 존재하나 선행판례나 상급법원 판례 일반적으로 존중
- 우리나라, 성문법주의로 1차적으로 제정법을 법원으로 사용하고 부수적으로 판례를 법원으로 사용

##### 2) 판례의 기능

- 판례의 구속력 여부에 따라 법원으로 인정 가능
- 선례구속의 원리 : 당해 사건과 이후 유사한 사건이 거의 동일할 경우, 선판결 적용(평등권) ; 영미법계는 법적구속력이 있으나 대륙법계는 법적 효력은 없고 사실상의 구속력으로 제한
- 기판력의 원리 : 소송이 당사자 간 항소 없이 관할 법정에서 최종 결정된 이후에는 다른 법정에서 쟁송할 수 없다는 원칙 ; 판례는 현재와 미래에만 영향, 과거에는 영향이 없음

##### 3) 사회복지판례

- 사회복지판례는 공공이익을 위해 제기되는 공익소송의 의미
- 판례는 소송 당사자의 이익과 이후 다수 국민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4) 판례의 구분

- 판례는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례를 의미하나, 상고심에 이르지 못한 하급심 판례도 존재
- 헌법재판소 결정 :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의 결정을 통해 헌법 수준에서 법규범 판단 및 이해
- 행정심판 : 행정기관이 한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 국가인권위원회 민원, 진정 결정 :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 대한 민원, 진정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2헌마1030, 2015. 7. 30.]

1)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0. 4. 12.부터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에서 재활복지2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이전에 근무하던 사회복지시설에서 업무상횡령죄(정신요양시설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원장, 경리직원과 공모하여 국가보조금, 식비 등 합계 9,500여만 원을 횡령)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전주지방법원 2006고단1001) 2007. 2. 15.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 그런데 2012. 1. 26. 신설된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 제1호가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은 그 시행일 이후부터 위 사회복지시설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되었다.
- 이에 청구인은 위 조항 신설 전부터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던 단순 종사자에게까지 위 조항이 적용됨으로 인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12.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시사항

-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죄 등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9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2 제2항 제1호 중 제7조 제3항 제7호 나목 부분이 과잉금지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결정요지

- 심판대상조항은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으로 담보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또한 모든 범죄전력을 결격사유로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 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범한 고의범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고,
- 선고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는 제한기간을 달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었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약받는 불이익보다는
-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의 인권보호라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 한편, 청구인이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로 근무함에 있어 국가나 법령이 특별한 신뢰이익을 부여하면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로 근무하도록 유인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 그러한 종사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기간경과 전까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는 것에 불과하여 신뢰이익의 침해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심판대상조항은 직무관련범죄 등을 이유로 하는 결격사유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및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를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판례 의의

- 헌법의 기본권은 공공의 이익과 최소 침해의 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 확인

-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라면 누구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규율되는 강력한 행위규범으로서 역할
- 법률이 규정한 금지행위 및 처벌 등에 대한 법적 지식 이해 및 법 준수 필요성 인식 계기

## 2. 서울특별시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16헌라3, 2019. 4. 11., 각하]

### 1)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6년부터 취업 여건이 취약한 만 19~29세의 서울특별시 거주 미취업 상태의 청년층에게 매달 50만 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인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시행하려고 준비해 온 바 있다.
- 사회보장기본법(2012. 1. 26. 법률 제1123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제3항은 사회보장기본법이 2018. 12. 11. 법률 제15885호로 개정되면서 제4항으로 이동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5. 12. 10. 대통령령 제26697호로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9호를 신설·개정(2016. 1. 1. 시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를 지출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지출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게 정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을 개정한 행위가 청구인의 자치권한을 침해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6. 1. 27.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 한편,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청구인은 청년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 협의요청만 한 상태였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청구인과 보건복지부장관 사이에 협이가 이루어져서 청구인의 청년지원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었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방교부세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한 바도 없다.

### 2) 판시사항

-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상의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것으로 피청구인이 2015. 12. 10. 대통령령 제26697호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9호를 개정한 행위가 청구인의 자치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3) 결정요지

-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내용으로 인하여 실제로 청구인에게 권한침해가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권한 침해의 현저한 위험이 인정되어야 한다.
-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조항 및 모법인 지방교부세법 제11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조정을 거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를 지출한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제로 지방교부세가 감액되거나 반환되지 않는 이상 권한침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 그 전에는 조건 성립 자체가 유동적이므로 권한침해의 현저한 위험, 즉 조만간에 권한침해에 이르게 될 개연성이 현저하게 높은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따라서 이 사건 개정행위 자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의 침해가 확정적으로 현실화되었다거나

자치권한을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4) 판례 의의

-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부적법함을 확인
- 실제로 청구인에게 권한침해가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권한 침해의 현저한위험이 인정되어야 함

## 학습내용 3

## 대법원 및 하급법원 판례

### 1. 아동복지법위반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도7273, 판결]

#### 1) 판시사항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의 취지 및 같은 법 시행일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2) 판결요지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 28. 법률 제12341호로 제정, 2014. 9. 29. 시행, 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함)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타)목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 상응하는 규정이다]를 아동학대범죄의 하나로 규정하고,
- 나아가 제34조는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이라는 표제 밑에 제1항에서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며,
-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처벌법은 신체적 학대행위를 비롯한 아동학대범죄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34조 역시 아동학대범죄가 피해아동의 성년에 이르기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진행을 정지시킴으로써 보호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18세 미만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 이러한 아동학대처벌법의 입법 목적 및 같은 법 제34조의 취지를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특례조항의 신설·소급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아동학대처벌법이 제34조 제1항의 소급적용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위 규정은 완성되지 아니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시행일인 2014. 9. 29.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3) 원심판결

- 춘천지법 2016. 5. 4. 선고 2016노166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 2. 2. 선고 2015고단906 판결)

#### 4) 주문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8.경에서 9.경 사이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은 면소.)

## 5) 이유

### • 피고인의 상고이유

- 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 ② 원심은 판사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원심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사실오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 ③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봐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 ①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보편타당한 일반원칙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적법절차원칙과 소급금지원칙을 천명한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을 포함한 법치주의 이념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362 판결 참조).
- ②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타)목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복지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 상응하는 규정이다]를 아동학대범죄의 하나로 규정하고, 나아가 제34조는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이라는 표제 밑에 제1항에서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며,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처벌법은 신체적 학대행위를 비롯한 아동학대범죄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34조 역시 아동학대범죄가 피해아동의 성년에 이르기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 진행을 정지시킴으로써 보호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18세 미만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 ③ 이러한 아동학대처벌법의 입법 목적 및 같은 법 제34조의 취지를 앞에서 본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특례조항의 신설·소급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아동학대처벌법이 제34조 제1항의 소급적용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위 규정은 완성되지 아니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그 시행일인 2014. 9. 29.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④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8. 8.경에서 2008. 9.경 사이 안성시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공소외인(당시 8세)이 동생의 분유를 몰래 먹었다고 의심하여 옷걸이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책과 옷걸이 등을 집어 던져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라는 것이다.
- ⑤ 이는 구 아동복지법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어 공소시효의 기간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7년이다.

- ⑥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공소외인은 2001. 3. 25.생으로 미성년자인 사실, 이 사건 공소는 2015. 10. 27. 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다.
- ⑦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에 관하여는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의 시행일 당시 아직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여서 공소시효가 정지되었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5. 10. 27.까지 피해자 공소외인이 성년에 달하지 아니하여 공소시효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규정된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⑧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에 대하여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잘못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하고 말았다.
- ⑨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 및 부칙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파기의 범위 : 위에서 본 이유로 원심판결 중 면소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은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 결론 :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판례 의의

- 아동학대범죄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의 제정 취지를 인정하였고, 특히 아동학대범죄가 피해아동의 성년에 이르기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진행을 정지시킴으로써 보호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18세 미만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에 대해 대법원이 이를 인정함
-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잘못 판단한 원심을 파기함으로써 법리에 따른 법질서를 정립함

## 2. 노인복지법위반 [울산지법 2014. 5. 27., 선고, 2014고정311, 판결 : 확정]

### 1) 범죄사실

- 피고인은 울산 중구 (이하 생략) 소재 ○○○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이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07. 1. 2.경부터 2011. 6. 3.경까지 위 ○○○ 교회를 운영하면서 2층에 치매 노인 공소외 1(여, 89세) 등 다수의 치매·중풍 노인에 대하여 매월 입소 비용으로 위 노인의 부양가족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하고,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였다.

### 2) 판시사항

- 피고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였다고 하여 노인복지법 제56조 제2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 제2항(\*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이 아닌 같은 법 제57조 제1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를 적용한 사례

### 3) 판결요지

- 피고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였다고 하여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제2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현행법에서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신고 없이 설치·운영한 자에 대하여 법 제56조 제2항 및 제57조 제1호에서 중복된 처벌조항을 두고 있는데, 처벌대상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안에 따라 더 높은 법정형이 규정된 법 제56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법 제33조 제2항, 제35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법 제57조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56조 제2항이 아닌 법 제57조 제1호를 적용한 사례

### 4) 주문

-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5) 판례 의의

- 처벌대상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안에 따라 더 높은 법정형이 규정된다면 죄형법정주의(\*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함)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이를 방지함
  - 중복되고 시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처벌조항에 대한 개정을 통해 법조항을 정비함 : 현행법상 벌칙조항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서 제시하는 징역형 대비 적정 벌금액의 일반기준을 적용
- ① 법 제56조 제2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16년 12월 2일 삭제)
  - ② 법 제57조 제1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2016년 12월 2일 전문개정)
  - ③ 법 제57조 제1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17년 6월 3일 이후 현재)

## 학습정리

### 1. 판례법

- 1) 판례의 의의 : 판례는 선행된 재판들을 통하여 형성된 법
- 2) 판례의 기능 : 판례의 구속력 여부에 따라 법원으로 인정 가능
- 3) 사회복지판례 : 공공이익을 위해 제기되는 공익소송의 의미
- 4) 판례의 구분 : 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 행정심판, 국가인권위원회 민원, 진정 결정 등

### 2. 헌법재판소 결정례

-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2헌마1030, 2015. 7. 30.]
- 2) 서울특별시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16헌라3, 2019. 4. 11., 각하]

### 3. 대법원 및 하급법원 판례

- 1) 아동복지법위반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도7273, 판결]
- 2) 노인복지법위반 [울산지법 2014. 5. 27., 선고, 2014고정311, 판결 : 확정]

## 14주차 2차시 : 사회복지 판례 해석

학습내용	1. 행정심판례 2. 법령해석례 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학습목표	1.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행정심판례를 해석할 수 있다. 2. 정부에 의한 법령해석례를 해석할 수 있다. 3.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를 해석할 수 있다.

### 학습내용 1

### 행정심판례

#### 1. 행정심판

##### 1) 행정심판 이해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행정심판법령 근거)
- 행정기관이 한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민원,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 3가지로 구분
-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은 결정을 권고의 형식으로 내리는 민원에 비해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음
- 3심에 유료이면서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 신속·간이하고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위법성,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구제의 폭은 훨씬 넓어 국민입장에서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한 권익구제 제도임

#### 2. 행정심판 사례

[표1]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독촉고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8-22496, 2019. 3. 12.]

재결요지	<p>청구인은 2012. 4. 1. 이 사건 회사를 흡수합병한 주식회사로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2012년 4월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입고지서를 2012. 4. 23. 이 사건 회사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2012. 5. 23.부터 2018. 10. 23.까지 6회에 걸쳐 독촉고지서를 추가 발송하고 나서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를 합병했음을 확인한 이후 2018. 11. 20. 청구인 사업장 본점 주소지를 고지서 수령지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및 연체금을 고지내역으로 하는 독촉고지처분을 하였으나, <b>보험료 납입고지서가 납부의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징수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송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는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주소지로만 위 고용·산재보험료의 납입고지 및 독촉고지를 해 오다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b></p>
------	---

	<p>면 피청구인의 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u>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1조의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한 후의 처분으로 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납입의무가 없어진 자에 대하여 납입고지를 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u></p>
주문	<p>피청구인이 2018. 11. 20.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독촉고지처분을 취소한다.</p>
청구취지	<p>주문과 같다.</p>
이유	<p>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4. 1. 경기도 ○○시 ○○구 황○○로 ○○번길 ○○ 초○빌딩 4층에 있던 ○○코리아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흡수합병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2012년 4월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고용·산재보험료'라 한다) 납입고지서를 2012. 4. 23. 이 사건 회사의 위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가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2012. 5. 23.부터 2018. 10. 23.까지 이 사건 회사의 위 주소지로 6회에 걸쳐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나서 청구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u>회사를 합병했음이 확인되어 2018. 11. 20. 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 본점 주소지인 '○○남도 ○○시 ○○구 3○○로 ○○(차○동)'을 고지서 수령지로, 이 사건 회사의 2012년 4월 고용보험료 149만 9,300원, 산재보험료 97만 4,630원 및 연체금을 고지내역으로 하는 독촉고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u></p> <p>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u>2012. 4. 1. 이 사건 회사를 합병하여 이 사건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피청구인이 2012. 4. 1.부터 3년 내 이 사건 회사의 미납 보험료를 청구인에게 고지했다면 이를 납부했을 것이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다가 6년 5개월이 지난 2018년 11월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부당하다.</u></p> <p>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회사는 2012. 4. 2. 폐업 후 2012. 5. 9. 퇴직재정산 신고를 하였고 2012. 7. 9. 및 2012. 8. 21. 민원요청에 의한 수시독촉고지서 발송이 있었는데, 이는 「민법」 제168조제3항의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있고, <u>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를 승계하였음에도 이 사건 회사는 보험관계 탈퇴처리를 하고 청구인은 위 승계한 근로자에 대해 신규취득신고를 하여 두 회사가 관계없는 것처럼 처리하는 등 이 사건 회사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를 인지하면서 고의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u></p> <p>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6조의6, 제16조의9, 제16조의10, 제41조 / 국세기본법 제23조 / 상법 제235조 /</p>

민법 제16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폐업사실증명원, 고용·산재보험관계 해지신청서, 고지서 발행이력조회 전산출력물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의 폐업사실증명원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도 ○○시 ○○구 황○○로 ○○번길 ○○(수○동, 서○빌딩 4층)'로, 대표자는 '지○○'로, 개업일은 '2006. 2. 10.'로, 폐업일은 '2012. 4. 2.'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회사의 2012. 4. 3.자 고용·산재보험관계 해지신청서에 따르면 사유 발생일은 '2012. 4. 1.부 합병'으로, 우편물 수령지는 청구인 회사의 지점이 있던 '서울특별시 ○○구 ○○대로 ○○ ○○생명보험(주) ○○사옥 ○동 13층'으로, 통·폐합 시 사업장은 '○○○코리아 주식회사'(청구인)로, 고용·산재보험 소멸일은 '2012. 3. 31.'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청구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2011. 12. 27.자 흡수합병계약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공동대표이사는 '명○○, 이○○'이고 청구인은 2012. 4. 1. '경기도 ○○시 ○○구 황○○로 ○○번길 ○○'에 있던 이 사건 회사를 흡수합병한 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을 청구인 회사의 지점이 있던 '서울특별시 ○○구 ○○대로 ○○ ○○생명보험(주) ○○사옥 ○동 13층(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가 2013. 3. 11.경 위 서울사무소에 있던 근로자들을 '○○남도 ○○시 ○○구 3○○6로 ○○(차○동)'에 있는 현재의 청구인 사업장 본점으로 이전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가입자보험료 종합조회 전산출력물에 따르면 2012. 5. 9. 건강보험료 및 요양보험료에 대하여 퇴직정산신고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 퇴직정산신고를 누가 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마. 피청구인은 2012. 4. 23. 이 사건 회사를 수신자로 하여 이 사건 회사의 2012년 4월 고용·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소지였던 '경기도 ○○시 ○○구 황○○로 ○○번길 ○○(수○동, 초○빌딩 4층)'로 발송하였다.

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조회 전산출력물의 주요내용은 다음 (\*생략)과 같고, 피청구인은 2018. 11. 20. 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 본점 주소지인 '○○남도 ○○시 ○○구 3○○6로 ○○(차○동)'을 고지서 수령지로, 이 사건 회사의 2012년 4월 고용보험료 149만 9,300원, 산재보험료 97만 4,630원 및 연체금을 고지내역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16조의6, 제16조의9, 제16조의10에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하고 공단은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하며, 사업주가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공단이 조사하여 산정한 금액, 사업주가 공단 또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근로자의 보수 등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근로자의 보수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월평균보수를 결정하여 월별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산정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에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민법」 제168조에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3조에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 「상법」 제235조에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서류의 송달은 국가와 보험료 납부의무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 등의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고, 특히 보험료 납입고지서의 송달은 구체적 납부의무를 확정시키고 징수절차의 시발점이 되어 국가와 납부의무자 사이의 보험료 납부의무가 이를 중심으로 전개될 뿐만 아니라 납부의무자의 불복기간의 기준이 되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바, 보험료 납입고지서가 납부의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징수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송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3두12363 판결 참조).

따라서 피청구인이 행한 고용·산재보험료 납입고지는 이 사건 회사가 폐업되고 이를 흡수합병한 청구인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2012년 4월 고용·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2012년 4월 고용·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는 이 사건 회사의 주소지인 ‘경기도 ○○시 ○○구 황○○로 ○○번길 ○○(수동, 초○빌딩 4층)’에 이 사건 회사 폐업일 이후인 2012. 4. 23. 일반우편으로 최초 발송되었으며, 이후 위 주소지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독촉고지서가 2012. 5. 23., 2012. 6. 21., 2012. 7. 9., 2012. 7. 24., 2012. 8. 21., 2018. 10. 23. 일반우편으로 발송되었으나, 위 독촉고지서들 중 2012. 7. 24.자 고용보험료 독촉고지서

는 반송되었고, 나머지 독촉고지서들도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2012년 4월 고용·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를 최초로 송달받은 시점은 이 사건 처분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한 2018년 11월 말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를 합병한 2012. 4. 1.부터 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2012년 4월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한 납부의무가 발생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주소지인 '경기도 ○○시 ○○구 황○○로 ○○번길 ○○(수○동, 초○빌딩 4층)'로만 위 고용·산재보험료의 납입고지 및 독촉고지를 해 오다가 2018. 11.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2012. 5. 9.자 퇴직재정산신고 및 2012. 7. 9.자와 2012. 8. 21.자 민원요청에 의한 수시독촉고지서 발송은 그 처리경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등 달리 청구인이나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회사의 2012년 4월 고용·산재보험료 채무를 승인하였다거나 피청구인의 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기 어려운바, 이 사건 처분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1조의 소멸시효 3년이 경과된 후의 처분으로 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납입의무가 없어진 자에 대하여 납입고지를 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의 내용을 재구성함

## 학습내용 2

## 법령해석례

### 1. 법령해석

#### 1) 법령해석 이해

- 정부유권해석이라 하며, 행정기관이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전제로 법령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의문이 있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관장업무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해석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에 정부견해의 통일을 위하여 정부 전체 차원에서 법령해석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를 말함
- 정부유권해석은 『정부조직법』과 『법제업무 운영규정』 등의 법령에 따라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관계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을 제외하고는 정부입법의 총괄기관인 법제처가 수행하고 있음
- 행정기관인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법원의 사법해석과 달리 관계 행정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나,
-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정부 견해의 통일성과 행정 운영의 일관성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관계 행정기관이 정부유권해석과 달리 집행할 경우 부적절한 집행으로 인한 징계나 감사원의 감사 등을 통한 책임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사실상의 구속력은

가진다고 할 수 있음

- 법제처가 행하는 정부유권해석은 행정기관이 앞으로 법령을 집행하여 행정목적 달성하는데 있어 그 방향과 기준을 제시, 즉 해당 법령의 집행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의 효율적 수행에 중점을 둠
- 따라서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법령에 담긴 정책집행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법 집행의 결과 발생한 구체적이고 특정한 법적 분쟁에 대하여 하는 사법해석과는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음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원인 모두 가능

## 2. 법령해석례

[표2] 보건복지부 -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임대할 수 있는 물건의 범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법제처 17-0667, 2018. 1. 22., 보건복지부]

<p>질의요지</p>	<p>「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b>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려는 경우, 매각·임대하려는 물건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제품 생산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지?</b></p> <p>&lt; 질의 배경 &gt;          보건복지부에서는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려는 경우, 그 계약 방식으로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물건의 범위에 대한 <b>기획재정부의 의견에 이견이 있어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b></p>
<p>회답</p>	<p>「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려는 경우, 매각·임대하려는 물건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제품 생산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p>
<p>이유</p>	<p>「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법”이라 함)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함)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기준과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 및 품질요건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p> <p>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26조제1항제4호다목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하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라 함)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p> <p>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같은</p>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함)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1항제7호에서는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제309호) 제7조제6호에서는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려는 경우, 매각·임대하려는 물건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제품 생산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해당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또는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려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 규정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를 해석할 때에도 이러한 법 해석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물건의 범위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매각·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제1호)과 수의계약 대상물품의 직접생산여부(제2호)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수의계약으로 직접 매각·임대하려는 물건이 해당 수의계약 대상자가 제품을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 규정의 문언 상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그 대상이 되는 물건의 범위가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1항제7호 및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7조제6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려는 경우에 매각·임대하려는 물건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제품 생산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매각·임대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제도 등 각종 지원 및 시책을 규정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법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계약법령의 입법 취지에 비추

어 보더라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물건”의 범위를 명문의 근거 없이 좁게 해석하여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매각·임대할 수 있는 물건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려는 경우, 매각·임대하려는 물건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제품 생산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의 내용을 재구성함

### 학습내용 3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 1. 국가인권위원회

##### 1) 인권상담

-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을 통해 권리 구제 방안 안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1(휴대전화의 경우 02-1331)
- 전문상담위원 상담 : 장애인인권, 노동인권, 여성인권, 노인인권, 이주인권, 성희롱, 다수인보호시설, 군인권 등

##### 2) 진정·민원

-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접수
- 진정 접수
  -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②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즉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③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의 3.라에 따라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당한 경우
  - ④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제공을 하지 않거나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및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 민원 접수 : 위원회의 정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한 건의, 허가, 인가 등의 신청, 제증명의 신청, 국가인권위원회 법령 해석, 행정업무, 진정사건처리 등에 대한 질의 자료의 요구 등 위원회에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3) 조정제도

- 진정접수 단계 또는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하여 조정을 통해 당사자간의 합의로 자발적 해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 사법절차가 비용 부담, 처리기간, 소송결과의 예측성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근거, 권리구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함

## 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표3]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정

사 건	18진정0282700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에 대한 부당한 현지조사
진정인 등	진 정 인 000 피진정인 000 등 5인
주 문	1.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향후 현지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이 임의로 조사대상자의 사물함이나 책상서랍 등을 열고 자료를 영치하지 않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00시 00구 소재 000요양원에서 부원장으로 근무 중이다.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받아 위원회의 조사를 원한다.  가. 피진정인은 2018. 3. 26. 10:00경, 000요양원(이하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 이하 함)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였다. 피진정인은 <u>현지조사 과정에서 직원들의 동의 없이 사무실 책상 서랍 및 사물함을 뒤지고, 조사와 무관한 개인 수첩을 펼쳐보는 등 부당한 조사를 하였으며, 조사 시작 당시 제시한 리스트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던 진정인 개인수첩을 아무런 동의 없이 영치하였는데 이는 부당하다.</u>  나. 진정인은 2018. 3. 28. 자료 제출을 하러 피진정기관을 방문한 것인데, <u>사전 예고도 없이 죄인 취급을 당하며 강압적인 분위기로 조사를 받았다.</u>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진정인 :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00지역본부에 근무한다.  1) 진정요지 가항(부당한 현지조사 및 영치 관련) 피진정인은 익명의 제보를 받고, 2018. 3. 26. 10:00경부터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지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안내문을 제시하여 시작되었고, <u>위 서류에 시설장 000의 서명을 받았다.</u>

현지조사는 해당 기관의 모든 종사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아니라 대표자에 의한 동의가 있으면 족하며 사무실, 책상은 공용공간이기 때문에 영치과정에서 비치된 서류를 찾는 과정은 정상적인 영치행위이다. 행정조사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대법원 2013도7718판결)도 있으며, 피진정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요양원 시설장이 제기한 고소 사건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관련 자료가 많아 기관 종사자의 구두 동의를 얻어 함께 자료를 영치하였으며, 당시 현지조사 과정에 대하여 사무국장 및 영양사 등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문제가 된 수첩은 종사자에게 입금한 금융기록이 적혀있어 업무수첩으로 판단하여, 장기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 아 항 기타현지조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근거로 영치하였고,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사무국장 000(참고인 1)의 입회하에 영치조서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영치하였다. 피진정기관의 조사대상인 시설들은 조사의 필요한 서류들에 대하여 다양한 명칭 및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어, 현지조사 시 직원들이 직접 서류들을 확보하고 확인하여 조사에 필요한 서류인지 판단하고 있다. 제출하는 서류만을 받아보고 면담만을 진행할 목적이라면 굳이 현지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

## 2) 진정요지 나항(강압적인 조사 관련)

진정인은 강압적인 분위기로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사전 동의를 받은 후 문답을 진행하였고, 문답 종료 후에 자유롭게 면담한 내용 이라고 문답서에 자필 서명하였다.

다. 참고인들의 진술 및 관계기관의 의견

### 1) 000(참고인 1)

000요양원 사무국장이다. 현지조사 시 피진정인이 자료를 요구하자, 요양원 시설장 000과 진정인 000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외출하였다. 참고인 1은 시설에 남아 자료를 준비하였으며, 경황이 없어 누군가 책상을 뒤졌다는 사실을 이후에 알게 되었다. 피진정인이 책상을 열어봐도 되는지에 대해 동의를 구한 사실은 없다. 참고인 1은 영치 자료가 200개가 넘어 어떤 자료들이 영치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볼지 못하고 자료의 개수만을 각각 확인하여 서명하였다.

### 2) 000(참고인 2)

000요양원 영양사이다. 당시 피진정인이 1층 사무실로 들어와 2017년 영양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다. 참고인 2는 위 자료를 찾고 있었는데, 피진정인이 사무실 안의 다른 직원들 책상 및 서랍장을 열어보며 서류를 펼쳐보기 시작하였다. 피진정인은 참고인 2의 책상만이 아니라 다른 직원의 책상서랍, 사물함 등을 열어보고 처음에 요구한 영양 관련 자료 이외의 서류들도 가져갔다.

### 3) 국무조정실의 의견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현장조사) 및 제13조(자료등의 영치) 규정은 적법한 행정조사인 경우 영치 시 조사대상자 또는 대리인을 입회시키면 되고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입회하는 조사대상자의 범위는,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단체·기관의 운영에 대해 책

임과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개별 자료나 서류 등에 대해서 책임 있는자 그리고 이들의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이다. 입회한 자가 기관의 책임자이거나 영치한 서류 등의 직접관리자 또는 이들에게 명시적으로 위임을 받는 자이면 적법한 입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4) 보건복지부의 의견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 전반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지침을 발간·배부하고 있으며, 지침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조사 과정에서 자료영치는 대상자의 입회 하사전 동의 후 영치조서를 작성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보건복지부

에서는 현지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관들을 교육할 때 책상 등을 열어볼 경우 동의를 구하라고 교육하고 있다.

#### 5)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은 “피조사업체의 책상, 서랍, 캐비닛, 업무수첩 등을 조사하기 전 피조사업체의 조사대상 부서 책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임직원에게 협조를 구한 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사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거나 물리적 내지 강제력 등을 사용하지 않는 형태의 조사를 의미하며, 피조사업체가 조사공무원의 정당한 조사 협조 요청을 거부하고 조사에 불응할 경우 조사거부서를 수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서 및 전화조사 시 진술, 면담조사, 참고인 1, 2 면담조사, 관계기관의 의견서, 피진정기관의 의견서, OO시청의 의견서, 피진정기관이 진정인에게 보낸 민원회신 내용, 진정인이 제시한 CCTV 화면, 피진정기관직원 과의 전화조사 등을 종합하면 OOO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부당한 현지조사 및 영치 관련)

1) 피진정인은 익명의 제보를 받고, 2018. 3. 26. 10:00경부터 OOO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지조사에는 건강보험공단 직원 5명(피진정인)과 OO시청 직원 OOO 등 2명이 참여하였다(총 7명). 현지조사의 본권한 주체는 OO시청이고 피진정인은 행정협조의 형식으로 참여하였으나, 면담, 영치, 현지조사 등 대부분의 조사업무는 피진정인이 진행하였다.

2) 현지조사를 진행하기 전 OO시청 직원들과 피진정인은 요양원 시설장 OOO에게 현장조사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안내문 장기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 등 조사 관련서류를 제시하였고, 시설장 OOO은 각각의 서류에 서명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은 현지조사 종료 시 200개 이상 의 자료를 2018. 3. 29.까지 영치하였고, 영치하기 전 참고인 1이 영치조서에 서명하였다.

3) 현지조사 시 피진정인은 요양원 1층 책상 서랍 3개, 사물함 2개를 직접 열고, 그 안의 서류를 직접 꺼내어 확인하였다. 피진정인 조사관 000은 요양원 1층 영양사와 물리치료사 등이 사용하는 사무실 공간에서도 책상 서랍 2개 및 사물함 2개의 서류를 직접 꺼내어 열람한 것이 확인된다.

위 책상 서랍과 사물함에는 시건 장치가 되어있지는 않았으며, 수첩, 교육 자료와 함께 화장품, 칫솔 및 치약, 손가방 등 개인소지품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4) 영치과정의 동의여부에 대하여, 영치조서에 참고인 1의 서명은 확인된다. 다만, 문제가 된 책상 및 사물함을 직접 개봉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구했는지 여부에 대해, 진정인과 참고인들은 피진정인이 어떠한 형태의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 조사관 000은 누구인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책상을 개봉하려 할 때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에게 동의를 구했다. 그 중에 참고인 1도 포함되어 있다 고 주장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린다. 그러나 책상 및 사물함의 점유자에게 직접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한다.

5) 진정인이 문제를 제기한 수첩은 업무수첩 2권 이라는 명칭으로 영치조서에 기재되어 있다. 진정인은 현지조사 종료 시, 본인의 수첩이 영치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피진정기관을 방문하여 진정요지 나항의 조사를 받던 중 본인의 수첩을 발견하였다. 진정인의 수첩에는 공인인증서 비밀 번호 등 개인적인 내용과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나. 진정요지 나항(강압적인 조사 관련)

진정인은 2018. 3. 28. 추가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피진정기관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면담조사를 요청하였고, 진정인은 이에 응하여 11:00 ~ 13:30까지 면담을 진행한 점에 대해 양 당사자의 진술이 일치한다. 진정인의 서명이 있는 문답서에는 위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본인이 자유롭게 면담한 내용입니다 라고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부당한 현지조사 및 영치 관련)

1) 헌법 제17조와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장되며, 행정조사는 그 범위에 있어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법 제61조에 따른 현지조사의 경우 상대방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영업 중인 사업장에 직접 들어가 조사한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개별법에 행정조사를 통제하는 절차적 규정이 미비하여, 조사관들은 사실상

사법조사권과 유사한 정도의 조사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대한 처분강도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행정조사기본법 절차 규정 및 그 예외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조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상대방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 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은 책상 및 사물함을 직접 개봉하고 서류를 꺼내어 확인하는 행위가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현장조사), 제13조(자료 등의 영치)에 근거하며, 현지조사가 실시되는 중의 조사활동은 개별적인 직원의 동의를 요하지도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는 조사관에게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만을 부여하고 있으며, 영치의 사전적 의미가 당사자가 임의로 제출하거나 남겨둔 물건을 국가기관에서 영장 없이 맡아 보관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제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임의제출물 영치(제218조) 개념이 대상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음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조사기본법은 명시적으로 현장조사 상 영치과정에서 조사관이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여 자료를 확보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일반적으로 직장 내 책상 서랍과 사물함은 점유자의 업무 내·외적인 용품이 비치되어 있는 공간으로, 보통의 직장인의 정서 상 동료 직원 혹은 부하직원의 책상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물건을 사용하거나, 부재 시 서랍등을 열어보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관념에 비추어 볼 때, 공용공간과 사적공간이 혼재된 공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책상 및 사물함을 직접 개봉하고 서류를 꺼내어 확인하는 행위는 행정조사기본법상 근거가 없는 조사방법이며, 그 외형이나 내용이 형사소송법상 수색과 유사한 만큼 조사대상자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관리자 또는 주변 종사자들에게 같이 자료를 찾아보겠다 는 식으로 통보(이에 대하여 진정인과 참고인들은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함)하거나 명시적인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사자들의 동의를 직접 얻거나 최소한 관리자의 계속적인 입회 하에 진행하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행정조사기본법 제13조의 조사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 입회에 관한 규정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다.

5) 이와 관련하여, 진정인을 비롯한 시설의 종사자들은 피진정인의 자료제출요구에 충실히 임하고 있었으며,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였다는 사정은 없었으므로, 피진정인이 직접 책상 서랍과 사물함을 개봉하여 자료를 획득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피진정인이 책상이나 서랍장을 열어 서류를 획득한 것은 그 안에 특정한 증거자료가 있다는 확신이 있거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책상과 사물함 안에 어떤 내용물이 있는지 직접 열어보고 자료를 확인한 뒤 영치할지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긴급성과 중대성이 없음에도 관행적으로 조사대상자에게 매우 불이익한 효과를 초래하는 조사방법을 선택한 것이며, 이는 분명한 과잉 조사이다.

6) 참고로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다른 조사업무 기관의 예와 비교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1), 세무조사2)의 경우에 조사관이 자의적으로 책상 서랍, 캐비닛 등을 개봉하지 않도록 자체 규정을 통하여 제한하고 있다. 피진정기관의 현지조사방법과 관련된 규정인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에  
는 위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찾을 수 없으나, 현지조사를 통한 자료 확보를 위해서, 충분한 사전 검토 후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출을 요구하거나, 책상이나 사물함의 개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조사 중 전체 직원의 동의를 득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등,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면서도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보다 덜 침해적인 수단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다.

7) 결국, 점유자의 동의나 그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책상 서랍과 사물함을 직접 개봉하여 자료를 영치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 등 시설종사자들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나. 진정요지 나항(강압적인 조사 관련)

1) 진정인은 피진정인 1과의 2018. 3. 28. 면담조사가 강압적인 조사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여 양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린다.

2) 다만, 진정인이 문답서에 위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본인이 자유롭게 면담한 내용입니다 라고 자필 기재한 점, 진정인이 강압적으로 느낀 이유에 대해서 분위기가 강압적이었다. 이상의 진술을 하지 않는 점, 조사과정에서 욕설이나 권리 제약이 발생한 사실은 없었다는 점에서 조사과정의 강압성을 인정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결국, 진정인의 주장 외에 달리 진정 내용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는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소결  
이상의 인정사실과 판단에 따르면, 이 사건 침해행위는 조사관 개인의 일탈이나 조사권 남용에서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피진정기관의 관행과 업무방식으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지 조사 과정에서 사물함이나 책상서랍 등을 임의로 열고 자료를 영치하지 않도록 내부지침 등을 마련하는 등, 업무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6. 5.

위 원 장 정 문 자, 위 원 조 현 옥, 위 원 김 민 호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https://www.humanrights.go.kr/>의 내용을 재구성함



## 1. 행정심판례

- 1) 행정심판 이해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 2) 행정심판례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독촉고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8-22496, 2019. 3. 12.]

## 2. 법령해석례

- 1) 법령해석 이해
  - 정부유권해석이라 하며, 정부견해의 통일을 위하여 정부 전체 차원에서 법령해석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법제처 담당)
- 2) 법령해석례
  - 보건복지부 -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물 생산시설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임대할 수 있는 물건의 범위

## 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 1)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역할 : 인권상담, 진정·민원, 조정제도
- 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정 : 18진정0282700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에 대한 부당한 현지조사